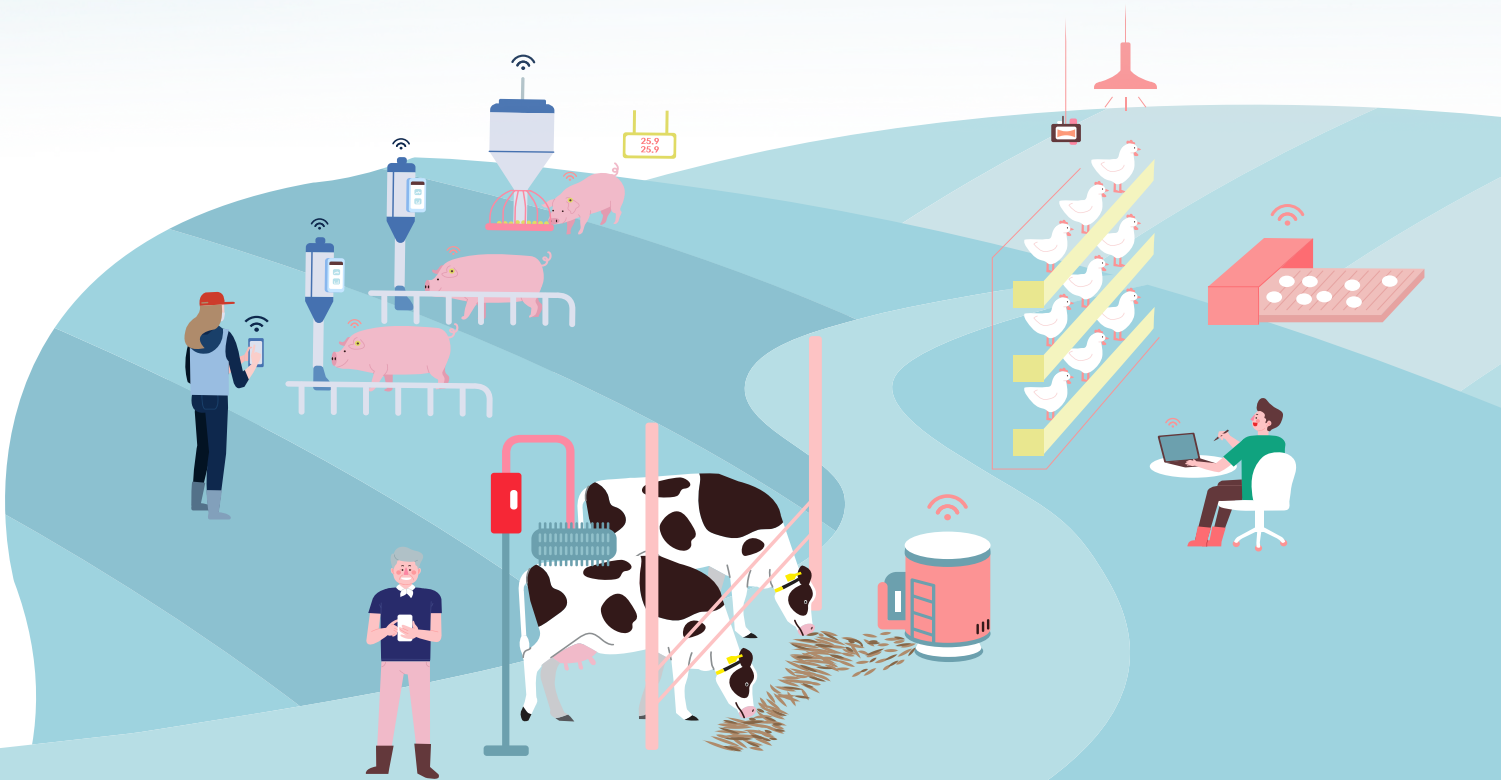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431-01

한국 스마트 축산 K-FARM

축산 ICT기자재 수출매뉴얼



한국 스마트 축산 K-FARM

축산 ICT기자재 수출매뉴얼

Contents

PART I 수출 개요

제1절 수출정의	6
제2절 수출의 형태	7
제3절 수출입 승인제도	8
제4절 수출입실적증명	12

PART II 수출준비사항

STEP 1 무역업 준비	20
1. 사업자 등록	20
2. 외화통장 개설	20
STEP 2 해외시장조사	21
1. 해외시장조사 방법	21
2. 국내외 축산통계 확인방법	25
3. 국내외 특허검색 방법	30
STEP 3 제품 현지화	35
1. 글로벌 제품개발	35
2. 제품라벨 제작	36
3. 제품 매뉴얼	38
4. 해외규격 인증제도 확인 및 인증 획득	39
5. 국외 지식재산권 등록	43
6. 수출 제품 단가 책정	45
STEP 4 홍보물 제작	47
1. 홈페이지 제작	47
2. 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49
STEP 5 바이어 발굴	50
1. 바이어 발굴 방법	50
2. 바이어 확인사항	60
3. 현지 협력관계 구축	64

PART III
수출절차

STEP 6 수출 계약 68

1. 수출 계약 체결 68
2. 수출 계약서 작성 73
3. 대금결제조건 88
4. 보험 및 이의제기 102

STEP 7 선적전확인 106

1. 무역 관련 기업 고유번호 확인 및 발급 106
2.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 110
3. FTA 및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123

STEP 8 수출통관 129

1. 포워드 선정 및 선복수배 129
2. Invoice, Packing List, 확인 작성 135
3. 수출신고필증 발행 141
4. 국내운송 146
5. 선적 및 B/L 발행 148
6. 선적서류 수입자 전달 154
7. A/N(Arrival Notice) 확인 155
8. 수입국 내륙운송 155

STEP 9 수출대금 회수 159

STEP 10 사후관리 160

1. 법정 서류보관 기간 160
2. 수출입물품 관리대장 162

PART I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제1절 외(국)환 관리 166

제2절 관세 환급 169

제3절 AEO 인증 180

제4절 비자 발급 186

제5절 수출입 관련 주요 사이트 191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195

제7절 공동브랜드 K-FARM 활용방법 198

제8절 무역 용어 201

PART

I



수출 개요

제1절 수출정의

1.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의 정의
2.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출의 정의

제2절 수출의 형태

제3절 수출입 승인제도

1. 수출입제한품목
2. 수출입승인 신청
3.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대상
4.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4절 수출입실적증명

1. 수출실적의 인정기준
2. 수출입실적증명의 신청

제 1 절 수출정의

수출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을 통틀어 볼 때 형태를 가진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와 같은 용역과 지식도 수출의 대상이 됩니다.

①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의 정의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으로, 질서확립 외에 통상확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가 거주자 외의 개인 또는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②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출의 정의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으로,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수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내국 물품(①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절 수출의 형태

수출은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일반 형태 수출과 물품이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거나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등의 특정 거래 형태 수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 1〉 수출거래 형태

구분		내용
일반형태	직접수출	수출자가 제품(유체물+무체물)을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것
	간접수출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것
	OEM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
	ODM	설계, 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바이어에게 상품을 수출하는 것
	용역의 수출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특정거래 형태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위탁가공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무환수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샘플, 전시회 출품, 대체품 등)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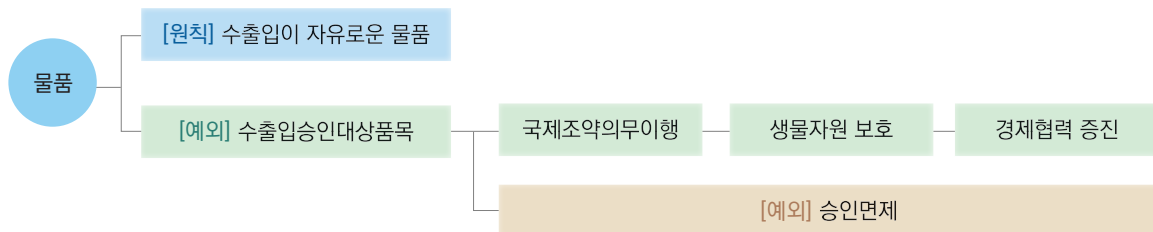
제3절 수출입 승인제도

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수출입제한품목

-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쇠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출제한 품목은 대외무역법 체계에 속해 있는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수출입승인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
-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 물품)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 무상으로 수출한 후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한 후 가공하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공용물품)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골 등)

② 수출입승인 신청

〈표 3〉 수출입승인 신청

구분	세부내용
승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골재협회 : 천연모래(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한국골재협회 :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 한국철강협회 : 잉곳(ingot),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등
승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승인(신청)서 3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① 수출자와 화주, ②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승인유효기간	<p>승인일로부터 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포함합니다.

③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대상

- 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내에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승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 3〉 수출입승인의 변경 대상

구분	세부내용
변경승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등의 수량·가격 • 승인의 유효기간 •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도착항(수출의 경우), 규격 • 수출입물품의 용도(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 • 승인조건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④ 전략물자의 수출입

-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은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합니다.

〈표 4〉 전략물자의 분류

구분	세부내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파괴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 • 자율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 정보센터에서 판정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의 판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판정을 받은 때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허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물품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등(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에 전용될 우려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벌칙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제 4 절 수출입실적증명

수출입실적증명이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무역·통상진흥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기업의 일정 기간에 대한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실적증명은 무역금융/무역기금융자/무역의날 포상 신청,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발급, 각종 정부/무역 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수출실적의 인정기준

〈표 5〉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명기관

	구분	수출실적 인정 금액	수출실적 증명기관
일반형태	직접수출/OEM/ODM	수출신고필증상 FOB 금액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발급건)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외국환은행
	용역의 수출	입금 확인액	한국무역협회장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	입금 확인액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특정거래 형태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외국환은행
	위탁가공수출	판매액 -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	외국환은행
	위탁판매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외국환은행
	중계무역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외국환은행
	무환수출	판매대금에 한함(입금 확인액)	외국환은행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가.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

- 수출의 정의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생필품 등으로서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무역업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 수출실적의 인정 금액/시점

- 수출실적의 인정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 가격 기준)입니다.

〈표 6〉 수출실적 인정 금액

구분	수출실적 인정 금액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수출금액(FOB 가격)에서 수입금액(CIF 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 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원양어리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에 의한 수출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확인서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 수출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입니다. 다만,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수출금액 입금일입니다.

② 수출입실적증명의 신청

가. 직접수출

- 직접수출 실적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금액 즉,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입니다.
- 직접수출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실적증명 발급은 관세청 확정치가 발표된 이후 즉, 익월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신고필증, 대표자 신분증’을 갖춰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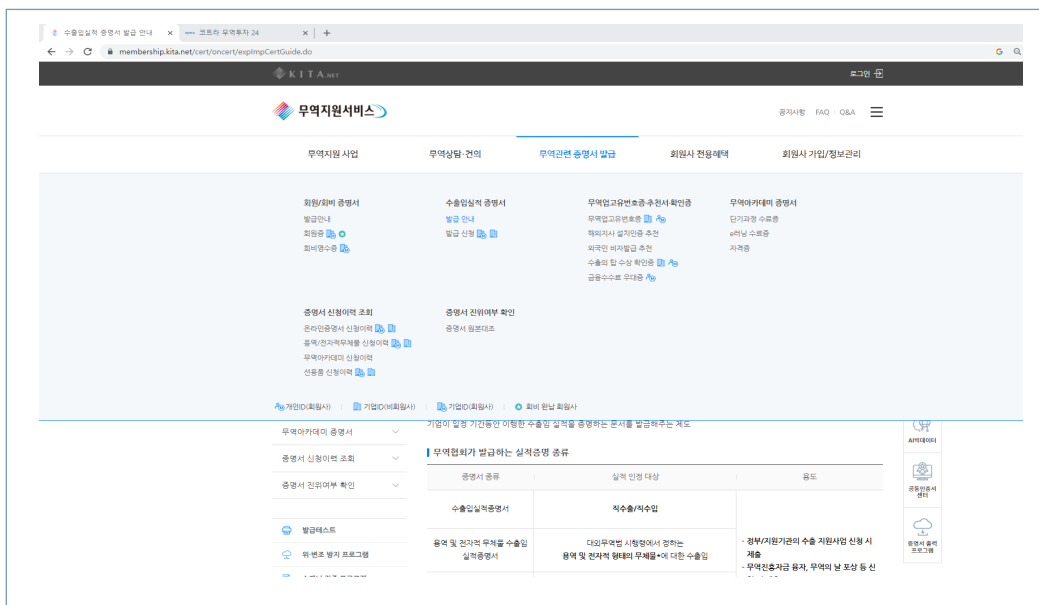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 확인 신청서, 수출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 환산액 표기), 기타 거래 및 인수·인도사실 증명서류’를 갖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 수출입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 한국무역협회(<https://membership.kita.net/main.do>)는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여 수출입실적의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적확인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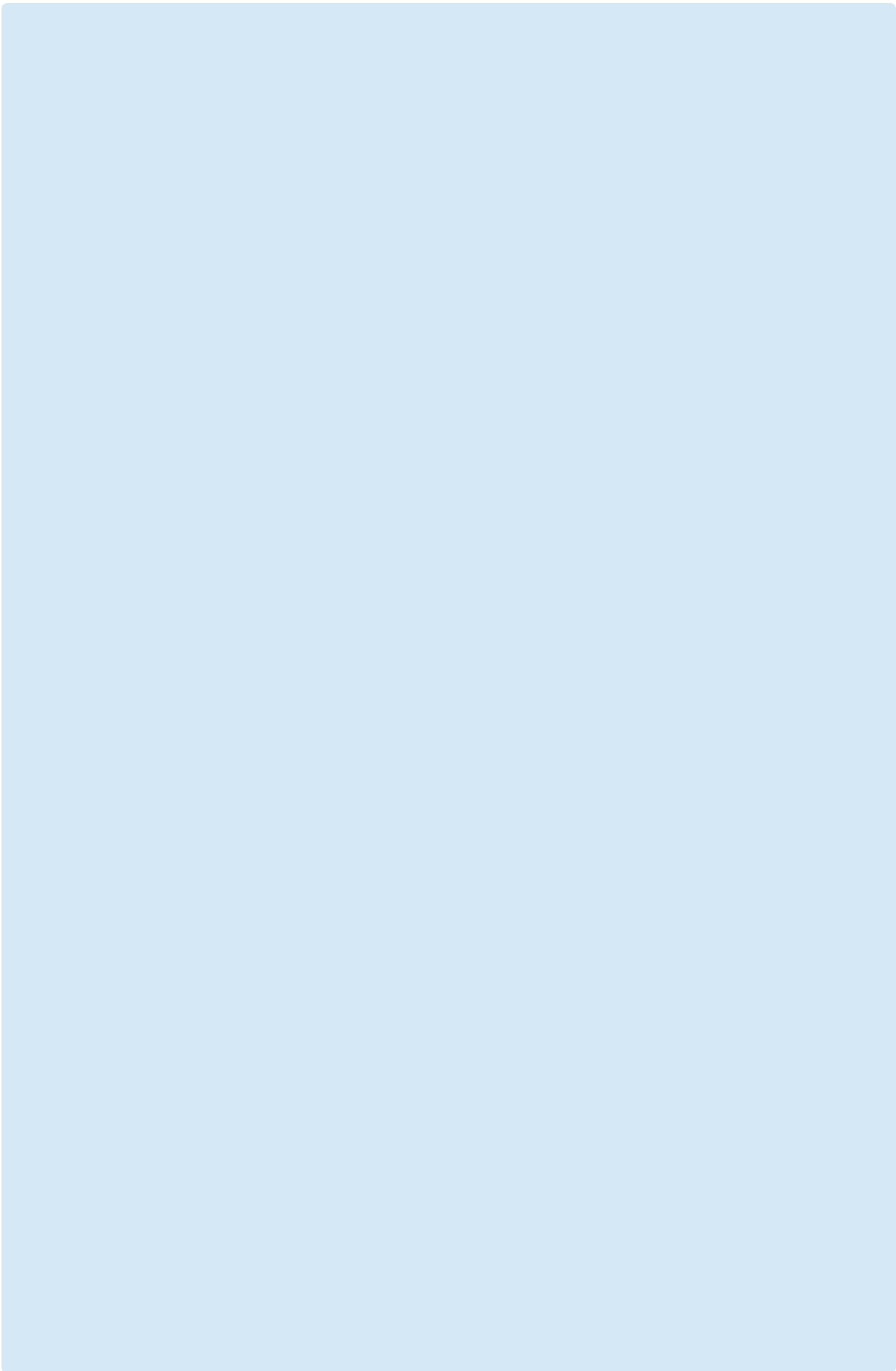
① 사이트 메뉴 중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발급 신청’ 클릭

〈그림 4〉 한국무역협회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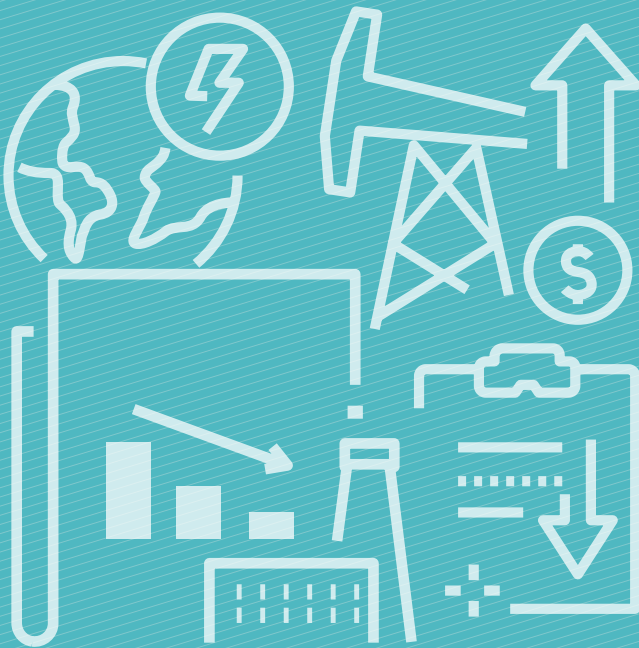
〈표 7〉 수출을 위한 프로세스

수출절차		주요사항
STEP 1	무역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 무역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등록증이 요구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은 필요 • 외화통장 : 환율에 따른 환차익과 환차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통장 구비
↓		
STEP 2	해외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제품에 적합한 수출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 진행 - 현지 기술 수준, 축산동향,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
↓		
STEP 3	제품 현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대상국 규정이나 필수인증제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에 제품 판매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생산 • 제품 판매 시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소 주문 수량과 현지에 맞는 계약조건별 수출제품 단가 책정
↓		
STEP 4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바이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마케팅 진행을 위해 다국어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품 매뉴얼 등 제작
↓		
STEP 5	바이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발굴 : 자사 홍보물의 배포, 박람회 및 제품 설명회 참가, 수출대상국 출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 • 거래처 확인 : 계약 체결 전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 지급능력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외 기업 등록정보 확인, 신용조사 등 진행
↓		
STEP 6	수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가격, 수량, 선적 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한 조건 결정 • 계약조건(인코텀즈)에 따른 부대비용 검토 • 적하보험, 무역보험 등을 통해 무역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		
STEP 7	수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과정의 정확한 업체 식별, 수출실적 관리 등을 위해 통관고유번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바이어의 해외거래처부호 확인 • HS코드 : 수출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입 요건 및 세율, 수출입요령 등 확인 •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인화 혜택을 받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STEP 8	수출통관 (물품 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워더, 관세사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서류 작성 • 현지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여 운항스케줄 결정 및 물품 발송 • 수출신고 :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진행 • 구비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하증권(Bill of Loading, B/L), 원산지증명서
↓		
STEP 9	수출대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등 다양한 대금결제방식 중 계약조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수출대금 회수 • 신용장 방식의 경우, 거래은행(매입은행)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입 신청 진행
↓		
STEP 10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에 의해 수출입관련 서류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FTA 사후검증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수출 종료 후 관련 서류 보관 필요 •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물품 관리대장 작성 및 관련 서류 관리



PART

II



수출준비사항

STEP 1 무역업 준비

1. 사업자 등록
2. 외화통장 개설

STEP 2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 방법
2. 국내외 축산통계 확인방법
3. 국내외 특허검색 방법

STEP 3 제품 현지화

1. 글로벌 제품개발
2. 제품라벨 제작
3. 제품 매뉴얼
4. 해외규격 인증제도 확인 및 인증 획득
5. 국외 지식재산권 등록
6. 수출 제품 단가 책정

STEP 4 홍보물 제작

1. 홈페이지 제작
2. 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STEP 5 바이어 발굴

1. 바이어 발굴 방법
2. 바이어 확인사항
3. 현지 협력관계 구축

STEP 1 무역업 준비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금을 결제받을 외화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역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증은 요구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 정도를 첨부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금융의 한도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고 무역의날 포상 기준이 되는 수출입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무역업고유번호¹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개시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²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명의 전세 또는 매매 계약서), 신분증, 도장

② 외화통장 개설

- 외화통장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인 원화통장과 달리 입출금되는 단위가 외화인 미달러(USD), 유로(EUR) 등인 통장입니다.
- 외화로 계약된 대금을 원화통장으로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송금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화통장만 있는 경우에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은 경우 바로 원화로 환산을 해야 하지만 외화통장이 있는 경우 환율의 변동 추세 등을 검토한 후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전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수출계약 시 원화통장보다는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외화통장은 동일한 계좌번호로 미국달러, 유로, 위안 등 여러 종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위임장(대표자 외 방문 시), 사용인감계(거래인감)

1 무역업고유번호 : IV.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07-108

2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STEP 2 해외시장조사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시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출 모델의 현지화를 진행하고,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유통되는 장비 및 업체를 조사하여 경쟁업체를 선별하고, 해당 업체의 카탈로그 등을 활용하여 주요 제품의 기능 및 사양을 확인하거나 현지에 등록된 특허 조회를 통해 축산장비의 기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시장조사 방법

가. 문헌자료 조사

- 국내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관점의 해외시장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보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NTIS, RISS, ScienceON 등의 학술연구자료 제공사이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술연구자료로 원하는 부분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하거나 현지 전문가를 확보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체적인 자료조사 및 현지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조사 관련 수출지원사업³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 8〉 축산장비 관련 조사항목 및 방법

구분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축산통계	가축 사육 및 소비현황 ① 축종별 사육농가수 및 사육규모 ② 축종별 평균 사육 두수 ③ 축종별 생산량(총 체중(kg), 수량(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민간 통계포털의 활용 • 보고서 및 언론의 활용
현지 축산 동향	가축 사육 및 소비현황 ① 수출대상국가의 스마트축산 정책동향 ② 축산 주요 질병 현황 ③ 축산물 및 사료 유통 현황 (유통량, 단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축산부처, 보도자료의 활용 • 현지 농장 또는 전문가 인터뷰
기술 수준	현지에서 유통되는 축산 장비 ① 현지 로컬 장비업체(경쟁사) ② 현지 축산 장비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축산부처, 잡지 및 보고서 등의 활용 • 국가별 특허청, 국제특허검색포털의 활용 • 현지 농장 또는 장비업체 인터뷰
현지 농장	현지 농장의 시설 및 사양 구조 ① 농장 구조(바닥형태, 환기시설 등) ② 사육단계별 사양환경(온도, 습도, 환기량 등) ③ 사육단계별 급여프로그램 ④ 평균 생산성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언론 및 잡지, 논문 및 보고서의 활용 • 현지 농장 또는 전문가 인터뷰

3 수출입지원사업 운영기관 : 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중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P.195-197

〈표 9〉 자료조사 관련 국내외 웹사이트

구분	관련 웹사이트 안내	
국내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부기관을 활용하여 수출 준비 및 자료조사 - 한국 통계청 통계포털 (KOSIS) : https://kosis.kr - 한국무역협회 통계 (K-stat) : http://stat.kita.net - FAO 통계포털 (FAO STAT) : http://www.fao.org/faostat/en - 한국 특허청 (KIPRIS) : https://www.kipo.go.kr 	
국가별 통계 관련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및 KOTRA 등을 활용하여 확인 - 통계청 (국외통계작성기관)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7/4/1/index.action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_국가별 전문PDF_유관기관)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통계청 : http://www.gso.gov.vn - 중국 통계청 : http://www.stats.gov.cn
국가별 농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및 KOTRA 등을 활용하여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관련기관) : https://www.mafra.go.kr/mafra/386/subview.do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_국가별 전문PDF_유관기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rd.gov.vn 중국 농업부 : http://english.agri.gov.cn
국가별 특허 관련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 및 KOTRA 등을 활용하여 확인 - 특허청 (외국특허청)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77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_국가별 전문PDF_유관기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특허청 : http://english.cnipa.gov.cn - 베트남 특허청 : https://ipvietnam.gov.vn - 말레이시아 특허청 : https://www.myipo.gov.my/en
국가별 언론 및 잡지	국가별 농축산/양돈 관련 기관 및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인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progress (양돈) : https://www.pigprogress.net - pig333 (양돈) : https://www.pig333.com 2)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swine (양돈) : http://www.gdswine.com - ajxyun (축산 소프트웨어) : http://www.ajxyun.com 3)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NUOI (축산) : http://channuoivietnam.com - Gia Cam (가금) : http://www.channuoigiacam.com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검색	수출 대상국 현지 언어를 활용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pig, sow), 축산(livestock, animal), 축산 장비(animal equipment), 급여기(feeder), 환경관리기(Environment, fan), 스마트 축산(smart farm) 등

나. 수출대상국 방문

- 수출대상국의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가능성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해 수출대상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자료조사는 한계가 있으며, 국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내구성 및 활용 과정이 현지와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 수출 관련 기관 및 농축산 관련 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출 지원사업 중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표 10〉 국외 출장과 관련한 지원 사업

기관명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EPIS	스마트팜 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출장비 지원
농업 기술 실용화 재단	해외전시회 / 해외진출 지원	현지박람회 참가 지원
KOTRA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출장 시 통역, 차량 지원 등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출장비 및 전시비용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무공간 등 행정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사업	통/번역 등 마케팅 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공유오피스 등 행정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출장비 및 전시비용 지원

- 수출 지원사업⁴은 KOTRA, 한국무역협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활용하면 기관별 지원사업 공고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메뉴 중 ‘정책정보 > 지원사업공고’ 클릭

〈그림 6〉 기업마당 ‘정책정보’ 메뉴



② 지원사업 분류 중 ‘수출’ 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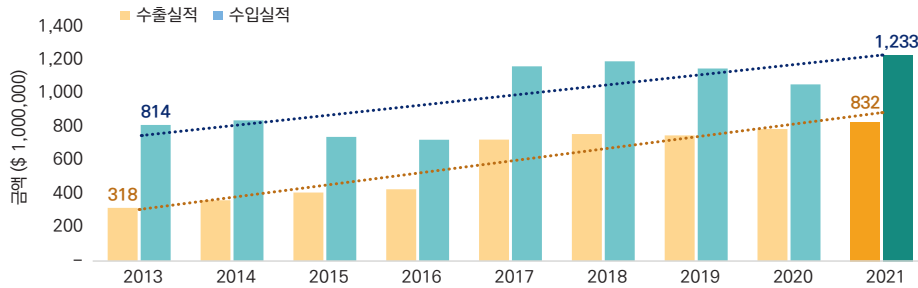
③ 검색창에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사업명, 소관부처, 내용, 해시태그’ 선택

4 수출입지원사업 운영기관 : 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중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P.195-197

축산기자재 시장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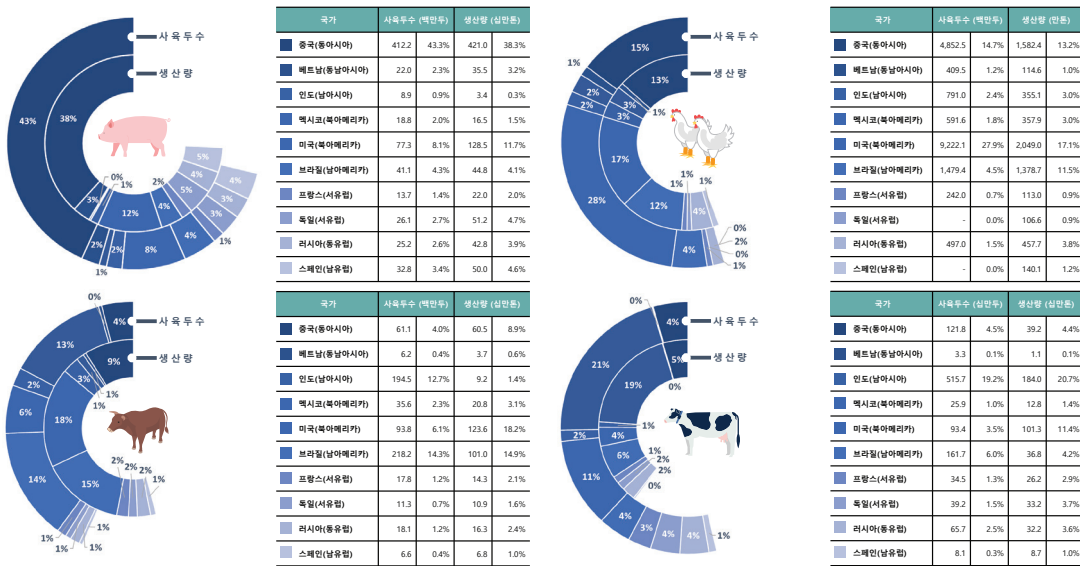
- 최근 국내 축산기자재는 국내 시장에서 축산농가들로부터 점차 인정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 공급률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실정이며,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자 다수의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축산기자재 수출 금액은 4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2010년 200억 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동남아 지역, 중국 등에서 유럽산보단 저렴하고 중국산보단 내구성이 강한 국산 축산기자재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7〉 축산기자재 수출입 실적



출처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그림 8〉 축종별 주요국 사육 및 생산 현황(2020년)



출처 : FAOSTAT, 낙농진흥회

-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와 축산부산물(폐사축)처리를 위한 기자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남아 지역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 증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각 국가의 지원확대로 인해 축산기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동남아 지역 중 베트남의 유망 수출 품목은 착유기, 가금류 케이지, 자동급이기 등으로,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성이 있으며, 가축 생산성 개선과 질병 방지 및 가축 폐사 감소 효과가 있어 베트남 현지 소비자의 니즈가 확인된 품목들입니다.

② 국내외 축산통계 확인방법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통계청,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도 통계정보를 분석한 주간 축산물가격 동향과 분기별 축산관련 주요통계정보(“스마트한 축산통계30”)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수출대상국의 세분화된 통계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통계작성기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국가통계포털(KOSIS),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데이터베이스(FAOSTAT)에서는 전세계 통계정보를 취합한 국제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KOSIS(<https://kosis.kr>)에 접속하여 국내 및 국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1〉 KOSIS 제공 통계

구분	주제별 통계	
국내	농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동향조사 : 소/ 돼지/ 닭, 오리 •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비육돈/ 산란계/ 육계/ 육구/ 젖소/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 도축검사보고 : 도축장별/ 축종별/ 닭 품종별/ 소 품종별 등 • 축산물등급판정통계 : 도매시장별/ 등급별 성별/ 품종별 성별 •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 시도별 원유생산량/ 유제품별 생산 및 소비실적 • 농축산식품산업실태조사 : 사업체 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 • 농업기계보유현황,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조사,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 실적 등
국제	농림/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면적 • 농업생산지수, 농업생산량 • 가축사육 : 소/ 돼지/ 양/ 닭 • 가축생산량 : 쇠고기/ 돼지고기 • 비료생산량, 비료소비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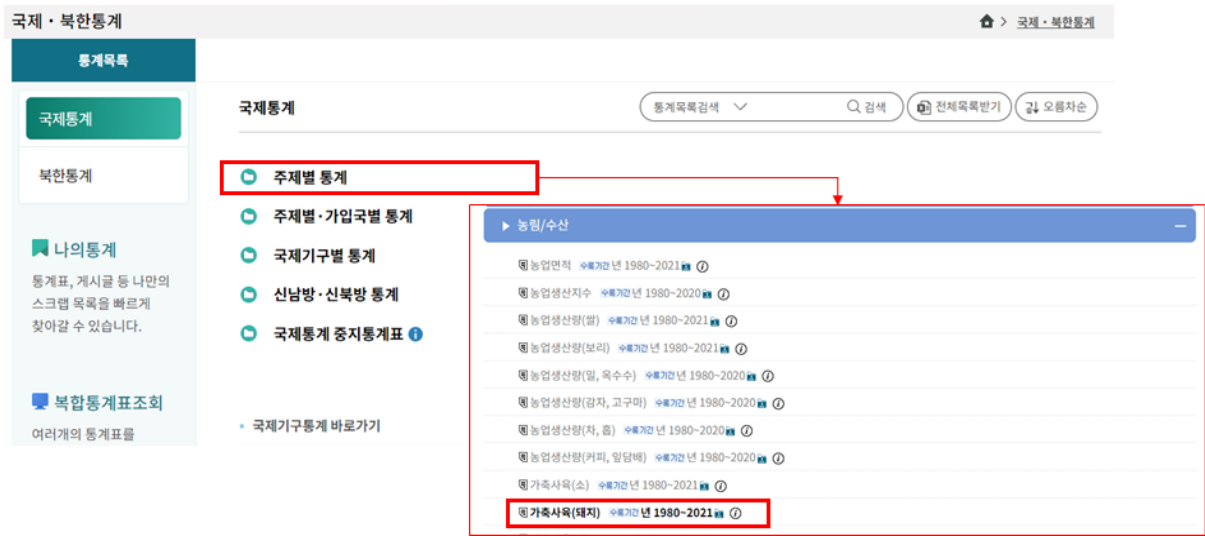
① 사이트 메뉴 중 ‘국제·북한통계 > 국제통계’ 클릭

〈그림 9〉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제·북한통계’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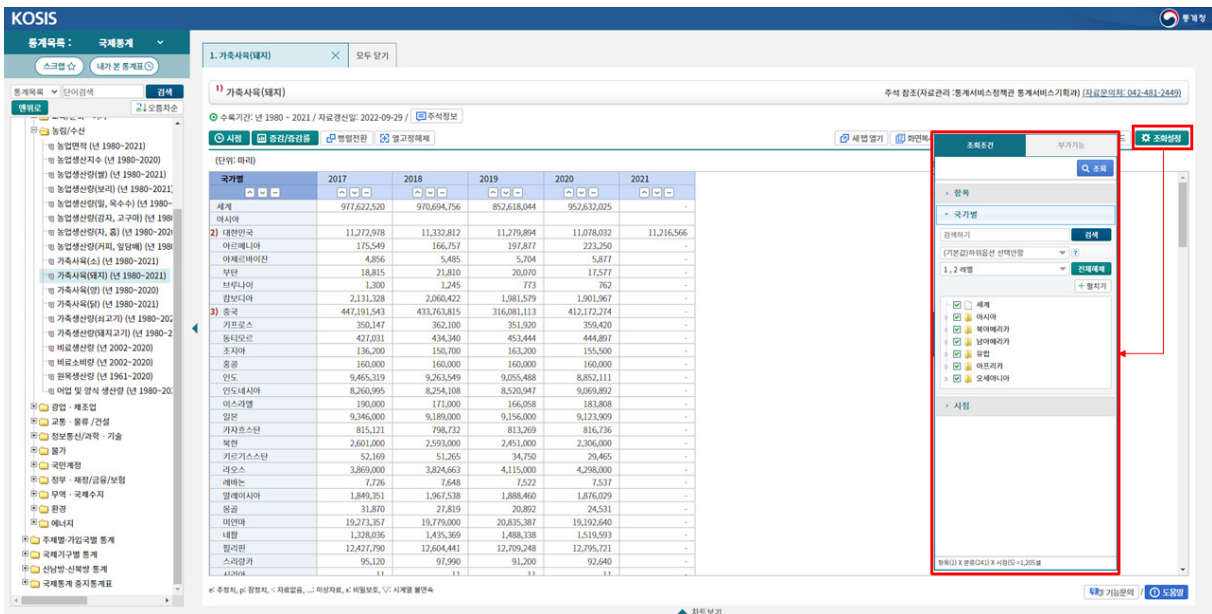
② ‘주제별 통계 > 농림/수산’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 선택

<그림 10> ‘주제별 통계’ 중 ‘농림/수산’ 통계항목



③ ‘가축사육(돼지)’ 선택 시 최근 5년간의 국가별 통계 조회하면 출력

<그림 11> ‘가축사육(돼지)’ 국제통계 결과 화면



④ ‘조회설정’ 버튼을 통해 조회 국가, 시점 등 설정 변경 가능

- 조회한 통계 결과는 엑셀, 텍스트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데이터베이스(FAOSTAT)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FAOSTAT(<https://www.fao.org/faostat>)에 접속하여 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제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AO는 기아를 퇴치하고 영양과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FAOSTAT를 통해 농업부문의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보급함으로써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위기에 대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FAOSTAT은 245개 국가 및 지역의 식량과 농업에 대한 데이터를 1961년도부터 연도별로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작물, 목재, 가축 생산량과 농산물의 교역량 및 공급량,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폐기물, 생산자가격지수 및 여타 지표들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 영역별 전세계의 통계자료를 검색하거나 국가별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여러개의 특정 국가를 선택하여 통계값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 데이터 영역(15개) : Production(생산), Food Security and Nutrition(식품 안전 및 영양), Food Balances(식품 수지), Trade(무역), Prices(가격), Land, Inputs and Sustainability(토지, 투입물 및 지속가능성), Population and Employment(인구 및 고용), Investment(투자), Macro-Economic Indicators(거시경제지표), Food Value Chain(식품가치사슬), Climate Change(기후 변화), Forestry(임업), SDG Indicators(SDG 지표), World Census of Agriculture(세계 농업 인구 조사), Discontinued archives and data series(중단된 통계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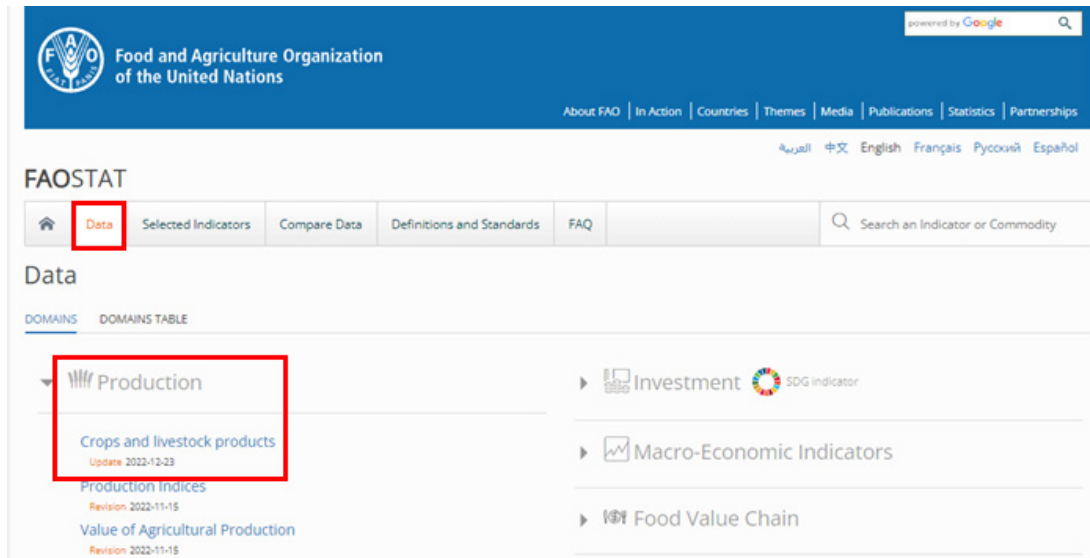
〈표 12〉 FAOSTAT 제공 축산관련 통계

구분	통계 항목
Production (생산량)	• Crops and livestock products(농작물 및 축산물), Production Indices(생산지수) 등
Trade (무역)	• Crops and livestock products(농작물 및 축산물), Detailed trade matrix(상세 무역 매트릭스), Trade Indices(무역수지)
Prices (가격)	• Producer Prices(생산자 물가), Consumer Price Indices(소비자 물가지수), Exchange rates(환율) 등
Land, Inputs and Sustainability (토지, 투입물 및 지속가능성)	• Land Use(토지용도), Land Cover(토지 커버) • Fertilizers by Livestock Manure(축산분뇨), Pesticides Use(농약사용) 등 • Fertilizers indicators(비료지표), Livestock Patterns(축산형태) 등
Population and Employment (인구 및 고용)	• Annual population(연간 인구) • Employment Indicators: Agriculture, Rural(고용지표 : 농업, 농촌)
Investment (투자)	• Agriculture(농업개발흐름), Country Investment Statistics Profile(국가 투자통계 프로파일) 등

- FAO한국협회(<https://www.fao.or.kr>)에서는 ‘FAOSTAT 이용방법’을 배포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FAOSTAT 활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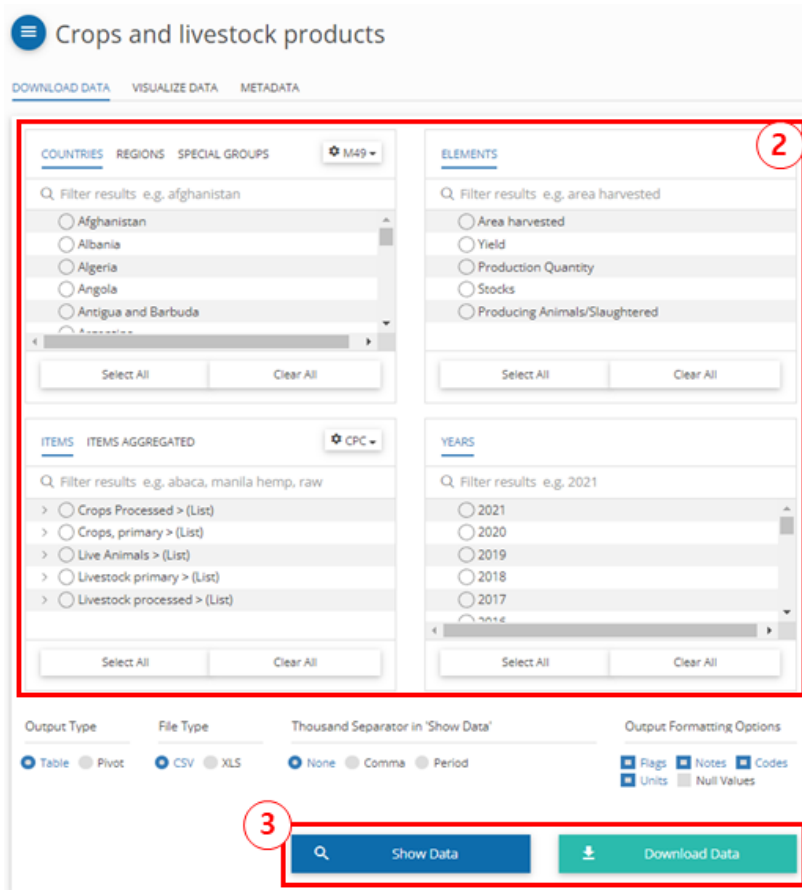
- ① 사이트 메뉴 중 ‘Data > Production(생산량) > Crop and livestock products(농작물 및 축산물)’ 클릭

〈그림 11〉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데이터베이스(FAOSTAT) ‘Data’ 메뉴



- ② 조회하고자 하는 ‘COUNTRIES(국가)/REGIONS(대륙)/SPECIAL GROUPS(기타)’, ‘ITEMS(추출 항목)’, ‘ELEMENTS(추출 데이터)’, ‘YEARS(기간)’ 선택

〈그림 13〉 ‘Crops and livestock products’ 조회항목 선택



- COUNTRIES(국가) : Republic of Korea
 - ITEMS(추출 항목) : Live Animals(가축) 중 Swine/pigs(돼지), Livestock primary(축산 1차 가공물) 중 Fat of pigs(돼지비계), Meat of pig with the bone, fersh or chilled(돼지고기, 생육 또는 냉장), Livestock processed(축산 가공물) 중 Pig fat, rendered(돼지비계, 가공)
 - ELEMENTS(추출 데이터) : Production Quantity(생산량), Stocks(사육두수), Producing Animals/Slaughtered(도축두수)
 - YEARS(기간) : 2017~2021
- ③ 사이트 내에서 결과를 조회하고자 하면 'Show Data', 엑셀 자료로 다운로드받하고자 하면 'Download Data' 선택

〈그림 14〉 'Show Data' 결과 화면

Show Data ↓

Area Code (M49)	Area	Element Code	Element	Item Code (CPC)	Item	Year Code	Year	Unit	Value	Flag	Flag Description
L0	Republic of Korea	5510	Production	21511.01	Fat of pigs	2017	2017	tonnes	86486.49	I	Imputed value
L0	Republic of Korea	5510	Production	21511.01	Fat of pigs	2018	2018	tonnes	89797.3	I	Imputed value
L0	Republic of Korea	5510	Production	21511.01	Fat of pigs	2019	2019	tonnes	92162.16	I	Imputed value
L0	Republic of Korea	5510	Production	21511.01	Fat of pigs	2020	2020	tonnes	94797.3	I	Imputed value
L0	Republic of Korea	5510	Production	21511.01	Fat of pigs	2021	2021	tonnes	95067.57	I	Imputed value
L0	Republic of Korea	5320	Producing Animals/Slaughtered	21511.01	Fat of pigs	2017	2017	Head	16728000	T	Unofficial figure
L0	Republic of Korea	5320	Producing Animals/Slaughtered	21511.01	Fat of pigs	2018	2018	Head	17369000	T	Unofficial figure
L0	Republic of Korea	5320	Producing Animals/Slaughtered	21511.01	Fat of pigs	2019	2019	Head	17825000	T	Unofficial figure

Showing 1 to 25 of 25 rows

- Unit(단위) : Production Quantity(생산량)_Tonnes(톤), Stocks(사육두수)_Head(두), Producing Animals/Slaughtered(도축두수)_Head(두)

③ 국내외 특허검색 방법

- KOTRA에서 발간된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⁵를 통해 각 국가별 국제 조약/협약 현황, 지식재산 관련 기관, 특허 대상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국내 특허청,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3〉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 예시(중국, 베트남)

국가명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
중국	가입 (1994.01.01.)	가입	가입	가입 (1995.12.01.)	가입	가입
베트남	가입 (1993.03.10.)	가입	가입	가입 (2006.07.11.)	미가입	가입

출처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1 아시아 (2020), KOTRA

〈표 14〉 지식재산 관련 기관 예시(베트남)

기관명	관련 업무	
보호 기관	베트남 지식재산권청(NO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에 관한 법령·제도·정책의 초안 작성 • 지식재산권 확립 및 지식재산권 양도계약등록 •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취소, 무효화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
	저작권국	-
집행 기관	식물 신제품 보호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신제품 • 신청 서류 접수, 심사, 보호, 라이선스 발행을 실시
	산업무역부 시장관리국	• 시장 검사와 감사, 법률위반 방지 등의 국가 관리 기능을 담당
	과학기술부 감사국	• 불복신청과 고발 등을 처리하고 행정감사, 지식재산에 관한 감사를 포함한 전문적 감사를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	-
	공안(경제 경찰국)	• 위조상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수사·적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의 제조와 판매 방지
	세관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물품에 관한 관세 집행 및 수출입 물품의 통계 데이터 • 제도에 관한 관리 및 수출입 물품의 관세에 관한 정책을 수립
	인민위원회	•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등 위반 사건을 검사하고 적발, 방지 및 처리
	법원	•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
389 국가지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품 방지 계획 전략 작성 •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방지 활동에 관한 지도 및 검사 촉진, 지침 배급 	

출처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1 아시아 (2020),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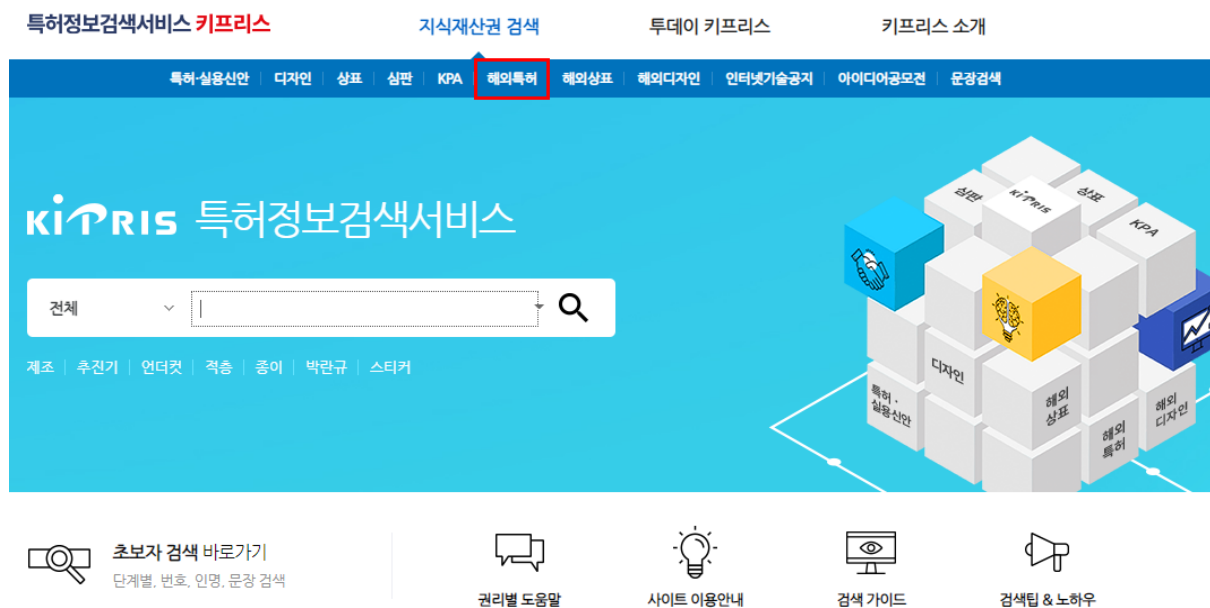
⁵ KOTRA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1 아시아’ 다운로드 URL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4685>)

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KIPRIS(<http://www.kipris.or.kr>)에 접속하여 특정 국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메뉴 중 ‘지식재산권 검색 > 해외특허’ 클릭

〈그림 15〉 키프리스(KIPRIS) ‘지식재산권 검색’ 메뉴



②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국가’를 선택하여 조회

- 검색식 : *(AND), +(OR), !(NOT)
- 검색 대상국가(25개국) : PCT,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러시아, 대만,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필리핀,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유라시아, 세르비아

〈그림 15〉 키프리스(KIPRIS) ‘지식재산권 검색’ 메뉴

구분	급이기	환경관리기
중국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Environment*Controller • Pig*Environment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 house environment temperature detection system based on CAN (controller area network) bus (2017.05.12.) • Clean pig farm with controllable environment and operation method of clean pig farm (2015.05.05.)

나. 국가별 특허청

- 국가별로 운영하는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키프리스(KIPRIS)에서 확인되지 않는 국가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별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언어에 따라 영어 또는 현지어로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특허청(<https://ipvietnam.gov.vn>)의 경우, 영어, 베트남어, 아랍어, 프랑스어, 일본어 5개 언어를 제공하나 베트남어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① 사이트 메뉴 중 ‘TRA CỨU-THỐNG KÊ(검색-통계) > Tra cứu sáng chế/GPHI Việt Nam (WIPO Publish)(특허 검색/GPHI 베트남(WIPO 발행))’ 클릭

〈그림 16〉 베트남 특허청 ‘검색-통계’ 메뉴



- ② 좌측 선택 항목 중 ‘Nước chủ đơn(신청국, Applicant Country)’ 선택하여 검색조건 추가
- ③ ‘Tên(제목, Title)’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 입력
- ④ ‘Nước chủ đơn(신청국, Applicant Country)’에 ‘VN(베트남)’ 입력하여 조회

〈그림 17〉 베트남 특허청 ‘특허 검색’ 화면



○ 농기자재 수출 준비 및 초보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사업

- ‘농기자재 수출 준비 및 초보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국내 농기가재 수출 준비 및 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통해 기업 니즈를 파악하고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 농기자재 :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농기계, 시설원예자재, 축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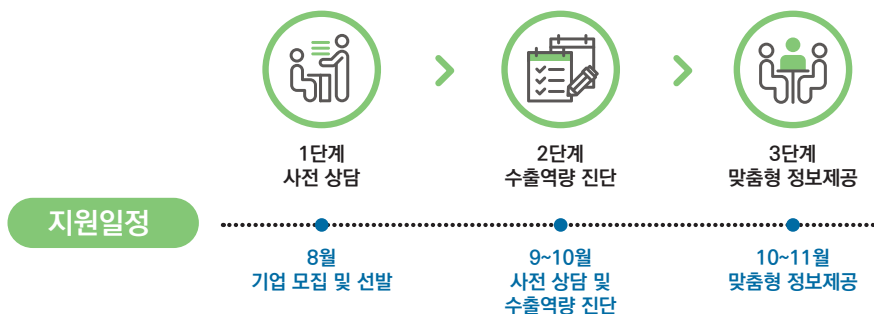
〈표 16〉 농기자재 수출 준비 및 초보기업 맞춤형 제공 정보

구분	내용	
공통	HS CODE 매칭	수출물품의 HSK CODE를 수출 대상국 기준 HS CODE로 매칭
	정부지원사업 및 농기자재 분야 해외전시회 안내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및 해외 전시회 안내
선택	현지 전문가 제품 평가 정보제공	현지 전문가(유통업체 등) 인터뷰를 통한 수출 대상 제품 평가 정보 안내
	현지 경쟁제품 정보제공	현지 조사를 통한 경쟁제품의 가격, 성분 등 스펙 정보 안내
	해외인증 정보제공	해외인증 취득 절차 및 비용 등 상세 정보 안내 ※ 추천 품목 : 시설원예자재, 축산자재
	인허가 정보제공	현지 등록/인허가 신청 또는 필드테스트 절차 안내 ※ 추천 품목 : 농약, 비료, 농기계, 사료, 종자 등
	수출실무 정보제공	농기자재 수출 프로세스, 기본 준비 서류 등 정보제공

출처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신청방법은 이메일(agritech@epis.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로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 및 정확한 접수 기간 확인은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www.maps.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각 담당자로부터 사전컨설팅 양식지, 수출역량 설문조사지, 회사소개서 및 제품소개서, 기타 제품 이해를 돕는 설명자료를 요청하는 연락이 오며, 모든 자료가 제출된 1~2개월 후 맞춤형 정보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 2022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일정 안내



출처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정부지원사업 및 농기자재 분야 해외전시회 안내

 정부지원사업 안내			
순번	지원사업/서비스명	주관기관명	내용
1	기업육성사업 -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기자재에 적용되는 국제인증, 제품등록 등 인허가 취득에 대한 지원
2	기업육성사업 - 글로벌마켓테스트 지원 사업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현지 테스트, 통관운송, 박람회 세미나 참가 등에 대한 지원
3	공익관세사 제도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익관세사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상담 수행
4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절차(지연), FTA, 품목분류 등 통관애로사항 해소 지원
5	중소기업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컨설팅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세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원산지 관리 현황을 사전 확인·점검하여,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6	수출 바우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장단계별로 바우처를 부여하여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예: 통번역, 서류대행 등)
7	해외비즈니스 매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발굴된 바이어 정보 제공
8	수출입 운송비 할인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물류 협력업체를 통한 물류비 할인 서비스

 해외 전시회 안내			
			
전시회명	Vietstock 2022 Expo & Forum	전시회명	Growtech Expo 2022
개최기간	2023년 일정 미공개	개최기간	2022.12.07~12.10
개최국 및 도시	베트남 호치민 (Ho Chi Minh)	개최국 및 도시	베트남 호치민 (Ho Chi Minh)
홈페이지	www.vietstock.org	홈페이지	growtech.vn

(*) 상기 제공 정보는 2022년 11월 기준 조사 및 작성되었으므로, 사업 및 전시회 참여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STEP 3 제품 현지화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수출대상국에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지 농장의 사육시설, 형태 및 생산관리 기준에 맞춰 수출하고자 하는 축산ICT기자재를 고도화/개발하고, 현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를 제공하는 등 현지화를 진행합니다.

1 글로벌 제품개발

-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기자재들은 국내 축산업을 기반으로 연구 및 시험되고 생산되기 때문에 현지화는 기후나 사육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에서 판매 제품이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 국가마다 다른 사육시설 및 생산관리 기준은 국내 축산기자재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개선이 요구됩니다.

〈표 17〉 글로벌 경영 기법

현지화(Loc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 문화, 언어, 관습,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 • 현지의 특색과 정체성을 담은 재화나 서비스로 해당 지역의 인지도 확보
글로벌화(Glob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와 반대로 재화나 서비스 등을 세계공통으로 통일 • 자원가의 우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
글로컬(Gloc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 • 세계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문화, 기호, 소비자의 행동양식을 존중하고 이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

- 다만, 각 국가별로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 및 생산 비용을 불필요하게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각국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수요 파악을 통해 표준화된 제품을 설계하고 공통적인 핵심 부품 사용을 극대화하면서 일부분만 현지시장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좋습니다.
- GM, Toyota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핵심부품은 표준화하고 외형에 대한 부분을 현지화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표 18〉 축산ICT기자재 글로벌제품화 설계(안)

사료자동급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대상국의 평균 사료라인 두께를 확인하고 사료라인에 부착되는 상부캡 두께 변경 - 예) 중국 및 베트남의 평균 사료라인 60파이로 국내 평균 두께와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대상국의 평균 사료성분비를 확인하고 사료토출부의 회전체와의 간격, 회전체의 하부 토출부 너비 변경
환경관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대상국의 축사 통신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제품 통신방식 변경 - 예)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ICT 장비의 시리얼 통신 및 유무선 통신 대부분의 통신방식을 수용토록 보완

② 제품라벨 제작

가. 제품라벨 제작 주의사항

-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와 현지 제품 유통을 위해서는 대상국의 현지 언어로 작성된 제품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라벨이 수입국의 관리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입 통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과 상품의 가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표 19〉 제품라벨 제작 주의사항(중국, 베트남)

구분	중국	베트남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표시면 기재 내용은 한글과 중문이 일치해야 함 중문 라벨 내용은 반드시 중국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기재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라벨이 위치해야 함 베트남어를 기본으로 분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필수 표기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명 제조업체명 및 주소(or 수입업체/대리업체) 제품번호 규격(사이즈, 전압/주파수/출력 등) 기능 상품집행표준 원산국 수입/판매자정보 사용설명 주의사항 (경고마크 or 경고설명문 등) CCC인증마크 (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명 제품 책임자 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원산지 수량 제조연월 사양(중량, 가로*세로 사이즈 등) 안전경고 (사용지침 및 보관지침) CR마크 (해당 시)
관계법령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Decree 43/2017/N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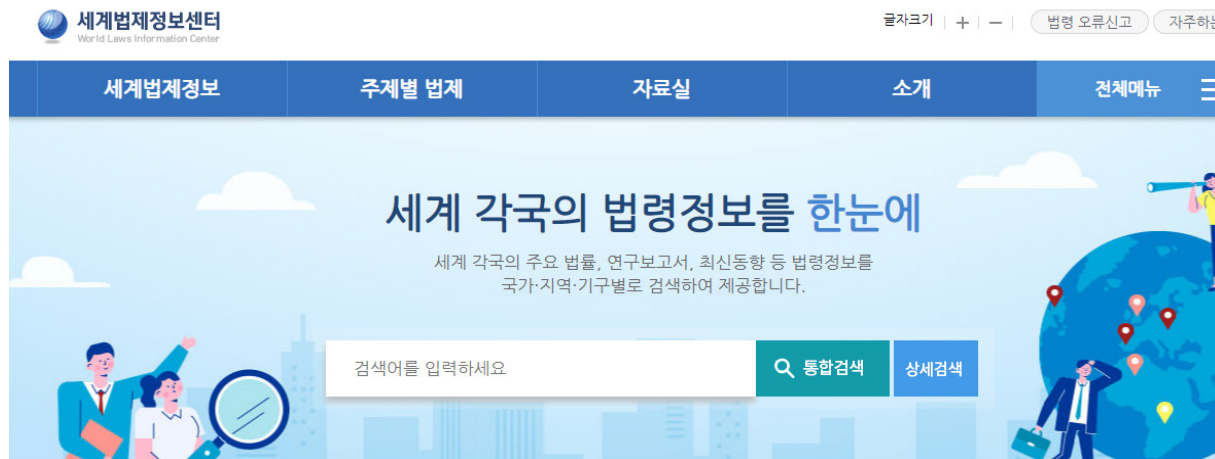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나. 국가별 제품 표기 및 라벨 관련 규정 확인절차

- 국가의 품목별 표시 규정은 해당 국가의 제품 표기 및 라벨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를 통해 관련 법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및 국가 기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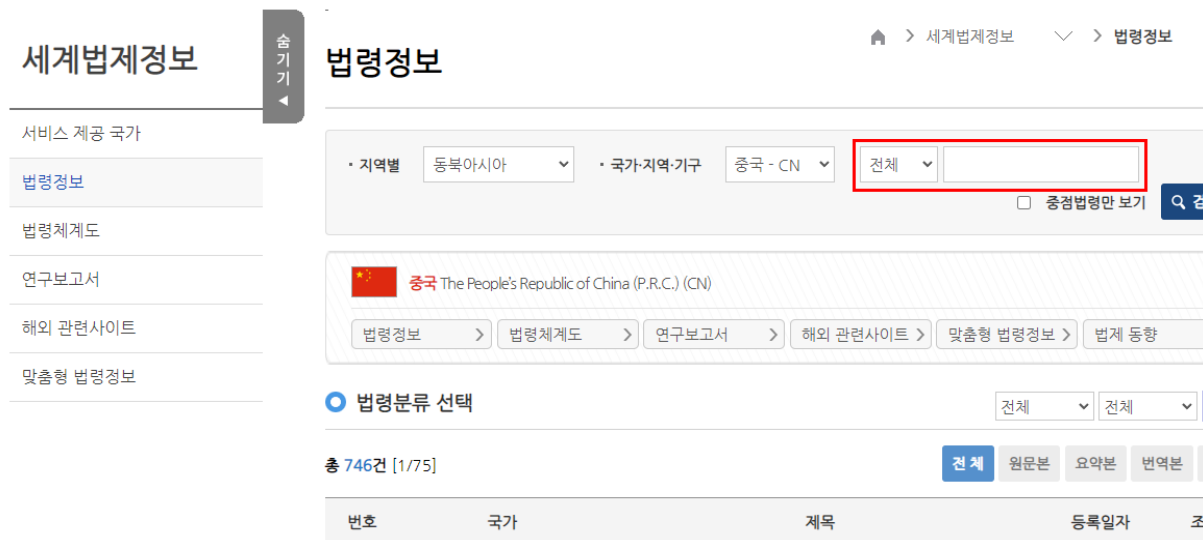
〈그림 21〉 세계법제정보센터 메인 화면



2) 법령 내용 기준 검색

- 국가별 제품 표기 및 라벨 관련 규정은 '제품 표기', '제품 라벨'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령정보' 검색 화면



- 국가 혹은 법령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이 어려울 경우,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메뉴 중 '세계법제정보 > 맞춤형 법령정보'에서 신청 가능
- 신청건수 : 신청 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1신청인당 월 최대 3건
-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③ 제품 매뉴얼

- 제품 매뉴얼은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소비자가 제품 사용시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수출제품에 대한 매뉴얼은 단순히 내수용 매뉴얼을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지의 축산기자재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장비활용 능력 등을 파악하여 매뉴얼을 접하는 대상에 맞춰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지에서의 현장 제품설치, A/S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의 바이어, 협력사 등에게 제공할 제품설치 매뉴얼 제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 20〉 제품 매뉴얼 제작 시 참고사항

구분	내용
목적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예: 사용법 안내, 안전 지침 제공 등) • 대상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전문가용 장비인지, 일반 사용자용인지에 따라 내용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어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와 관련된 용어나 표현은 일관성 있게 사용합니다. • 모호한 용어나 전문 용어는 주석이나 용어 설명란을 통해 정의합니다
지침에 번호 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적인 작업이나 단계별 지침은 번호나 불릿으로 구분하여 보기 쉽게 표현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 가능한 한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복잡한 문장 구조는 피합니다.
시각적 요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그림,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장비의 주요 부품이나 작동 방식 등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때는 레이블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안전 지침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나 주의사항은 눈에 잘 띄게 표시합니다. • 예: “주의”, “경고”와 같은 표시를 사용하여 중요한 지침을 강조합니다.
타 제품 매뉴얼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제품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구성, 포맷, 언어 스타일 등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매뉴얼을 실제 사용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피드백을 받습니다. • 가능하다면, 실제 사용자에게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게 하여 매뉴얼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합니다.
업데이트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변경사항, 사용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합니다.
디지털 및 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버전(온라인, 앱 등)과 인쇄 버전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합니다.

- 자체적으로 수출용 매뉴얼 제작이 어렵거나 보다 완성도있는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테크라이터를 고용하거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테크라이터 : 소비자 사용 편의를 위해 설명서를 제작하는 기술자, 기술관련 제품의 사용설명서, 도움말 등을 제작하는 업무 수행

4) 해외규격 인증제도 확인 및 인증 획득

가. 필수 인증사항 확인 방법

- 축산ICT기자재는 장비 특성상 전기·통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대상 국가에 따라 사전 필수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대상 국가의 필수인증 제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 통관 및 현지 시장 유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기 및 전자제품 및 무선통신 제품 등은 필수인증 외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규격 및 인증제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표 21〉 인증제도별 대상 품목 예시_중국, 베트남

인증 구분	대상 품목
중국 CCC인증	(농기계) 식물보호장치, 트랙터 등, (전기안전) 전선부품, 교류정격전압 3KV이하의 철도, 차량용 케이블 등, (건축자재) 안전유리, 세라믹 타일, (방범) 침입감지기, 도난방지 경보통제기 등, (소방용품) 소방차, 화재경보설비 등, (코팅제품) 자동차타이어, 솔벤트 코팅제품
베트남 CR마크	전기발삼, 순간 전기 온수 장치, 전기 온수 난방 및 저장 장치, 전기주전자(국내용), 헤어 전기 건조기 및 기타 헤어 케어 장치, 전기 팬(국내용), 전자레인지, 전기 다림질 장치(국내용), 휴대용 침지 히터, 전기 손 건조기, 전기 그릴, 전기 커피 또는 차 제조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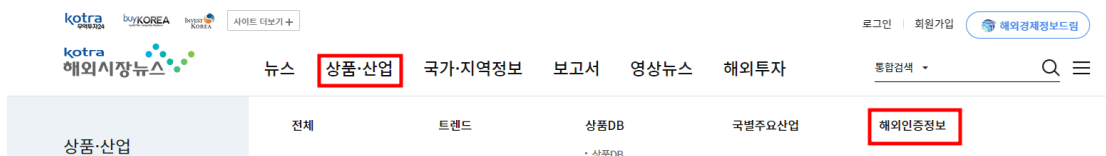
출처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국가별 인증대상 품목은 HS코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세부 품목 확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를 통해 품목명/인증명/품목군 및 HS코드/국가 및 지역을 기준으로 인증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품목의 인증제도 정보(인증기관, 절차, 필요서류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메뉴 중 '상품·산업 > 해외인증정보' 클릭

〈그림 22〉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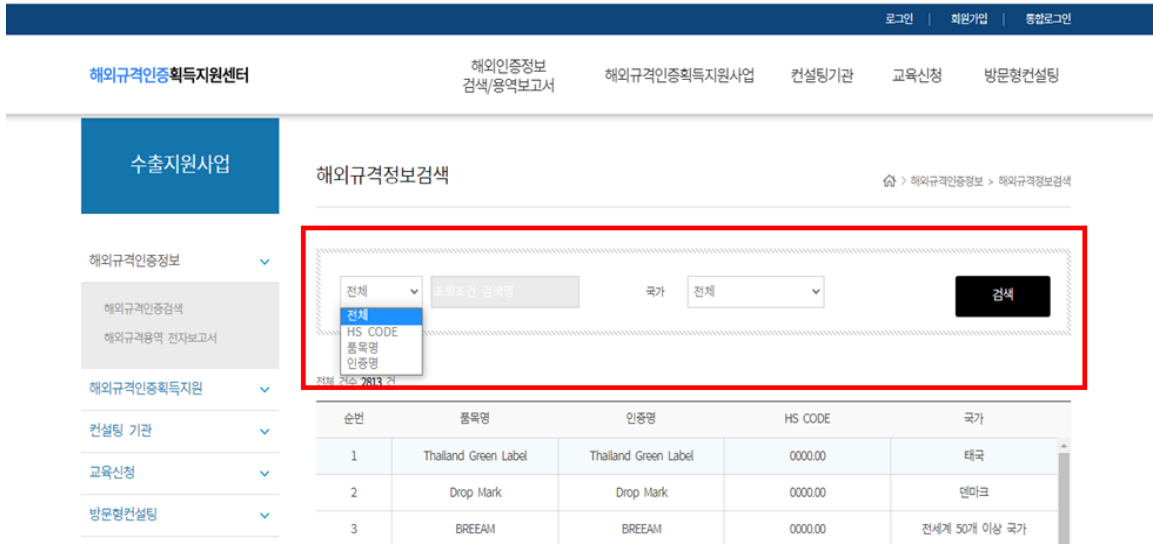
② 검색창에 '품목명, 인증제도명' 또는 'HSCODE'를 입력하거나, '국가'를 검색하여 조회

〈그림 23〉 KOTRA 해외시장뉴스 '해외인증' 검색 조건

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main.do>)를 통해 품목명/HS코드/인증명/국가를 기준으로 인증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품목의 인증제도 정보(인증기관, 절차, 필요서류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메뉴 중 '해외인증정보 검색/용역보고서 > 해외규격인증검색' 클릭

〈그림 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해외규격' 검색 조건



3)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tradenavi.or.kr>)를 통해 국가/인증명/HS코드/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인증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품목의 인증제도 정보(개요, 대상 품목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 메뉴 중 '무역규제 > 해외인증' 클릭

② 검색창에서 '국가명'을 선택하거나, '명칭, 산업분류코드, HSCODE'를 입력하여 조회

〈그림 25〉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해외인증' 검색 조건



나. 인증 획득 절차

1) 인증 취득 신청방법

- 기업에서 필요한 해외 규격인증을 자체적으로 획득하는 경우, 각 규격인증의 신청절차, 신청기관,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제도의 신청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제도별 취득절차 및 필요서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를 참고하거나 해당 인증제도의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인증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시험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 22〉 인증 획득 지원 절차_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원 항목	중국 CCC인증	
신청절차	신청→서류심사→형식시험→공장심사→기관 종합 평가→인증서(마크) 발급→사후검사 및 관리	
시험	시험기관	CQC, CNCA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시험비용	약 200~300만 원 (단, 제품별 상이)
	소요기간	2~3개월 (단, 부적합 발생 시 기간 증가)
인증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QC (http://www.cqc.com.cn) • CVC (http://www.cvc.org.cn)
	인증비용	약 500만 원 (단, 제품별 상이)
	소요기간	약 2개월
	유효기간	5년 (단, 연간 정기 사후심사 필요)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신청서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 제품 증문 설명서 • 전기회로도, 제품 조립도 • 제품 주요 부품리스트 • 부품인증서 및 부품 사양서 • 제품 표시사항 • CB (Certificate + Test Report) • 공장등록증 (생산지 주소가 다를 시) • 공장심사 조사표 • 파생모델 신청 시 기본모델과 비교표 : 색상, 디자인, 정격사양, 부품변경 등 • 기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요청자료 	
인증 취득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 : 서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신청서 제출 2. CCIC : 신청서류 검토 또는 보완요청 3. 중국 현지 시험소 :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 시행 4.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 : 시험 완료 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 실시 5. 신청자 : 시험 및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 납부 <p>※ CCIC(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중국검험인증그룹) :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인가위원회 (CNAS)의 승인 . 허가를 받아 설립된 중국 내 최대의 인증. 검사.시험 기관</p>	

2)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자체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기 어렵거나, 언어 및 서류 준비 등의 사유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⁶가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기관이며, 이밖에 농정원(EPIS), 지자체 등에서도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표 2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https://www.smes.go.kr)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
지원내용	• 543개(일반인증 486개, ESG·탄소중립 인증 57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트랙에 한해 최장 1년 연장 가능)
지원한도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및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동일하게 일반트랙 지원대상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필수 신청서류	• (온라인 작성)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클릭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 (전산 업로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고비용인증 신청 시), ESG자가진단 보고서(ESG통합플랫폼 작성), 신청인증 요구가 명시된 납품처 요구서(ISO 기반 시스템인증 신청 시)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제외자격 (일부)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6 수출입지원사업 운영기관 : 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중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P.195-197

5) 국외 지식재산권 등록

가. 국외 지식재산권 개요

- 국외로의 제품 수출 시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및 디자인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대상국의 특허,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수출대상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 기관을 조사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등록과정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제 출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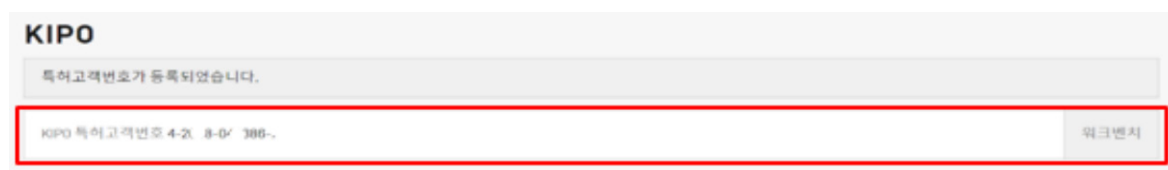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할 때는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됩니다.

1)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특허로, ePCT 계정연계방법)

-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WIPO에서 제공하는 ePCT(<https://pct.wipo.int/ePCT>)를 이용하거나 PCT-SAFE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상으로 출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PCT란, PCT 출원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출원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WIPO PCT 정보시스템입니다. ePCT를 이용하시는 경우, PCT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ePCT 계정정보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를 통해 보다 상세한 ePCT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WIPO 계정 생성 및 강력 인증 설정
- ② 특허로 '특허고객번호'와 ePCT 계정 연계

〈그림 26〉 ePCT 특허고객번호 연계 완료 확인



출처 : ePCT 계정 생성 및 특허로 계정 연계 방법 (2019), WIPO

- ③ 통합서식작성기(KN-Editor)로 명세서, 요약서, 청구범위 및 도면 등 첨부문서 작성
 - 통합서식작성기(KN-Editor)란, WIPO 및 특허청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특허문서 작성 전용 워드 프로세스형 SW이며 특허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메뉴 중 '고객지원 > 전자출원 > 전자출원SW다운로드' 클릭)
- ④ ePCT를 통해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첨부문서 첨부
- ⑤ '검토 및 제출' 클릭하면 한국 특허청에 작성한 출원서 제출 단계로 이동
- ⑥ 최종 서류 검토 후 'PO/KR에 국제출원 제출' 버튼 클릭

2) 국가별 특허 출원

〈표 24〉 특허 등록 및 출원 예시(베트남)

등록 요건	지식재산권법 제 58조 제 1항 :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출원인 적격 권리: 발명자 또는 승계인, 계약양도 고용인 등 ▶ 권리적격에 의한 유추적용 :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 발명의 권리자 등	
출원 공개	특허출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공개하여 중복연구 및 투자 위험을 줄임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	
형식 심사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시)	무효기준	출원이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원서에 명시된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이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출원이 규정된 출원 접수 방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결과 부적합 시 출원 불수리 통지서 발송 (흡결치유 또는 불복 기한 및 이유 기재) ▶ 결과 불복 및 흡결 치유 : 출원 접수 통지서 제공 ▶ 미대응 및 흡결 불치유 : 불수리통지서 송달 및 출원 미접수	
실질 심사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실질심사청구료를 지불하여 심사 청구 기한 내 실질심사청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출원 기한 만료 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	
특허 결정	등록	특허권 허여의 결정 및 국가 등기소에 통지 출원인에 '특허허여통지서' 송부
	거절	출원인에 거절이유를 서면 상(거절이유통지서) 통지 ▶ 거절이유통지서 접수 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가능 ▶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 가능 (원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일 소급)
소요 기간	출원~등록	약 24-30개월
	심사기간	18개월 (PPH 프로그램 신청 시 6-9개월)
출원 서류	출원인/발명자 정보	이름, 주소, 국적 등
	베트남어 명세서 2부	명칭, 세부 설명,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
	위임장	
	우선권 주장서류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증명 서류
	해당 시 추가서류	양도증, 우선권 번역문
특허 효력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존속 기간동안 특허 유지료 납부 시)
	효력	자신의 특허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심판 제도	불복심판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실질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	특허로 보호될 수 없는 특허에 해당되는 경우 진보성 또는 신규성에 위반된 경우 등록권자가 특허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 다수의 등록권자 중 일부가 해당 특허출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의 발명자가 출원인에 의해 고의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자체적으로 국외 지식재산권 등록(출원)이 어려울 경우 관련 지원사업⁷을 활용하거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수출입지원사업 운영기관 : 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중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P.195-197

⑥ 수출 제품 단가 책정

- 수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주문 수량을 확인하여 최소 주문량을 설정하고, 현지 시세,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인코텀즈 결제 조건별 제품 기준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 제품 수출액을 사전에 결정해야 바이어와의 상담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코텀즈 등의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 25〉 제품 단가 책정 기준

구분	수출 제품 단가 책정 과정
1. 최소 주문량 설정	국가 간 통관절차 및 소요기간, 물류 운송 등 요건 검토를 통해 최소 주문량을 책정하여 손해를 방지하도록 함. 설정한 최소 주문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 단가 구성에 활용하도록 함.
2. FTA 협정세율 ⁸ 확인	FTA를 활용할 경우 수입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대상국가의 FTA 체결여부 및 협정 품목(HS코드)을 파악하고, 협정세율을 확인해야 함. 같은 품목이라도 결정된 HS코드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발생함.
3. 국가 및 인코텀즈 ⁹ 조건별 단가 결정	대상 국가 및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는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바이어와의 협약 전 기준 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① 국가별 제품 단가 : 현지 물가 및 제품 시세, 관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단가 설정 ② 인코텀즈 조건별 단가 : 국내외 운송비, 터미널 요금, 보험 등 조건에 해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조건별 단가 설정
4. 제품 단가 책정 시 고려사항	제조원가, 물류비용, 금융비용, 행정비용, 이 밖의 기타비용을 고려해야 함. ① 제조원가 : 원자재, 부자재, 생산비용, 검사비용, 포장비용 등 ② 물류비용 : 내륙운송비, 창고료, CFS, Other Charge, 해상보험료 등 ③ 금융비용 : 무역금융, 이자, 환가료, Less Charge 등 ④ 행정비용 : 수출통관, 수수료, 승인 및 제증명료 ⑤ 기타비용 : 에이전트 수수료, 인증 획득비용, 지식재산권 획득 및 가치 등

- 인코텀즈 중 수출 시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와 CIF입니다. 바이어와의 협상 전에 두가지 경우를 모두 책정해 두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FOB : 매수인(수입업자)이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
- CIF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부담

8 HS코드 기준 관세율 확인 : IV.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18-120

9 인코텀즈 : III.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중 STEP 6. 수출 계약, P.77-81

- 제품 단가 책정 시 물류비용, 행정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해상화물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부대비용은 수출입 화물의 통관 및 운송, 대금회수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며, 주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통관 및 운송비용 등은 화물의 특성 및 금액, 대행업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출입과 관련된 은행수수료도 은행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포워드 선정 시 각 항목별 견적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26〉 해상화물 기타비용

구분	비용 항목	세부내용
부대 비용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터미널과 본선의 선측의 구간에서 화물의 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하역장비의 사용료와 창고료 등
	CFS 작업료 (CFS Charge)	•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지 못하는 LCL 화물의 혼재 또는 분류 작업비
	서류발급비(D/F : Documentation Fee)	• 선사가 일반관리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용 • 수출 시 선하증권 발급비와 수입 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가 포함
	컨테이너세 (Container Tax)	• 정부가 항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항만 배후도로를 운송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입출항료 (Wharfage)	• 정부가 항만에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톤당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부두사용료
할증료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주로 USD)의 약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유가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급격한 유가의 인상분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혼잡할증료/체항료 (congestion surcharge)	• 항만에서 선박의 폭주로 인하여 선박이 장기간 대기할 경우 부과
	운하할증료 (canal surcharge)	•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등이 봉쇄될 경우 항해일수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전쟁위험할증료 (war risk premium)	• 전쟁위험지역에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
추가 운임	과중할증료 (heavy lift surcharge)	• 3톤 이상의 중량화물 하역을 위한 특수장비 이용료
	장척할증료 (long length surcharge)	• 길이가 긴 화물 하역을 위한 특수장비 이용료
	양륙항선택료 (optional charge)	•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선적된 화물이 양륙항 입항 48 시간 전에 양륙항을 확정하는 경우 적부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부과
	양륙항변경료 (diversion charge)	• 화주가 선적 시 지정했던 양륙항을 변경할 경우 부과
	환적료 (transshipment charge)	• 선박이 최종 목적항에 직접 기항하지 않아서 타 선박으로의 환적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위험화물할증료 (dangerous cargo charge)	• 화물의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해 운송 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
	체화료 (Demurrage Charge)	• 화주가 무료장치기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지체료 (Detention Charge)	•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무료대여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으로 선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STEP 4 홍보물 제작

해외 바이어는 수출자의 외국어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을 보고 수출자와 수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출에서 홍보물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출대상국이 명확하여 집중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수출대상국가의 현지 언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언어를 제공한 국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당 국가 바이어의 접근성이 향상하는 등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1)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성하는 경우, 업체의 기획 방향에 따라 업체에서 호스팅의 구매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제작 대행업체를 활용하거나 홈페이지 제공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도메인을 결정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활용하여 바이어가 수출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호스트 정보는 홈페이지 기획안에 따라 활용할 크기를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표 27〉 도메인 제공기관 및 등록 비용

(등록 기준 : 1년)

기관 도메인구분	후이즈	예스닉	U+호스팅	비아웹	가비아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공통	.com	28,600 원	15,400 원	9,900 원	14,000 원	20,000 원
	.net	28,600 원	22,000 원	9,900 원	13,200 원	20,000 원
	.info	28,600 원	15,400 원	22,000 원	14,500 원	20,000 원
	.biz	28,600 원	15,400 원	22,000 원	14,500 원	20,000 원
한국	.co.kr	28,600 원	15,400 원	9,900 원	9,800 원	20,000 원
	.kr	28,600 원	15,400 원	9,900 원	9,800 원	20,000 원
일본	.jp	143,000 원	143,000 원	165,000 원	51,000 원	110,000 원
중국	.cn	55,000 원	55,000 원	27,500 원	36,320 원	40,000 원
	.com.cn	55,000 원	55,000 원	-	-	40,000 원
	.net.cn	55,000 원	55,000 원	-	-	40,000 원
	.org.cn	55,000 원	55,000 원	-	-	40,000 원

※ 도메인
제공기관

후이즈 : <https://domain.whois.co.kr/>
 예스닉 : <https://www.yesnic.com/>
 U+ 호스팅 : <https://bizmarket.uplus.co.kr/>
 비아웹 : <https://www.viaweb.co.kr/>
 가비아 : <https://domain.gabia.com/>

- 홈페이지의 제작비용은 기업의 특성, 디자인, 트래픽 크기 등에 영향을 받게되므로 제작 대행업체의 활용 시에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를 기획할 때는 회사 및 제품의 소개내용, 담당자 안내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이트맵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가. 자체 제작

- 기업명 또는 기업 특색을 나타내는 간단한 단어를 활용하여 URL과 호스트를 확보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각색하여 기업만의 차별화된 안내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페이지 사이트맵 및 메뉴구조도 기획, 번역
 - ② URL 및 호스트 확보 : 기획 방향에 따라 트래픽 및 호스트 등 조건 선택
 - ③ 웹디자인 및 제작 : 웹 개발이 가능한 경우 자체 개발 또는 제작업체 활용
-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통번역 서비스와 같은 번역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Google이나 Naver에서 제공하는 단순 번역 프로그램은 문맥상 맞지 않거나 오번역이 많아 무역 거래를 위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 활용

-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업체를 활용하여 도메인 및 호스팅을 동시에 제공받고, 제작 및 디자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행하여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제작 대행업체와 기획 방향을 논의하고, 저작권 등의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협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소통이 원활한 업체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 ① 홈페이지 사이트맵 및 메뉴구조도 기획
 - ② 홈페이지 제작업체 탐색 및 선정
 - ③ 디자인 및 세부 구성 협의
 - ④ 다국어(영어 및 선택 언어) 번역 반영

다. 홈페이지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의 활용

- 홈페이지 제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기업 단독홈페이지가 아닌 제공되는 서버 안에서 회사 소개 및 제품 소개 페이지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구글, 네이버 등)이나 마켓플레이스(buy korea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웹 카탈로그의 성향이 강하므로, 홈페이지 기획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① 제공 내용 및 범위의 결정
 - ② 플랫폼 선택 및 홈페이지 구성

② 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진행을 위해서는 회사를 소개하고, 모델별 기능과 활용 이점을 알릴 수 있는 카탈로그, 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홍보자료는 마케팅 방향에 따라 인쇄물, 영상, 책자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초 기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획안의 제작 : 소개목적, 모델 기능 정리
 - 홍보자료의 선택 : 인쇄물, 책자, 영상(시간 및 페이지 수 등 기획틀 설정)
 - 홍보자료의 구성 : 제품 사진, 실제 활용 화면, 주요 기능 등
- 인쇄물은 브로셔, 카탈로그 등으로 세분화되어 배포 대상과 용도에 따라 제작 방법이 달라집니다. 페이지수를 예를 들자면, 카탈로그의 경우 4배수로 작업이 진행되며, 브로셔의 경우는 6페이지, 10페이지 등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표 28〉 홍보 인쇄물 제작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목적 및 대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하려는 자료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예: 제품 소개, 이벤트 홍보, 기업 소개 등) • 대상 연령대, 성별, 관심사 등에 따라 디자인과 내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구성 및 계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정보는 눈에 띄게 배치하고, 정보의 계층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 정보의 흐름과 구성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자인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폰트, 이미지 등의 디자인 요소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 이미지의 경우 고해상도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저작권을 확인합니다.
명확성과 간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 너무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은 피하며, 관련된 내용끼리 묶어서 표현합니다.
호출 행동 (CTA, Call to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행동(예: 문의하기, 웹사이트 방문, 제품 구매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명확한 CTA를 포함합니다.
인쇄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 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해상도와 종이 품질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전문 인쇄업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인쇄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이즈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 방식, 사용자 편의성, 내용의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이즈와 형태를 결정합니다.
연락처 및 기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의 기본 정보는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피드백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디지털 및 인쇄 버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버전으로 사용될 경우 화질, 파일 크기, 화면 해상도 등을 고려합니다. • 인쇄 버전과 디지털 버전에서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색상 프로파일을 확인합니다.

- 특정 수출대상국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 언어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역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현지인 검토과정을 수행하는 등 정확한 번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자사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해외규격인증서, 공인성적서, 기업재무정보, 주요 거래처 목록 등을 제공하여 바이어의 신뢰와 관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5 바이어 발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산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축산관계자, 판매대리점 등 다양한 잠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온라인 검색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적합한 구매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바이어 발굴 방법

가. 축산 전시회 및 제품 설명회

- 글로벌을 대상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는 축산전시회, 축산 기술 설명회 등의 참여를 통해 홍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전시회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준비한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타사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 행사에 방문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거래단계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 전시회에 참여할 때는 카탈로그 등의 소개 및 홍보자료와 함께 행사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및 이미지 홍보물을 배치하거나 샘플 제품을 구비할 경우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 수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 전시회 및 설명회 등의 참여를 통해 대상 바이어를 발굴하고, 미팅 및 자료의 교환 등 지속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바이어를 확보하여 제품 수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전시회 성과를 얻기 위하여 전시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참가 전/후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29〉 바이어 예상 질문 및 답변 전략

바이어들이 흔히 하는 예상질문	바이어 상대 답변 요령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입니까? 무역 대행사 입니까? • 제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이 제품은 주로 어느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 제품 관련 인증&특허가 있습니까? • 최소 주문량은 어떻게 됩니까? • 대금 결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 포장 및 운송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A/S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 마켓 테스트를 위해 샘플 및 카달로그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숙지 • 매사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 • 바이어가 속한 국가의 비즈니스 매너 숙지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가격은 최소 수량 기준 약간 높게 제시 • 상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속적 관리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표 30〉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사전·사후 CHECK POINT

구분	내 용
전시회 참가 전 CHECK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및 정부지원 가능 여부 • 파견직원 인원 • 참가업체 매뉴얼 숙지(전시품 반출입, 호텔정보, 장치업체 선정 및 장치관련 사항 등 포함) • 부스 디스플레이 및 전시품, 비품 • 사전 마케팅(참가 바이어 명단 확보되면 이메일로 초청장 발송) • 유력 바이어에게 증정할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준비 • 영문 카탈로그 및 명함
전시회 참가시 CHECK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를 찾아오는 바이어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상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 • 바이어 접대용 다과 준비 • 전시회 개최시간 준수 • 통역원이 있다면 사전에 전시품에 대한 교육 진행 • 부스에서 식사하거나 부스를 비우면 안됨. • 이번이 아니어도 잠재 바이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장 구매의사가 없다고 소홀히 대하면 안됨 • 경쟁사의 제품 정보를 최대한 수집 • 전시장 내 분실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전시회 참가 후 CHECK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분류 관리 • 바이어 상담일지를 꼼꼼히 분석하여 사후관리 전략 수립 • 전시장에서 만난 바이어에 이메일 발송, 국내 초청 등 신뢰관계 형성 • 관심을 갖은 바이어가 문의를 해오면 최대한 빨리 회신 •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 정보를 바이어에게 지속 제공 • 바이어 신용조사 의뢰 • 인내를 갖고 꾸준히 관리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 KOTRA에서 제공하는 글로벌전시플랫폼(GEP, www.gep.or.kr)을 활용하면 국가, 규모, 산업분야 등에 따른 국제 전시회를 쉽게 파악하고, 전시회의 정보(개최일, 장소, 품목 등) 확인을 통해 적절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1) 전시회 개최정보에 따른 조건 검색

- ① 글로벌전시플랫폼의 메뉴 중 '전시회정보 > 전체 전시회' 클릭

〈그림 27〉 글로벌전시플랫폼 '전시회정보' 메뉴



② 참가를 희망하는 '전시회명, 전시회 규모, 산업분야, 국가, 개최형태'를 검색하여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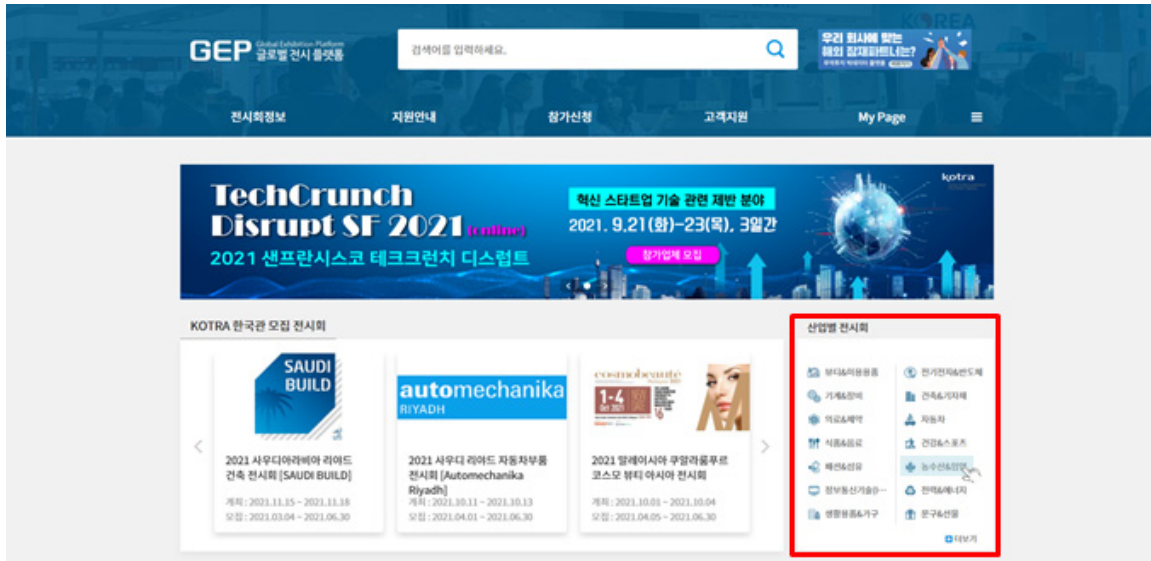
<그림 28> 글로벌전시플랫폼 '조건' 검색 화면

해외전시회명(국문/영문) 해외전시회명 검색	산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건강&스포츠 144 <input type="checkbox"/> 건축&기자재 209 <input type="checkbox"/> 국가중합전시회 15 <input type="checkbox"/> 금속&광물 59 <input type="checkbox"/> 금융&비즈니스서비스 116 <input type="checkbox"/> 기계&장비 434 <input type="checkbox"/> 기타 182 <input type="checkbox"/> 농수산&임업 106 <input type="checkbox"/> 동물&애완용품 16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 154 더보기	국가 국가 대륙 <input type="checkbox"/> 가나 0 <input type="checkbox"/> 가봉 0 <input type="checkbox"/> 가이아나 0 <input type="checkbox"/> 감비아 0 더보기
전시회 규모 참가업체수(전년도 기준) 참가업체수 개 이상 참관객수(전년도 기준) 참관객수 개 이상 전시면적(전년도 기준) 전시면적 선택		개최형태 <input type="radio"/> 전체 <input type="radio"/> 오프라인 <input type="radio"/> 온라인

2) 전시회의 산업분야별 검색

① 글로벌전시플랫폼 메인 화면의 '산업별 전시회 > 농수산&임업' 클릭

<그림 29> 글로벌전시플랫폼 '산업별 전시회' 검색 화면



② 검색된 '농수산&임업' 전시회 리스트 조회 및 참가를 희망하는 개최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3) 국제 전시회 중 축산분야 전시회 검색

① 글로벌전시플랫폼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축산' 입력하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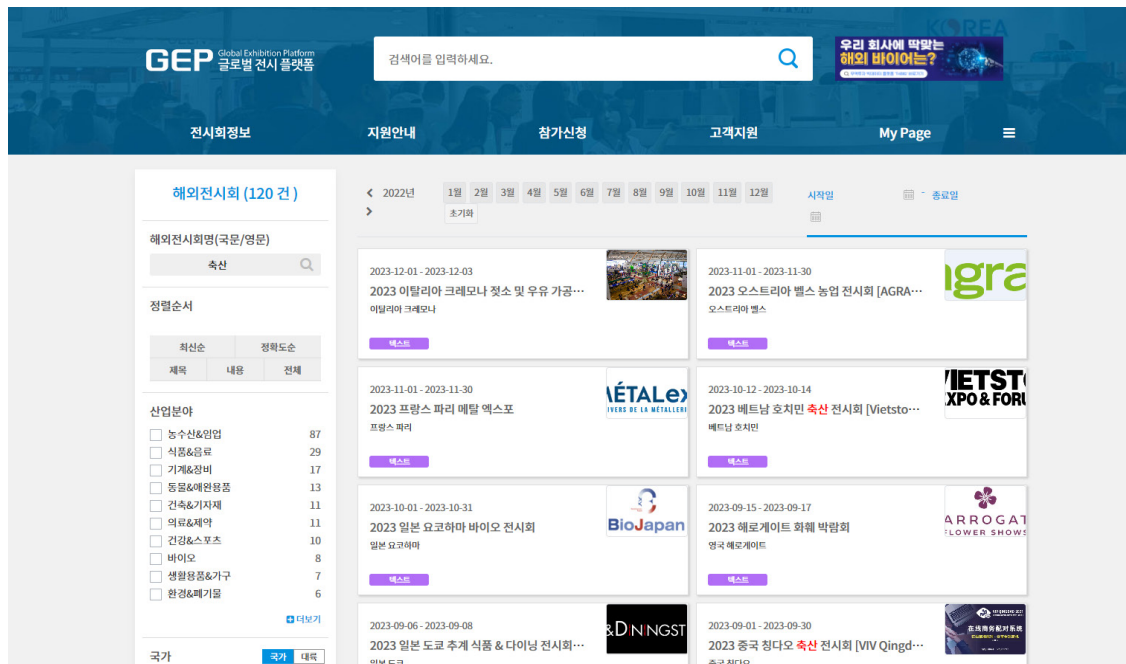
〈그림 30〉 글로벌전시플랫폼 '축산분야' 전시회 검색 화면



② 통합검색결과 중 '해외전시회' 항목의 '더보기' 클릭

③ 검색된 '축산' 관련 전시회 리스트 조회 및 참가를 희망하는 개최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그림 31〉 글로벌전시플랫폼 '축산분야' 전시회 검색 화면



④ 특정 전시회 클릭하여 세부 개최정보 확인

- 전시회 개요,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시품목, 주최기관, 담당자 등의 정보
- 공식 홈페이지 URL
- 최근 3년간의 참가업체 및 참관객 통계
- 개최국가의 해외시장 뉴스

〈그림 32〉 베트남 축산 전시회 ‘Vietstock’ 정보 조회 화면



2023 베트남 호치민 축산 전시회 [Vietstock]

Vietnam's Premier International Feed, Livestock & Meat Industry Show
Vietstock
2023.10.12 - 2023.10.14

관심전시회 추가

개요
해외시장뉴스

개요

Vietstock은 2004년부터 베트남 최고의 국제 사료, 축산 및 육류 산업 전시회로 뛰어난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베트남 및 주변 국가의 동물성 단백질 가치 사슬의 전문가들과 연결할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B2B 플랫폼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전시 안내

개최기간	2023.10.12 - 2023.10.14
개최국가	베트남
개최장소	SECC (Saigon Exhibition and Conv ention Center)
개최규모	10000sqm(㎡)
산업분야	화학&나노, 기계&장비
전시품목	동물 건강, 양식 및 가축 사료, 사료 가공 및 제조 장비 등

● 주최자

주최기관	Informa Markets Vietnam
담당자	Mr. Tony (Lý Minh Thành)
전화	84-938-346-523
팩스	
이메일	tony.ly@informa.com
홈페이지	https://www.informamarkets.com/

● 비교

★ 본 전시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또는 개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전 반드시 주최자 또는 전시장으로 사전문의 바랍니다.

● 통계





년도	참가국수	참가업체수(전체)	참가업체수(외국)
2022	21	206	116



년도	참가객수(단위:백명)
2022	107.79

- 각 축산전시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가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업체의 국가, 주요 사업분야를 확인하고 바이어 혹은 경쟁업체를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3〉 베트남 'I' 국제축산박람회 참가업체 리스트

As of 05/Mar/2020 · Subject to change

NO	참가기업명	국가	BOOTH	사업분야
1		VIETNAM	G20	FEED / CROPTECH - FEEDTECH
2		THAILAND	K4	FEED / CROPTECH - FEEDTECH
3		BRAZIL	AB13	FEED / INGREDIENTS & ADDITIVES
4		DENMARK	G21	FARM PRODUCTION
5		VIETNAM	F8	FEED / INGREDIENTS & ADDITIVES
6		CANADA	H28	FEED / CROPTECH - FEEDTECH
7		USA	E5	FARM PRODUCTION
8		THAILAND	L1	FARM PRODUCTION
9		JAPAN	M10	FARM PRODUCTION
10		ISRAEL	HJ9	FARM PRODUCTION
11		AUSTRIA	D21	FEED / INGREDIENTS & ADDITIVES

※ 사업분야

- FEED/CROPTECH-FEEDTECH
- FARM PRODUCTION

- 일부 축산전시회의 개최국 및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으며, 각 전시회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31〉 축산 국제 전시회 정보

전시명	개최국	장소	품목	공식 홈페이지
VIV Qingdao	중국	Qingdao Cosmopolitan Exposition	장비, 사료,약품, 기타 설비 등	www.vivworldwide.cn
CAHE	중국	CHINA ANIMAL HUSBANDRY EXHIBITION	양돈, 가금, 사료, 의약품, 기계설비 등	www.caaa.com.cn
ILDEX	베트남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ECC)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	www.ildex-vietnam.com
Vietstock	베트남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ECC)	동물 건강, 가축 사료, 사료 가공 및 제조 장비 등	www.informamarkets.com
VIV Asia	태국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BITEC)	식품&음료, 농수산&임업, 환경&폐기물	www.vivasia.nl
Agri-Livestock Myanmar	미얀마	Myanmar Expo Hall	농업용 기계, 사료, 축산업 관련 제품 등	www.agrilivestock.net
중국 동북3성 목축업교역 전시회	중국	하얼빈 국제회의전람스포츠센터	목축업 관련 기계 및 설비, 축산물 등	www.dbxmy.com
Expo Carnesy Lacteos	멕시코	CINTERMEX	축산 장비류, 낙농/우유 생산장비	www.comecarne.org
EuroTier	독일	Hannover	축산 사육 관련 제품/기술, 애완동물 용품 등	www.eurotier.com
S.I.A	프랑스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축산 사육 관련 기술 및 제품 등	www.salon-agriculture.com

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 수출자가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 바이어를 섭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현지 시장 파악 방법이지만 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글로벌 오픈마켓을 이용한다면 부담감을 낮추면서 해외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오픈마켓이란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글로벌 오픈마켓으로 ebay, Amazon, Alibaba, Qoo10, 타오바오가 있습니다. 판매자(Seller)로 회원가입을 하고 물건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알리바바, Qoo10, 타오바오의 경우 홈페이지 자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어를 알지 못해도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표 32〉 글로벌 오픈마켓 대표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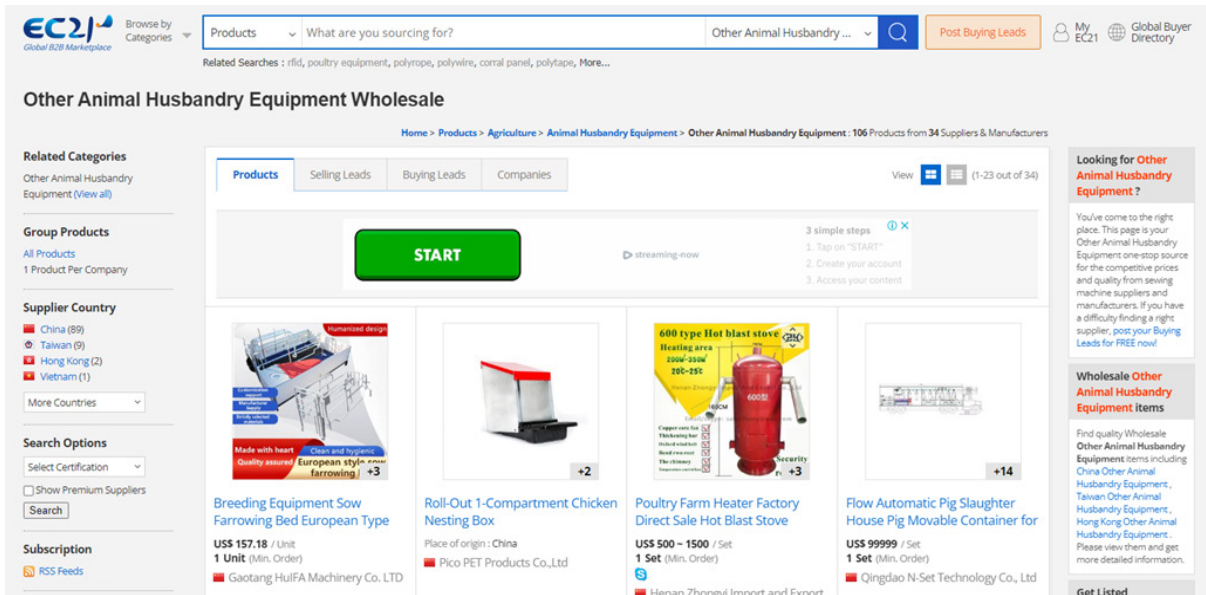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EC21.com	www.ec21.com	대한민국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
이베이(eBay)	www.ebay.com	글로벌 오픈마켓
아마존(Amazon)	www.amazon.com	세계 최대 글로벌 B2C 플랫폼
알리바바(Alibaba)	korean.alibaba.com	세계 최대 글로벌 B2B e-Market Place(중국)
큐텐(Qoo10)	directjapan.qoo10.com	싱가폴 오픈마켓
타오바오(Taobao)	world.taobao.com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 오픈마켓에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검색하게 됩니다. 경쟁사의 동일한 제품군이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카테고리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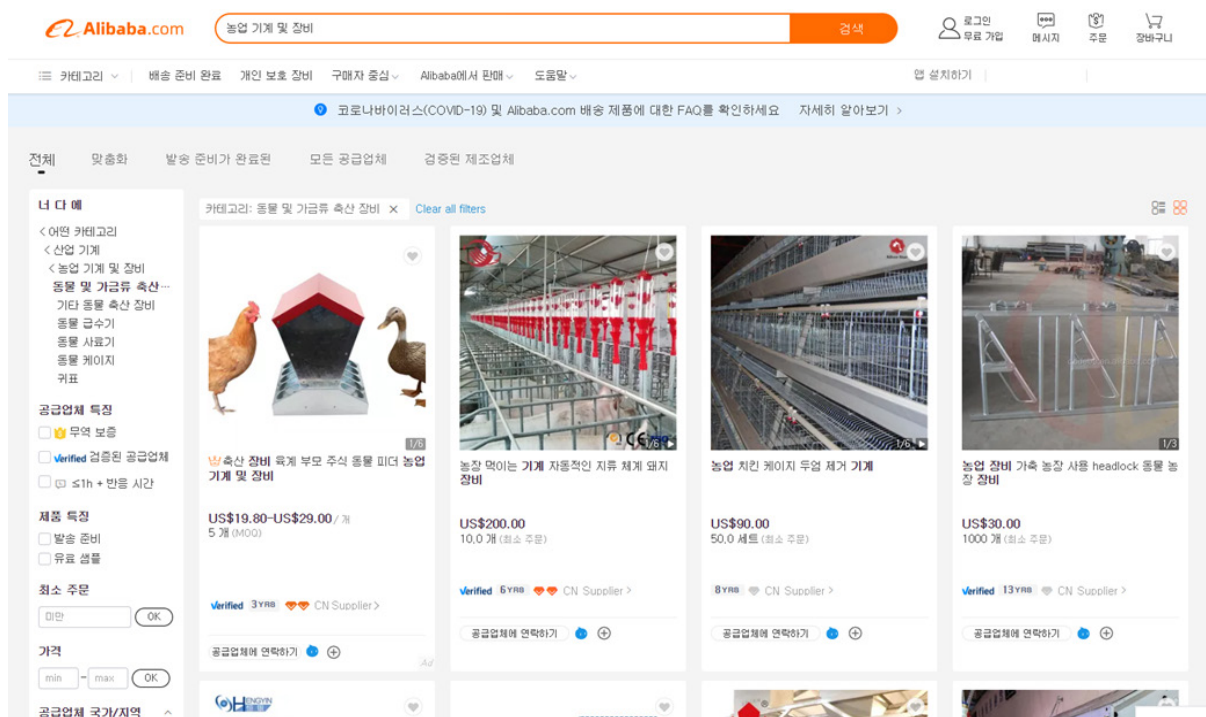
〈표 33〉 글로벌 오픈마켓 ‘축산장비’ 카테고리

사이트명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EC21.com	농업 > 농기계 및 장비 > 축산 장비	동물 케이지, 동물 음수기, 동물 급이기, 귀표, 계란 인큐베이터, 기타 축산업 장비
이베이(eBay)	산업용 장비 > 농업 및 임업 장비 > 가축 용품	가축 동물 사료, 동물 건강&수의학 용품, 가축 울타리 용품, 가축 용품, 돼지용품 등
아마존(Amazon)	파티오, 잔디 및 정원 > 농업과 도시농업 > 가축 관리 용품	축산물 취급용품, 가축 사료 및 물 공급 장치, 가축 건강 용품
알리바바(Alibaba)	산업 기계 > 농업 기계 및 장비 > 동물 및 가금류 축산 장비	동물 급수기, 동물 사료기, 동물 케이지, 귀표, 기타 동물 축산 장비

〈그림 34〉 EC21.com ‘축산 장비’ 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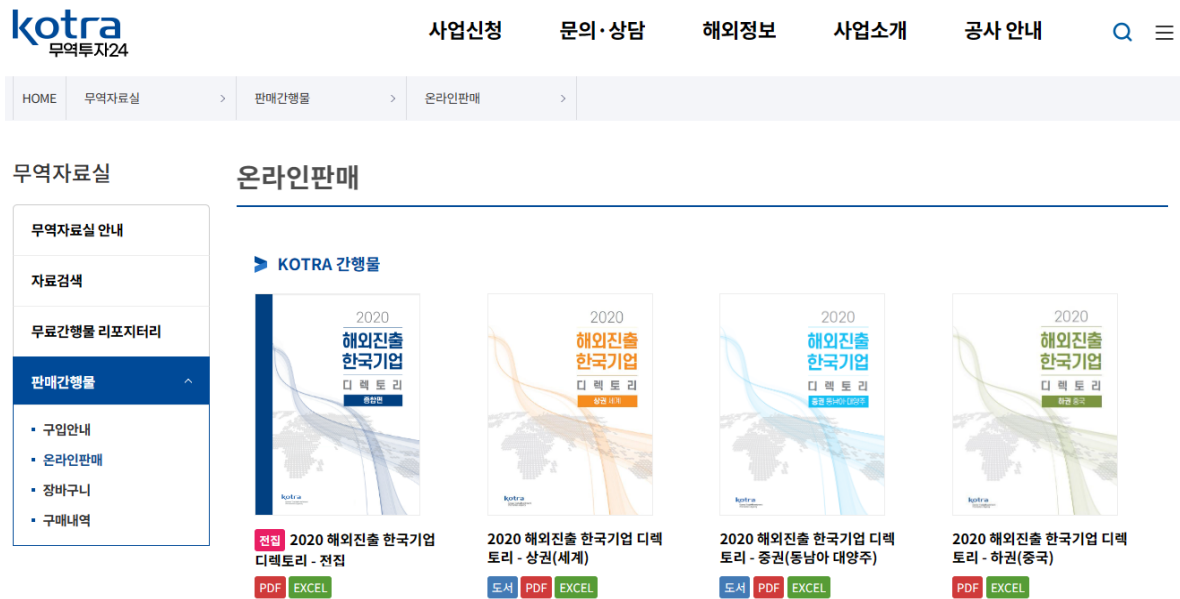
〈그림 35〉 알리바바(Alibaba) ‘동물 및 가금류 축산 장비’ 조회 화면



다. 무역디렉토리

- 무역디렉토리란 전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들의 정보를 정리해서 책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같은 무역관련기관의 자료실에 가면 책자로 출간된 무역 디렉토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OTRA 무역자료실(<http://dl.kotra.or.kr/#/search/ex>)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디렉토리와 국가별 진출전략, 투자실무 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 KOTRA 무역자료실 화면



- 글로벌 B2B 온라인 디렉토리 사이트 'Kompass'(www.kompass.com)는 전세계 3,200만개 이상 기업의 직원수, 제품 및 서비스의 세부 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ompass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인증서를 받고 최대 64개 국가에 최대 28개 언어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의 관련업체 정보를 다루고 있는 종합 디렉토리가 일반적이거나, 화학, 음식 등 특정 품목 별로 전문화된 디렉토리와 바이어에 관한 정보만을 따로 모아놓은 디렉토리도 있습니다.

〈표 34〉 바이어 디렉토리

디렉토리명	내용
The International Directory of Importers	국가별, 아이템별 수입상 상호,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취급품목 등 수록
The International Directory of Agent Distributors & Wholesalers	국가별, 아이템별 에이전트, 판매상, 도매상 등에 관한 자료 수록
Directory of United States Importers	미국 내 수입업체들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취급품목 등 수록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 그 외에도 국내 무역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거래처발굴 관련 지원사이트 혹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 35〉 국내 B2B 지원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GobizKorea	www.gobizkorea.com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연계
buyKOREA	www.buykorea.org	KOTRA 해외 무역관(84개국 127개)에서 발굴한 해외 구매 제안 연계
tradeKorea	www.tradekorea.com	동포기업, 해외 한인경제네트워크 등과 연계(한국무역협회 운영)

- 'buyKOREA|For Seller'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온라인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바이어측에서 등록하는 구매희망 정보(바잉오퍼)를 제공합니다.

〈그림 37〉 KOTRA buyKOREA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buyKOREA | For Seller'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with the text '바잉오퍼를 검색하세요.' and a 'Log In' button. Below the search bar i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바잉오퍼', 'Business Event', 'Industrial Expo', 'Trade Shows', 'Global Partnership', and 'Suppor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바잉오퍼' and displays a grid of offers. Each offer includes a flag, a product name, and a date (2023-01-12). The offers listed are: Dental Milling Machine (Pakistan), Aerothermy (Spain), (일반) [제조사 Only] Looking for White Polypropylene sh... (USA), PU Leather (Pakistan), Sublimation Paper (Pakistan), Safe Cabinet (USA), Low level laser light hair machine (Colombia), Milling machine (India), Nitric Acid (Pakistan), Portable Fire Extinguisher (Pakistan), Textile Machinery (Pakistan), Mobile Substations (Qatar), and Polyester filament yarn (Pakistan). On the right side, there's a sidebar with a user profile icon, a '로그인' (Login) button, and a '회원가입' (Sign Up) button. Below the sidebar, there's a section for '온라인 무역사기 예방' (Online Trade Fraud Prevention) with a '더보기 >' link.

- 또한, KOTRA에서는 유료 해외기업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 36〉 KOTRA 해외 거래처 발굴 서비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수수료(VAT 별도)
사업 파트너 연결지원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 (3개사 발굴 및 교신지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만원

출처 : KOTRA

② 바이어 확인사항

가. 거래처 현황

-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기업이 믿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임을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 해당 기업의 주소가 지도(GOOGLE MAP 활용)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
 - 홈페이지의 정보가 해당 기업과 일치하는지, 도메인이 기업의 국가와 일치하는지
 - 기업의 전화번호가 실존하는지, 국가번호가 기업의 국가와 일치하는지 등

(표 37) 국외 기업의 등록 여부 확인 기관 및 웹사이트

기관명	웹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미국증권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www.sec.gov	미국 기업 등록 정보 확인	
유럽사업자등록부 EBR (European Business Register)	www.ebr.lv/en	EU 내 기업 등록 정보 확인	
Handelsregister(회사등록부) (Common Register Portal)	www.handelsregister.de	독일 기업 등록 정보 확인	
영국법인등기호 (Registrar of Companies)	www.companieshouse.gov.uk	영국 기업 등록 정보 확인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	www.gsxt.gov.cn	중국 지역별 기업 등기여부 확인
	상하이	scjgj.sh.gov.cn	
	베이징	scjgj.beijing.gov.cn	
	광둥	amr.gd.gov.cn	
	광저우	hongdunwang.com.cn	
	칭다오	amr.qingdao.gov.cn	
	다롄	scjg.dl.gov.cn	
	선전	amr.sz.gov.cn	
베트남	기획투자부 (Dangkykinhdoanh)	dangkykinhdoanh.gov.vn	베트남 기업 등록 정보 확인
	세무총국 (TRacuunnt)	tracuunnt.gdt.gov.vn	베트남 기업정보 납세번호로 확인
	MASOTHUE	masothue.vn	베트남 기업 등록 정보 확인
	Thong Tin Cong Ty	www.tratencongtty.com	베트남 기업 주소지 확인
	Thong Tin Doanh Nghiep	thongtindoanhnghiep.co	베트남 기업 등록 정보 확인
	Doanh Nghiep Moi	doanhnghiepmoi.vn	베트남 기업정보 Tax Code로 확인

출처 : 강원도 대리, 드디어 수출하다 (2016), 강원도

- 현지 기업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해당 기업과 계약 체결을 결정한 경우라도 구두로만 협의하게 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증거를 입증할 수 없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인코텀즈 조건, 대금결제 방식 등 계약 세부사항¹⁰을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 서면 계약 체결 시 수출대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을 삽입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역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 송금내역서 등의 피해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합의되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거래 은행에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KOTRA에서는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사업을 통해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연간 6개사까지 무료, 추가시 건당 1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https://dangkykinhdoanh.gov.vn>)의 경우, 베트남에 등록된 기업을 검색하여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이트 검색창 상단 항목 중 ‘Tìm doanh nghiệp(기업 검색)’ 선택
 - Tìm hợp tác xã(협동조합 검색), Tìm trong website(웹사이트 검색)

〈그림 38〉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록기업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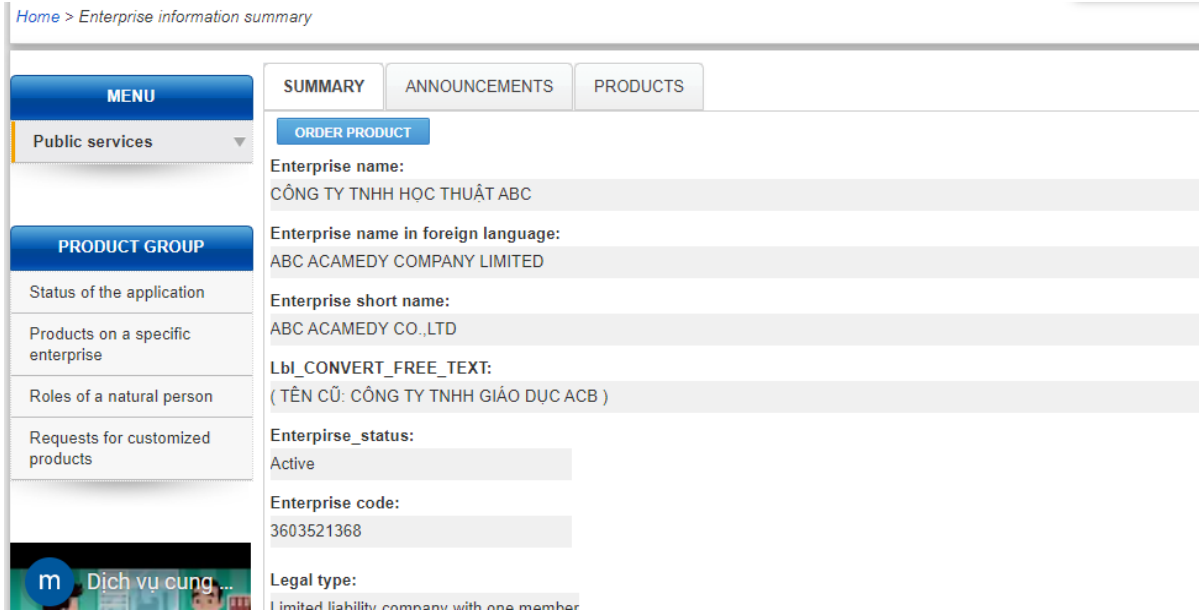
- ② 검색창에 조사할 기업의 ‘기업명, 비즈니스코드, 내부코드’의 키워드 선택하여 입력
 ③ 검색창 하단에 출력되는 목록 중 해당하는 기업명 선택

10 수출계약서 계약조건 : III.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중 STEP 6. 수출 계약 P.74

④ 검색된 기업정보 조회 및 정보 일치여부 확인

- 요약(SUMMARY, THÔNG TIN CƠ BẢN) : 기업명, 기업코드, 설립일, 대표자, 주소 등
- 공지사항(ANNOUNCEMENTS, BỐ CÁO ĐIỆN TỬ)
- 제품목록(PRODUCTS, DANH MỤC SẢN PHẨM) : 제품명, 수수료(VND)

〈그림 38〉 베트남 기획투자부 '기업정보 확인' 화면



나. 신용조사(credit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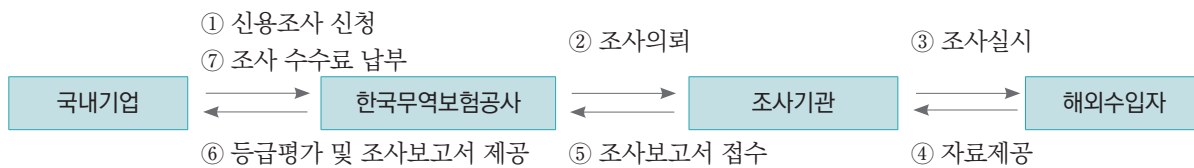
- 거래처의 신용조사란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거래의사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신용위험(credit risk)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거래에 따른 전망을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역거래는 거액의 상품을 선급금 없이 신용장 한 장으로 거래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 상대방의 신용상태(credit standing)가 불량한 경우에는 상품인수를 거부하거나 대금지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신용조사의 내용

- 신용조사의 필수적인 조사항목으로는 대상업체의 평판(character), 대금지불능력(capital), 거래능력(capacity) 등이 있는데 이를 3C's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거래조건(condition), 담보능력(collateral), 거래통화(currency), 소속국가(country)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추가시켜 4C's 또는 5C's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 신용조사의 방법

〈그림 40〉 신용조사 의뢰 절차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1) 거래은행을 통한 조사(Bank Reference) :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조회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신용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사의 거래은행에 의뢰 후 거래은행을 통해 상대거래은행에 재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2) 동업자를 통한 조사(Trade Reference) : 상대방의 거래선에게 신용을 조사하는 방법
- (3)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한 조사 : 해외지사나 판매대리점 등의 보고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
- (4) 상업신용소를 통한 조사(Commercial Credit Agencies)
 - 상업신용소는 신용조사를 전문업으로 하는 단체이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D&B Korea/ TEL : 02-761-1070, MEIL : dnbkorea@dnb.com)
- (5) 국내의 전문기관 등을 통한 조사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내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

〈표 38〉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접속 URL	https://www.ksure.or.kr	
신용등급 책정 방식	국외기업의 자산과 업종에 따라 국외기업 유형 구분(중기업 중공업, 중소기업 비제조업 등) • 국외기업 유형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각각 평가 점수를 배정 •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에 해당되는 등급 최종 확정	
주요 평가항목	• 재무적 요소 : 회사 규모,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 비재무적 요소 : 종업원수, 조사기관등급 등	
이용절차	회원가입	사이버영업점 회원사 및 마스터 대표 사용자 가입등록 사업자공동(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신용조사 신청	• 신용조사 > 신용조사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 (구매/신규신청) • 국외기업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접수 (평균 조사기간 2주 소요) ※ 각국의 상이한 공휴일(중동국 목금 휴일 등), 축제(브라질 카니발 등), 종교행사(중동국 라마단 등), 근무관행(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등) 등에 따라 소요기간 변동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접속 • ‘신용조사-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가능
	수수료 납부	• 보고서 발급 익월초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수납 ※ 중소·중견기업 33,000원/ 대기업 66,000원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③ 현지 협력관계 구축

가. 현지 업체와의 업무협약

- 업무협약은 기업 간 업무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한 협동 조약으로 계획 중인 업무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자 외부업체의 지원을 받거나 기업 대표자 간 협조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관계를 뜻합니다.
- 협력관계를 구축할 파트너의 발굴은 현지의 인맥을 활용해 발굴하거나 현지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과의 협력 논의 및 검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해야 하며, 주요 사업 분야, 업무경력, 거래관행, 신용도는 물론이고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역량, 성실성 등도 평가해야 합니다.
- 수출대상국에 있는 축산기자재, ICT제품 등 유사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지에서의 제품 설치,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고, 국내의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서로의 제품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실적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목적 관리기, 축산작업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아세아텍은 글로벌 농기계 생산업체인 클라스(CLAAS)사와 1995년 기술제휴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통해 클라스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스사에 사후관리 비용을 일정 비율로 지급함으로써 아세아텍은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축산작업기 최대 수출업체로 부상했습니다.
- 대부분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현지 서비스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수출 시 제품의 불량률을 감안하여 사후관리를 교체품을 별도로 현지 파트너사에 공급하고 파트너사가 이를 활용하여 제품교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판매점(Distributorship) 계약

- 국제 전시회의 참여, 기업 간 미팅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는 경우 바이어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지만, 해당 거래처가 현지 유통업체인 경우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의 제품 판매 및 설치 등 위탁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매점은 현지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상 의무이행, A/S 및 품질(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축산기자재 제조업체의 수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A/S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점 계약이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판매망을 가진 현지업체를 판매점으로 지정하여 특정 상품을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판매점 계약과 달리 대리점(Agency) 계약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해당 지역 또는 영역에서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거래(판매)효과를 수출자에게 귀속시켜 그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 판매점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출자로부터 특정 상품을 공급받는 매매계약의 독립적 당사자(매수인)인 한편, 공급받은 상품의 재판매를 위한 현지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상의 독립된 당사자(매도인)이기도 하여 각각의 거래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는 특정 수입국 내 별도 판매망 없이, 계약한 판매점의 판매망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수출자 브랜드 상품이 거래의 대상입니다.

〈표 39〉 판매점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서 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판매점 계약은 연간단위로 갱신(또는 연장) • 계약체결일은 계약기간의 기산일 • 영미법에서는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약인을 요구
대상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 계약의 대상인 제품 및 그 명세를 기재 - 제품의 명세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에 기재 - 수출자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음
판매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 지정(당사자의 합의로 수시로 변경 가능) • 독점판매점 계약의 경우 수출자도 판매지역에 다른 판매점을 둘 수 없음
발주 및 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 : 주문의 주체로써 주문 제품 및 수량 제시 • 수출자 : 주문 제품 및 수량의 수락여부 결정(수락한 경우 구속력 발생) • 계약 시 최소 주문량 명시 - 판매점의 판매실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 주문량을 강요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음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 판매점에 기술 지원, 판촉이나 광고를 위한 홍보물 송부, 판매점 직원의 교육 또는 훈련
A/S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 : A/S 주체로써 원활한 A/S를 위해 충분한 부품의 재고 유지 • 수출자 : 판매점에게 부품 공급
검사 및 품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 : 제품의 인수 즉시 제품 검사 • 수출자 : 제품의 소재 및 제조작업에 하자가 없음을 보장
판매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 : 자신의 비용으로 판촉, 광고 등 수행, 제품의 최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적정 재고 유지
정보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판매점의 판매가격, 판매내역, 판촉, 광고, 가격정책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2가지 방법 중 연장 방법 명시 - 계약기간 만료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갱신(연장) -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 당사자의 서면해지가 없으면 자동갱신(연장)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판매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표적인 해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점의 파산, 지급불능, 재신관리인의 지명 - 수출자의 서면동의없이 판매점이 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 판매점의 폐업 또는 정상영업의 중단 - 판매점의 계약위반이 있고, 이에 대한 치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치유하지 않은 경우

- 판매점 계약과 관련된 양식은 한국무역협회¹¹ 사이트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한국무역협회 수출입계약 서식 다운로드 URL (<https://www.kita.or.kr/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200>)

PART

III



수출절차

STEP 6 수출계약

1. 수출 계약 체결
2. 수출 계약서 작성
3. 대금결제조건
4. 보험 및 이의제기

STEP 7 선적전확인

1. 무역 관련 기업 고유번호 확인 및 발급
2.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
3. FTA 및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STEP 8 수출통관

1. 포워드 선정 및 선복수배
2. Invoice, Packing List, 확인 작성
3. 수출신고필증 발행
4. 국내운송
5. 선적 및 B/L 발행
6. 선적서류 수입자 전달
7. A/N(Arrival Notice) 확인
8. 수입국 내륙운송

STEP 9 수출대금 회수

STEP 10 사후관리

1. 법정 서류보관 기간
2. 수출입물품 관리대장

STEP 6 수출계약

전시회 참여,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발굴한 잠재 바이어의 신용정보까지 확인하였다면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구매내역과 견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주문서만으로는 거래 리스크를 대비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계약 시에는 양사 간의 거래 조건이 기입된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① 수출 계약 체결

〈그림 41〉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 무역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승낙이 있으면 성립됩니다. 다만, 유효한 청약 및 승낙의 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유효한 청약 및 승낙의 기준으로 UN에서 제정한 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은 확정청약, 불확정청약, 조건부청약으로 구분되며, 승낙은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고 조건부승낙은 반대청약이 됩니다.

〈표 40〉 청약의 종류

구분	내용
확정청약 (Firm Of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불능청약(irrevocable offer) • 청약자가 청약내용에 대한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 성립 •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확정청약으로 봄
불확정청약 (Free Of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가능청약(revocable offer), 확정청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 • 상대방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 성립 • 불확정청약 형태이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
반대청약 (Counter Of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수량·가격·선적 등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 피청약자가 승낙을 의도했다 할지라도 원청약의 거절이 됨
교차청약 (Cross Of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연히 각 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상호청약을 하였는데 청약내용이 완전히 일치한 경우 • 대륙법(우리나라 포함)에서는 교차청약을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 • 영미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한 청약으로만 봄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의 청약과 승낙단계 중 청약단계는 보통 실제 서류가 첨부되거나 오고가지 않고 메일로 내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청약단계 : Inquiry(공급의사 타진), Quotation(견적), P/I(공급가격 확정)
- 승낙단계 : P/O(주문서), Offer Sheet(공급확약서)

가. P/I(Proforma Invoice)

- 견적송장 P/I는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P/I 발행 후 구매자측에서 승인하면 해당 가격과 수량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견적(Quotation)과 다릅니다.
- 신용장, 결제조건, 수수료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서로간의 합의가 있으면 정식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고, P/I 승인 시 Offer Sheet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P/O(Purchase Order)

- 주문서 P/O는 가격 및 기타 수출 조건들을 협의한 후 바이어(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정식 오퍼를 하는 무역 서류로, 형식적인 폼이기 보다 주문 확인 양식으로 많이 사용되어 P/O를 보낸 후 구매 협의를 완료되면 양사 간의 가격의 구매/판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샘플과 같은 소량 주문은 구두상 협의하거나 인보이스로 대체하여 P/O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량 주문과 같은 경우에도 무역 거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P/O 작성을 꼼꼼히 하여 예기치 못한 무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 Offer Sheet(공급확약서)

- 무역에서의 Offer는 일정조건을 제시하며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보통 실무에서 메일을 통해 offer를 승낙(acceptance)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 철회가 가능한 Free Offer(자유청약)과 불가능한 Firm Offer(확정청약)으로 나뉘며, Firm Offer의 경우 유효기간(Terms of Validity)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합니다.
- Offer Sheet의 항목은 P/O와 동일하나 발행주체가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필수 요소 : 물품, 수량, 가격, 수신인/발신인, 결제조건, 선적시기, 포장사양, 유효기간, 인코텀즈, 서명
- 위의 계약 조건 및 체결방식의 정보, 관련 양식은 한국무역협회¹² 사이트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한국무역협회 수출입계약 서식 다운로드 URL (<https://www.kita.or.kr/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200>)

〈그림 42〉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ABC CORP.
Manufacturers, Expoters & Importers
 13 heoll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 (02) xxx-1111 FAX : (02)xxx-2222

Messrs. HK COMPANY

Invoice No. SPI-0805
 Date. MAR 2, 2019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FOB BUSAN		
GIANT BEAR TOY SIZE:MIN 1.5M	700PAIRS	170	\$ 119,000
TOTAL :	700PAIRS		\$ 119,000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Shipping Port : BUSAN, KOREA
 Destination : HONG KONG
 Shipment : WITHIN ONE MONTH AFTER RECEIPT OF YOUR L/C
 Payment : BY AN IRREVOCABLE L/C AT SIGHT TO BE OPENED IN OUR FAVOR

Very truly yours,
ABC Corp.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그림 43〉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HK COMPANY
 RM 1000 CHAI WAN IND. CITY
 PHASE 1, 60 WING TAIRO, CHAIWAN, H.K.

Messrs.
ABC CORP.
 13 Heolleung-ro, Seocho-gu, Seoul,
 Korea

Dear Sirs.
 We HK Company., as Buyer, hereby confirm our purchase of the following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given below.

DESCRIPTION	<u>GIANT BEAR TOY</u>
PACKING	EACH 50 PAIRS TO BE PACKED INTO AN EXPORTABLE CARTON BOX. EXPORT STANDARD PACKING
QUANTITY	<u>700 PAIRS ONLY</u>
PRICE	<u>FOB BUSAN IN U.S. DOLLARS.</u> GIANT TOY @US\$170/PAIR
AMOUNT	<u>TOTAL : US\$119,000</u>
INSURANCE	INSURANCE POLICY BLANK ENDORSED FOR 110% OF C.I.F VALUE WITH CLAIMS PAYABLE IN HK INSURANCE TO INCLUDE I.C.C.(A) WITH INSTITUTE WAR CLAUSES, S.R.C.C CLAUSES.
PAYMENT	BY L/C AT SIGHT IN YOUR FAVOUR BY FULL CABLE. ADVISING THROUGH SEOUL BANK, SEOUL, KOREA FROM HK BANK (INTEREST IS FOR <u>SELLER'S</u> ACCOUNT.)
SHIPMENT	SHIPMENT SHOULD BE EFFECTED DIRECTLY FROM BUSAN, KOREA TO HONG KONG WITHIN MAR 31, 2019
MARKS & NO	TO BE MARKED ON BOTH SIDES OF EACH CARTON BOX AS FOLLOWS : HK COMPANY HONG KONG C/NO. 1-1/UP ITEM NO :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그림 44〉 오퍼시트(Offer Sheet)

C.P.O.BOX : CABLE : TELEX :	ABC CORP <i>Manufacturers, Expoters & Importers</i> #13 Heolleung-ro, Seocho-gu, Seoul, Korea <u>OFFER SHEET</u>	TEL : FAX :												
Messrs.	HK COMPANY	Offer No. 수출자가 관리하는 일련 번호 Date. 오퍼 작성일자												
Gentleman :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following														
Origin : 제품의 원산지 표기 Shipment : 선적조건, 분할선적 및 할부선적 허용 여부 및 선적기일 Shipping Port : 적재항 Payment Terms : L/C, T/T 등 기재 Price Terms : 인코텀즈 기재 Validity of Offer : 바이어가 회신해야 하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firm offer,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free off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No</th> <th style="width: 40%;">Commodity & Description</th> <th style="width: 15%;">Quantity</th> <th style="width: 15%;">Unit Price</th> <th style="width: 20%;">Total Amount</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명세, 품명 및 규격 등 상세 기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결제 금액</td> </tr> </tbody> </table>					No	Commodity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Amount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명세, 품명 및 규격 등 상세 기재	수량	단가	총 결제 금액
No	Commodity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Amount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명세, 품명 및 규격 등 상세 기재	수량	단가	총 결제 금액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Yours faithfully 작성자 서명. 주로 수출기업 대표 ABC CORP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② 수출 계약서 작성

가. 계약조건

- 다양한 특성을 갖는 무역계약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물품의 특정,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 이행조건 중 중심이 되는 사항은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기본적인 협의 조건을 미리 준비하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 41〉 무역계약의 특성

구분	세부내용
낙성계약(합의계약, Consensual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매매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 • 합의는 거래 제의를 하는 일방의 청약을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성립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서로 채무 부담(매도인 : 물품의 인도 의무/ 매수인 : 대금 지급 의무)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어느 일방이 대금을 받지 않고 행하는 증여,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계약과 구별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ed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표 42〉 무역계약의 8대 조건

구분	세부내용	
물품자체	품질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를 정하는 것 • 무역서식에서는 description, item, commodity, article 등으로 표기
	수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팔 물품의 수량을 정하는 것 • 물품의 특성이나 포장단위에 따라 ea, pcs, box, set, kg, ton 등으로 표시
	가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 • 물품 하나 또는 하나의 포장 단위의 가격인 단가(unit, price 등)
	포장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포장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packing) • 물품의 특성이나 수출자의 포장여건, 수입자의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
계약이행	선적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선적과 관련한 제반 조건을 정하는 것 • 운송방식, 선적항, 도착항, 선적시기, 분할선적 및 환적 허용여부 등 포함
	결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정하는 것(payment) • 결제조건에는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등이 있음
	보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부보 의무, 보험조건 등을 정하는 것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을 정하는 것 	

- 품질, 수량, 가격, 포장, 결제, 선적, 보험, 분쟁해결조건은 무역계약의 8대조건이라 하여 무역계약서에 삽입되는 수많은 계약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무역계약의 8대조건은 다시 물품 자체에 대한 조건 및 계약이행에 대한 조건, 그리고 분쟁해결에 대한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와의 계약 시 참고할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3〉 주요 계약 조건

계약조건		세부사항
기본조건		당사자 및 서명, 주소, 계약 확정 문언, 계약체결일, 유효기간 등
품질조건	결정방법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 상표매매(sale by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description)
	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수출 시는 선적품질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수량조건		중량(Weight) 및 수량(Pieces)을 기준으로 과부족용인 범위(%) 조건 표기 -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살물(撒物)의 경우 명시적인 과부족용인약관이 없더라도 5%의 과부족은 허용하고 있다. - Approximate Quantity(About, Circa, Approximately)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10% 범위 안에서 과부족을 허용한다.
가격조건		인코텀즈 2020을 기준으로 가격조건 논의 - 적출지인도조건 : EXW, FAS, FOB, CIF, CIP 등 - 양륙지인도조건 : DAP, DAT DDP 등
포장조건		- 화인(Shipping Mark) 표기 : 수입자 상호, 목적항, 개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 - 포장의 견고성에 대한 의무 : 매매조건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부과
선적조건	선적일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서류발행일이 아닌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선적지	-
	선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shipment)
	선내하역비	Berth Term(B/T), Free In(FI), Free Out(FO), Free In & Out(FIO)
보험조건 (Terms of Insurance)		적화보험 부담 주체에 대한 기재(CIF 조건인 경우 매도인 부담) 구약관(AR, WA, FPA)와 신약관(ICC(A), ICC(B), ICC(C)) 혼용하여 사용 - ICC(C)와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분손(단독해손)부담보조건, 최소담보조건 - ICC(B)와 WA(With Average) : 분손담보조건 - ICC(A)와 A/R(All Risk) : 전위험담보조건, 최대담보조건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T/T(송금결제방식) - 선급(advance payment), 즉시불 또는 일람불(at sight), 연불(deferred payment), 분할지급(installment payment) - 서류상환지급(CAD : Cash Against Documents), 물품 인도시 지급(COD : Cash On Delivery)
		L/C(신용장결제방식) - 일람불신용장(Sight L/C), 기한부어음(Usance L/C)
		화환어음결제조건(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추심결제방식 : D/P(지급인도방식), D/A(인수인도방식) - 화환어음에 관한 약정항목 : 어음의 기간, 부속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어음의 결제지
불가항력 및 면책사항		천재지변, 파업, 전쟁, 수출금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수출업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에 의한 선적지연 면책사항
클레임 및 중재조항		클레임 제기기간, 제기방법(서면) 등 중재조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

1) 품질조건

(1) 품질 결정방법

● 견본매매(sale by sample)

-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한 개를 이용한 견본에 의해 당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약정 방법(예.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

〈표 44〉 견본의 종류

구분	내용
매도인견본 (Seller's Sample)	• 원견본(original sample) : 매도인이 보내는 경우
매수인견본 (Buyer's Sample)	• 매수인이 견본을 보내면서 주문제작을 요청하는 경우
반대견본 (Counter Sample)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견본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하여 보내는 경우
선적견본 (Shipping Sample)	• 선적준비가 완료된 후에 완성품에서 일부를 채취하여 별도로 발송하는 경우
보관견본	•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별도의 제작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견본 • 매수인 보관(original sample), 매도인 보관(duplicate sample), 생산자 보관(triplicate sample)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견본제공 시 완전 자동화되어 동일한 규격으로 완성된 제조품을 제외하고는 중등품질의 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비규격 상품은 견본매매에서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 45〉 견본매매시 표현의 주의사항

매수인에게 유리한 표현(강한 표현)	매도인에게 유리한 표현(완곡한 표현)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 same as / up to sample	Quality to be considering as being about equal to / similar to / as per sample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 실제 견본을 이용할 수 없는 미수확 농산물이나 목재와 같이 천연산물 등의 물품 거래에 사용되며 과거 수확물의 표준품을 기초로 계약 체결

●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예. 국제 표준화기구(ISO), 한국의 KS 등)

● 상표매매(sale by brand)

-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만으로 품질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으로서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예. Rolex, Coca-Cola 등)

●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 견본이나 현품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표나 성질 등의 표시에 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예. 선박, 의료기기 등은 설명서, 설계도 등을 통해 계약)

(2) 품질 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품질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선적 시의 품질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
- 매도인은 운송 중에 변질된 품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인코텀즈에서 선적지인 도조건인 C, F조건과 표준품매매의 FAQ조건은 선적품질조건입니다.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상품의 품질을 양륙 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조건
- 매도인은 운송 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인코텀즈에서 도착지인도조건인 D조건과 GMQ조건은 양륙품질조건입니다.

2) 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표 46〉 수량의 단위 입력예시

구분	입력예시
중량(We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ng Ton(English Ton : Gross Ton) : 2,240 lbs(1,016kg) • Metric Ton(French Ton : Kilo Ton) : 2,240 lbs(1,000kg) • Short Ton(American Ton : Net Ton) : 2,000 lbs(907.2kg)
용적(Measu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등 : Cubic Meter(CBM or m³), Cubic feet(CFT) • 액량 등 : 1 quarts = 1/4 gallon = 2 pints = 0.95 liter(미국 : America gallon, wine gallon) or 1.14 liter(영국 : English gallon, imperial gallon)
개수(Pie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ss(12 x 12 = 144개 = 12 dozens) • small gross(12 x 10 = 120개 = 10 dozens) • great gross(12 gross = 144 dozens = 144 x 12 = 1,728개)
포장(Pack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 • 기타 : keg(나무), bag(포대), case(나무상자), bale(곤포), carton(종이상자), bundle(다발), drum(합석통), carboy(채롱에 든 대형유리병)
길이(L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inch = 2.54 cm • 1 foot = 30.48 cm • 1 yard = 91.438 cm
면적(Squ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quare foot(SFT)/m² (square meter)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포장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중량도 증가하는데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느 포장 까지를 계약의 포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 47〉 계량의 방법

구분	내용
총중량(Gross Weight)	포장 등의 무게를 모두 포함한 무게(외포장 + 내포장 + 물품의 함유물)
순중량(Net Weight)	비누 등 소매판매시와 같이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주로 이용(총중량 - 외포장)
정미중량(Net Net Weight)	충전물을 제외한 순수 상품 무게(총중량 - 외포장 - 내포장)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2) 수량 결정시기

●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선적할 때의 수량이 계약조건에 일치되면 운송 중에 발생한 증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인코텀즈에서 선적지인도조건인 C, F조건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성질상 선적수량조건에 의하게 됩니다.

●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 수입항에서 양륙 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 수량과 합치되어야 하는 조건

- 매도인은 운송 중 감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인코텀즈에서 도착지인도조건인 D조건은 모두 양륙수량조건입니다.

(3) 과부족 허용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 포장단위 상품이나 개체 물품처럼 정확히 그 수량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의 거래에서 약간의 과부족한 상태의 인도를 용인하는 것을 말하며, 산물이나 휘발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운송 중에 부득이 감량이 예견되거나 정확한 계약 수량을 선적하기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상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신용장에 물품의 수량이 과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산물(Bulk cargo)의 경우 $\pm 5\%$ 의 과부족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장에서의 수량이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부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 명시된 수량과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란 표현은 언급된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장 방식 이외의 D/P, D/A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 등의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과부족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과부족 허용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격조건

● 가격조건은 적절한 매매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이며 중요한 조건입니다.

● 가격의 구성요소는 제조원가, 이익, 물류비용, 행정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물류비용 : 창고보관료, 선적비용, 운송비

- 행정비용 : 수출입통관비용, 수출입허가비용, 은행수수료, 금리

● 국내거래에서도 택배비가 포함되는지, 카드결제인 경우 추가수수료가 있는지 등과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어디까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를 문제이나 국제규칙 인코텀즈(Incoterms)에 의해 간편하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Incoterms)는 물품매매계약을 위한 거래조건을 규정한 국제규칙으로, 국제 상공회의소(ICC)에서 10년을 주기로 개정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인코텀즈 2020이 공표되었으며, 기존 인코텀즈 2010에서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 통관 등의 주체가 결정되므로, 기자재 수출 시 바이어와 조건을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인코텀즈는 총 11개의 거래조건을 담고 있으며,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해상운송)과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운송)으로 구분됩니다.

- 각 조건은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그룹에 따라 인도조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 48〉 인코텀즈 그룹별 인도조건

구분	조건	특징
E 조건	EXW(공장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지 인도 • 매도인 최소 의무 부담
F 조건	FCA(운송인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 미지급 인도 •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까지 국내운송 부담 • 매수인이 운송사 및 항구 지정
	FAS(선적 인도)	
	FOB(본선 인도)	
C 조건	CFR(운임포함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 지급 인도 • 매도인 수입국 항구까지 부담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CPT(운송비 지급 인도)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D 조건	DAP(도착장소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지 인도 • 매도인 최대의무 부담
	DPU(도착지 양하 인도)	
	DDP(관세지급 인도)	

- 각 조건별 위험과 비용부담은 아래 표와 같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는 포워드케이알¹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49〉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주체

구분	복합운송		해상운송				복합운송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PU	DAP	DDP	
수출국	Packing(포장)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Loading Charges(적재비용)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Delivery to Port/Place (내륙운송)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Export Duty&Taxes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Origin Terminal Charges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Loading on Carriage (선적)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기타	Carriage Charges(운임)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Insurance(보험료)						매도인		매도인			
수입국	Destination Terminal Charges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Delivery to Destination(내륙운송)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Import Duty&Taxes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13 인코텀즈 2020 URL (<https://www.forwarder.kr/incoterms/exw>)

〈표 50〉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정의

Incoterms	내용
EXW(공장 인도, EX 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 부담 -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FCA(운송인 인도, Free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 부담 -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 지급
FAS(선측 인도, Free Alongside 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
FOB(본선 인도, Free on Bo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
CPT(운송비지급 인도, Carriage Paid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인 인도조건(FCA)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및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부담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부담
CFR(운임포함 인도, Cost and Fre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선 인도조건(FOB)에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추가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부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임포함 인도조건(CIF)에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추가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부담
DAP(도착장소 인도, Delivered at 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
DPU(도착지 양하 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 - 매수인(수입업자)이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 부담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 부담
DDP(관세 지급 인도, Delivered Duty Pa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 - 매수인(수입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1) 모든 운송에 이용가능한 규칙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 51〉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주의사항_1

Incoterms	주의사항	내용
EXW	적재 의무의 부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은 적재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함 •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FCA가 적절함 • 실무적으로 EXW Loaded로 변형하여 매도인이 직접 적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규칙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하여 명확히 합의하여야 함 - 비용의 이전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위험의 이전시기도 함께 변경되는 것이 맞는지, 적재의무를 추가하는 경우 단순히 적재비용만 추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
	수출에 대한 협조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실행하는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으며,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단지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임 •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됨
	매수인의 수출정보 제공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제한적인 의무를 부담함
FCA	인도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이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인도장소로서 해당 영업장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함
	통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수행이 요구되나, 물품의 수입통관수행, 수입관세부담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
CPT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CIP·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 물품은 목적장소에 도착한 때가 아닌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장소 및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의 지정목적장소를 계약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할 것이 권고됨
	양하비용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이 지정목적장소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통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수행이 요구되나, 물품의 수입통관수행, 수입관세부담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
CIP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CIP·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 물품은 목적장소에 도착한 때가 아닌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장소 및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의 지정목적장소를 계약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할 것이 권고됨
	양하비용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이 지정목적장소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통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수행이 요구되나, 물품의 수입통관수행, 수입관세부담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
	보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인은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가입 강제) - Incoterms 2020에서는 최대담보로 부보하도록 요구됨

〈표 52〉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주의사항_2

Incoterms	주의사항	내용
DAP	인도장소	• 합의된 목적장소 내의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권고됨
	양하비용의 부담	• 매도인이 지정목적장소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통관의무	•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수행이 요구되나, 물품의 수입통관수행, 수입관세 부담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
DPU	인도장소	• 지정된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장소 내의 지점(합의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 때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DPU에서의 인도는 목적지도착과 동일한 의미임
	양하의무	•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를 하여야 하는 유일한 규칙이므로, 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양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실히 하여야 함 • 매도인에게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DAP를 사용하여야 함
	통관의무	•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수행이 요구되나, 물품의 수입통관 또는 인도 후 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 수행, 수입관세부담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 •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 또는 내륙 터미널에 유치되며,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발생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함
DDP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대표함
	인도장소	• 합의된 목적장소 내의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권고됨
	양하비용의 부담	• 매도인이 지정목적장소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통관의무	• 매도인은 목적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물품의 수출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수행한 후, 수출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함 -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은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2) 해상운송 전용규칙

- 모든 운송에서 이용이 가능한 규칙을 제외한 FAS, FOB, CFR, CIF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Incoterms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포장조건

- 포장은 운송 중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 시 포장의 종류에 대한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외장에는 화인 중 주화인, 화물번호, 도착항표시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표 53〉 포장의 종류

구분	내용
개장(Unitary Pac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용기에 물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것(낱포장) • 소매의 기본단위
내장(Interior Pac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 또는 취급에 편리하도록 여러 개의 개장된 물품을 모아서 포장하는 것(속포장)
외장(Outer Pac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서 파손, 변질,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써 목상자·판지상자·드럼 등에 포장하는 것 • 화인 : 포장의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따위를 표기하여 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5) 선적조건

(1) 선적조건 표시

- ‘선적’은 단순히 본선에의 적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수령일, 접수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그리고 복합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의 수탁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계약물품을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적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선적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선적 시기를 표시하는 방법, 단월조건, 연월 조건이 있으며, 각 조건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선적 시기를 표시하는 방법 :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is contract.
 - 단월조건 : June shipment,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 연월조건 : June and July shipment(June/July shipment)
 - 특정일 이전/이후 선적조건 : shipment shall be made before / after May 5, 2016.
 - 즉시선적조건 : immediately, promptly, quickly, as soon as possible

(2) 분할선적

- 매매목적물 전량을 수회로 나누어 선적하거나 화물을 최소한 둘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서로 다른 항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신용장에서 B/L이나 환어음의 분할발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분할선적 금지로 해석되므로 분할선적 금지 문언이 없다 하더라도 분할선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할부선적은 분할선적의 일종으로 계약된 상품의 일정 수량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주기적으로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용장에서 몇 회에 걸친 할부선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합니다.

(3) 환적

- 선적항에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으로서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 직항선이 적은 항공운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6) 결제조건

- 무역거래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적 성격을 지니며,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라는 특성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적인 무역결제방식으로는 송금, 추심, 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 매도인에게 유리한 대금지급방식 : 사전송금방식 → 일람불신용장 → 기한부신용장 → 추심 중 D/P → 추심 중 D/A → 사후송금방식

7) 보험조건

- 무역물품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부보)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부보(insurance cover)는 운송방식에 따라 육상, 항공, 해상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해상보험이 이용됩니다.
- 수출자의 대금회수불능위험과 수입자의 상품입수불능위험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역보험(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건

(1) 재판 관련 조항

- 의무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의 당사자는 준거법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계약위반의 유형을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구제조치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계약위반이 있었을지라도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당사자간 계약성립, 의무이행 등에 있어 적용할 준거법을 결정하는 준거법 조항(applicable law clause)와 소송을 제기할 국가의 법원(재판소)을 당사자간 미리 약정하는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이 있습니다.
- 준거법 조항은 대표적으로 CISG, Incoterms 등이 이용되며,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 54〉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구분	내용
전속적 관할 합의	전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
비전속적 관할 합의	당사자가 재판관할에 대해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그 합의에 관계없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합의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2) 당사자 관련 조항

〈표 55〉 당사자 관련 조항

구분	내용	
당사자의 권리보호	권리침해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의 지시를 준수하여 제조한 물품이 3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 • 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f) 방식의 계약에서 발생
	신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중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힘들어질 경우, 이에 비례하여 계약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당사자의 권리 의무 명확화	양도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는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이 양도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조항
	품질보증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물품의 품질이나 하자에 대해 일정기간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
	비밀유지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관리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직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
당사자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되는 계약이 판매점계약인지 대리점계약인지 등을 기재하는 조항 -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 본인 대 본인(principal to principal)의 거래,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매수인 자신이 판매자로서 제3자(최종 소비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산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 -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 본인 대 대리인(principal to agent)의 거래, 매도인이 해외에서의 상품의 판로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특정의 판매업자를 대리점으로 정하여 자신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판매를 위임하는 계약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3)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

-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통상 위약금 조항)과 계약서간 번역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정언어를 우선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상충조항(conflict clause)이 있습니다.

(4) 논란이 될 문제의 사전합의

-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권리불포기조항(non-waiver clause),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분리가능조항(severability clause)이 있습니다.
 - 권리불포기조항 :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어떤 조항에 의한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후 발생하는 동일한 계약위반에 대한 이행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
 - 완전합의조항 : 계약이 성립한 이상 기존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합의, 교섭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것을 약정하는 조항
 - 분리가능조항 : 계약의 일부가 국내 법령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해당 조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

(5) 불가항력적 사태에 의한 이행불능

-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를 면책시키거나 계약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등 적용되는 준거법 또는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 56〉 당사자 면책

구분		내용
계약조항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면책	불가항력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을 삽입할 때에는 계약의 성질이나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예시 :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천재지변, 화재, 홍수, 파업, 노동쟁의, 기타 노사분규, 불가피한 사고, 전쟁, 테러행위, 수출금지, 봉쇄, 법적규제, 소요, 내란, 기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한 때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된다.
	하드십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그 이행을 강제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가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의 협상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내포한 합의
	CISG 면책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적 사태에 의해 의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기간동안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 CISG(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협약) : UN에서 제정한 무역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준거법
법원의 판단으로 인한 면책 (Fru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 성립된 후,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발생에 기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당사자는 이행의무로부터 면책됨 - 면책적용 예외 : 스스로 이행불능을 자초한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예측된 사건인 경우,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등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나. 계약체결 방식

- 바이어와의 계약은 판매확인서, 구매주문서, 일반계약서 또는 각서를 통해 진행되며 ‘개별계약’, ‘포괄계약’, ‘독점판매계약’으로 구분됩니다.

〈표 57〉 계약 체결방식

판매확인서 (sales note)	• 수출자가 판매확인서를 두 통 작성 후 서명하며 바이어에 송부, 바이어가 서명 후 한 통을 수출자에 회신하여 체결하는 방식
구매주문서 (Purchase note)	• 바이어가 상품의 구매 조건을 기재한 구매주문서를 두 통 작성 후 판매자에 송부, 판매자가 서명 후 한 통을 바이어에 회신하여 체결하는 방식
일반계약서/각서 (Memorandum)	• 매매당사자가 직접 모여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서명, 확인하는 방식

1)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

- 거래 건별로 특정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조건을 일괄적(한꺼번에)으로 협의, 확정하여 수출입 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건별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 거래 시마다 건별로 모든 거래조건을 새로이 협의, 결정하여 수출입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표 58〉 계약의 종류

계약구분	세부사항	
개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건별로 청약(Offer)과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계약조건을 우선하거나 전반적인 조건을 일괄적으로 협의,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법 -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 	
	표면약정사항	상품 세부사항(품질, 수량, 가격 등), 운송 및 결제조건(선적일자, 결제방법, 보험조건 등)
	이면약정사항	본인계약의 명시, 표면약정사항의 기준, 계약불이행 관련 조항(클레임, 중재사항 등)
포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약정 사항과 함께 거래건별 수량과 인도 등을 오퍼/오더를 통해 확정 방법을 정해 연속적인 거래를 진행 • 포괄계약 후 건별 거래는 정한 방법에 따라 간단한 오퍼/오더를 교환하여 계약 확정 	
	일반거래 조건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 거래준칙 - 거래, 견본/품질, 수량, 가격, 확정오퍼, 주문, 포장, 결제, 선적, 해상보험, 불가항력, 선적지연, 손해배상청구, 중재, 거래조건, 준거법 등 명시
독점 판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다른 수입자에게 offer하지 않으며, • 수입업자는 수출국 다른 업자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매도인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가격의 offer •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장해 줄 것
	매수인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물품을 판매할 것 • 가장 좋은 값을 받도록 노력할 것 • 연간 최소판매량을 보장해 줄 것

- 위의 계약 조건 및 체결방식의 정보, 관련 양식은 한국무역협회¹⁴ 사이트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5〉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SALES CONTRAC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on the ____ day of _____, 201_ by and between the Buyer HK Corp., having its office at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yer") and the Seller ABC Corp., having its office at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ler")

WITNESSETH
 WHEREAS,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Products as defined hereinafter (hereinafter called "Products") to sell or distribute them in the Territory as defined hereinafter; and
 WHEREAS, the Seller is willing to sell the Products to the Buyer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contained herein,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1. DEFINITIONS
 Whenever the following terms appear in this Agreement, they shall have the respective meaning specified below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Products" shall mean _____ specified in Appendix A.
 - "Territory" shall mean _____.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eller, the Buyer shall not sell the Products to any other areas than Territory.

2. ORDERS
 The Buyer shall place order for the Products with the Seller either by email or fax. The Buyer shall clearly and precisely describe the name of the Products, quantity required, specifications, delivery date and shipping instructions, payment method, instructions for packing, invoicing and shipping etc. and other necessary terms for the delivery of the Products. Within 5(five) working days after receiving order, the Seller shall issue the proforma invoice to confirm the Buyer's order.
 The order shall not be binding unless and until they are accepted by the Seller.

3. PAYMENT
 Payment shall be made by an irrevocable L/C payable at sight. The Buyer shall apply for L/C within one week after receipt of proforma invoice issued by the Seller.

4. INSURANCE
 In case of CIF or CIP basis, 110% of the invoice amount will be insured unless otherwise agreed.

5. PACKING
 Packing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In case special instructions are necessary, the same should be intimated to the Seller in time so as to enable the Seller to comply with it.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14 한국무역협회 수출입계약 서식 다운로드 URL (<https://www.kita.or.kr/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200>)

③ 대금결제조건

가. 지급수단

-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표나 어음 등의 별도의 지급수단을 이용합니다.

〈표 59〉 무역거래 대표적인 지급수단

구분	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경제적 성격	지급위탁증권/ 지급수단	지급약속증권/ 지급수단	지급위탁증권/ 신용수단
당사자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발행인, 수취인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발행인	채무자	채무자	채권자
담보서류	-	-	선적서류
만기일	일람불	기한부	일람불·기한부
거래방향	순환방식	순환방식	역환방식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1) 수표(check 또는 cheque)

- 발행인(채무자)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인은 통상 매수인이나 은행이 됩니다.
-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면 보증수표(자기앞수표),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면 당좌수표가 됩니다.
- 무역거래에서는 발행국가와 지급국가의 은행이 상이하기 때문에 송금수표(D/D, Demand Draft)가 주로 이용됩니다.

2) 약속어음(Promissory Note)

- 발행인이 정당한 소지인(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매수인이 발행인이고 매도인이 소지인(수취인)입니다.
- 발행인이 지급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인은 존재하지 않는 양자계약입니다.

3) 환어음(Bill of Exchange)

- 발행인(매도인 또는 채권자)이 지급인인 제3자(은행 또는 매수인)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입니다.
- 환어음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발행되어야 하며, 2통의 원본으로 발행됩니다.
 -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 표시문자, 무조건 지급위탁문언, 지급인, 만기일, 지급장소,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장소, 발행인의 기명날인
 - 임의기재사항 : 환어음번호, 신용장번호, D/A 또는 D/P 표시, 환어음의 발행매수, 환어음금액의 숫자표시 등
- 환어음의 발행형식은 대표적으로 특정인을 기재하는 기명식, 기재된 자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수취인을 결정하는 지시식, 환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소지인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어음법에서는 기명식과 지시식 발행만 인정합니다.

〈표 60〉 환어음의 종류

구분		내용
상업서류(운송서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회환어음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에서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환어음 •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담보로 첨부된 환어음 - 발행인이 대금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하증권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무회환어음 (clean bill of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환어음(무담보어음) • 주로 서비스나 용역거래 등 물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의 결제 시 주로 이용됨
지급만기일에 따른 분류	일람출급(일람불)어음 (sight dr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어음 • 추심방식 중 D/P거래 및 일람불 신용장(일람지급 또는 일람매입신용장)에서 이용됨
	기한부어음 (usance dr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어음이 발행되거나 제시되면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어음 • 추심방식 중 D/A거래 및 기한부 신용장(인수 또는 기한부매입신용장)에서 이용됨 • 만기결정방식 입력 예시 - 일람후 정기출급 : at 90 days after sight - 일부후 정기출급 : at 90 days after shipment date - 확정일 출급 : on Oct, 3, 1980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나. 대금결제 방식

-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방식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뉘며, 우리나라 전체 거래의 65% 이상이 송금방식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 송금방식은 수출입자의 약정에 의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주로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미리 송금받는 사전송금방식과 물품 또는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대금교환도조건, 물품의 인도 후에 주로 전신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사후송금방식이 있습니다.

〈표 61〉 송금환의 종류

구분	내용
송금수표(D/D, Demand Dr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이 발행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금수표를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수취인은 송금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그 금액을 수취하는 방법 • 원본송부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편사고 시 문제가 발생함
우편환방식(M/T, Mail Trans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은행(매수인국가 은행)이 지급은행(매도인국가 은행) 앞으로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발행하여 송금은행이 직접 우편으로 지급은행에 송부하여 주는 방식 • 우편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함
전신환방식(T/T, Telegraphic Trans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환과 원리는 동일하지만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함 •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 주도록 일정금액을 송금은행(거래은행)에 위탁하면, 송금은행은 이를 전신으로 지급은행(수출지 외국환은행) 앞으로 통지를 하고 매도인은 즉시 수출대금 회수 가능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대금결제와 선적서류/물품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송금시기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준다면 수출업자는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빈번한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사전송금방식(주문불방식, CWO, Cash With Order)이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사후송금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후송금방식은 다시 현물상환방식, 서류상환방식 그리고 청산계정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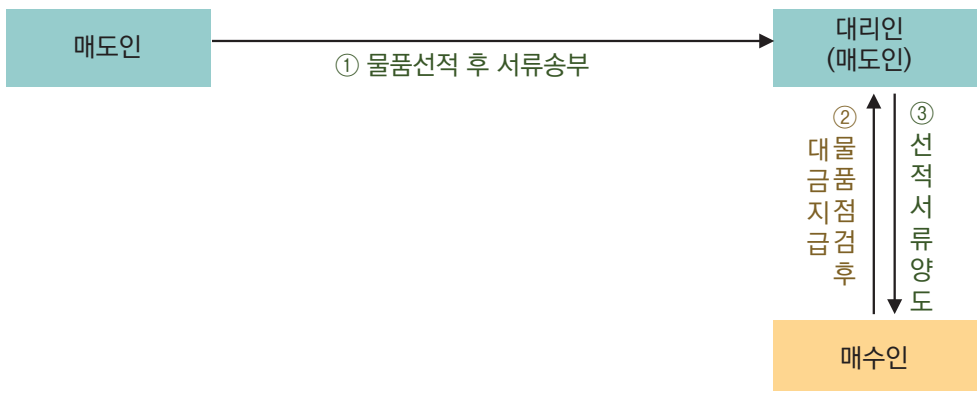
〈표 62〉 COD와 CAD의 비교

구분	현물상환방식 (COD)	서류상환방식 (CAD)
대상	귀금속 등 현지에서 점검이 필요한 물품	제조과정 또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물품
거래객체	물건	서류
거래절차	매도인의 대리인 등이 수입국 소재	매수인의 대리인 등이 수출국 소재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현물상환방식(COD, Cash On Delivery)은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해외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자의 해외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와 물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이 경우 B/L상 수하인(Consignee)은 수출자의 해외지사, 대리인 등이 지시하는 식으로 기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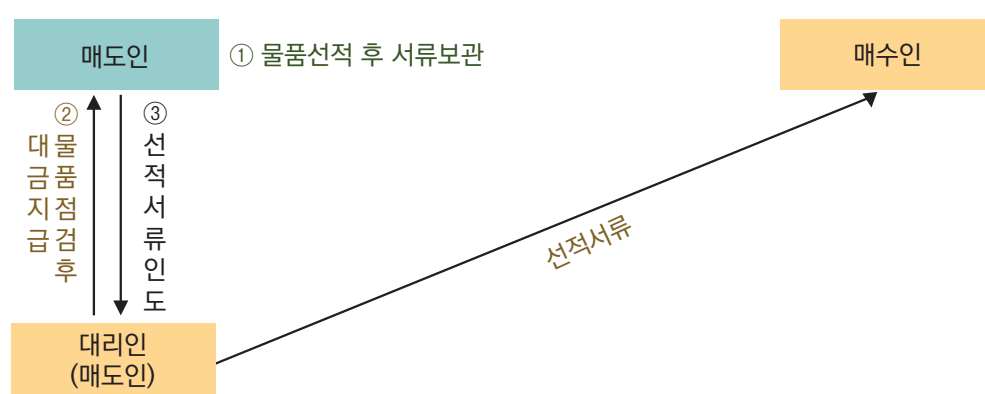
〈그림 46〉 현물상환방식(COD) 결제흐름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현물상환방식과 달리 서류상환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은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입자의 해외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의 대리인 등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국 내에서 수입자의 대리인 등이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면 물품을 선적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림 47〉 서류상환방식(CAD) 결제흐름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청산계정(O/A, Open Account)이란 타국과의 무역대금을 결제할 경우 매 거래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을 장부에 기장해두었다가 일정기간의 단위로 잔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정방식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청산계정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국가간의 협정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용장(Letter of Credit, L/C)결제방식

- 신용장(L/C)는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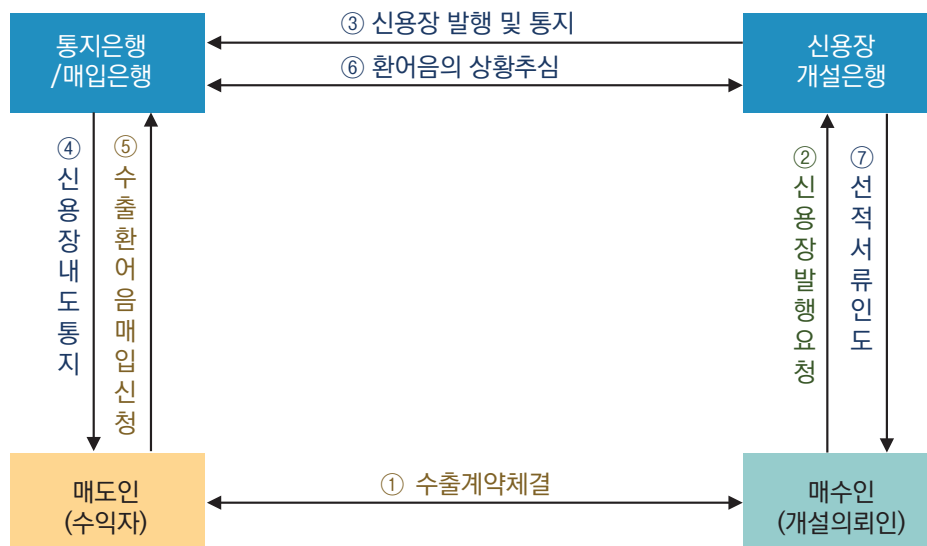
〈표 63〉 신용장의 종류

구분		내용
지급기간에 따른 분류	일람불신용장 (sight credit)	•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 - 일람지급신용장, 일람매입신용장
	기한부신용장 (usance credit)	•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 -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기한부매입신용장 등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확인신용장 (confirmed credit)	•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수익자에 대해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다시 한 번 약속해주는 신용장
	무확인신용장 (nonconfirmed credit)	• 확인은행이 추가되지 아니한 신용장
신용장 결제방식에 따른 분류	(일람)지급신용장 (sight payment credit)	•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경우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경우 은행은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해주고 정해진 만기에 대금이 이루어지는 신용장
	인수신용장 (acceptance credit)	•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경우 은행은 기한 부환어음에 대해 지급확약(인수)을 한 후 정해진 만기에 대금이 이루어지는 신용장
	매입신용장 (negotiation credit)	•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수익자)을 비롯하여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 • 개설은행은 매입신용장을 매입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지정은행(매입은행)만이 매입을 할 수 있음 - 매입제한신용장 :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을 특정 은행으로 지정 - 보통신용장(자유매입신용장) : 어떠한 은행도 매입 가능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	•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	•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그 유효기간 내에는 수익자와 개설은행의 합의없이 내용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은 대부분 취소불능신용장임
상환청구 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with recourse credit)	•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장
	상환청구불능 신용장 (without recourse credit)	•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금을 수익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도록 한 신용장 • 통상 지급신용장 또는 인수신용장이 해당됨 • 우리나라 어음법 등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은행이 개입하여 매매당사자들의 신용을 보다 공신력 높은 신용으로 대체시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신용장에서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 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출자는 수익자(Beneficiary)라고 불립니다.

〈그림 48〉 신용장(L/C) 발행 순서 및 개념도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 수출자는 신용장 상에 요구하는 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하여, 수출국 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입신청을 합니다.
- 매입은행은 통지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로 다른 은행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매입신청 시 구비서류 :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수출신용장 원본, 환어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일체, 수출신고필증 등

〈표 64〉 신용장관련 수수료

구분	세부내용
개설수수료	• 개설은행에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약속하는데 따르는 보증료 성격의 수수료
통지수수료	• 통지은행에서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
확인수수료	• 확인은행에서 별도의 지급확약을 해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환가료	• 매입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미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동 대금을 수취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수수료
하자수수료	•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환어음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미입금수수료	• 환어음의 매입 시 매입은행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징수된 경우 수출자로부터 추징하는 수수료
지연이자	• 대금 입금 및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 매입신청을 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부속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해줍니다. 즉,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고, 환어음을 매입해준 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됩니다.
-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상호간 모순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불일치나 하자가 없으면 신용장 뒷면에 매입일자, 매입번호, 금액, 은행명 등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교부합니다.
- 매입대금은 수수료, 무역금융 용자액 등을 공제한 후 수출자의 구좌에 대체입금합니다.
-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매입은행은 환가료 등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정산하고 대금이 예정보다 늦게 송금된 경우에는 지연이자(Delay charge)를, 예정보다 적은 금액이 송금된 경우에는 차액(Less charge)를 수익자에게 징구하여 정산합니다.
-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때, 개설의뢰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직접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신용장의 제1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표 65〉 신용장의 양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계약체결 ▶ 양도신청 ▶ 양도여부 검토 ▶ 양도통지 ▶ 수출이행 - 최초수익자가 전부(또는 일부) 양도통지서 발행의뢰서를 양도 취급은행에 제출
양도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취급 가능은행 : 원신용장에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 그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가능신용장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1회에 한해서만 양도 허용 : 제2수익자가 다른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분할양도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에 따라 양도되어야 하나 신용장금액,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 선적기간 및 서류제시기간을 단축하여 양도하는 등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신용장 원본, ② 양도신청서, ③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서명감)신고서 (국외양도일 경우 양수인의 오퍼)

3)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 추심방식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한 무역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한 후,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대금을 추심하여 결제받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환어음 제시 시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D/P방식과 만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D/A방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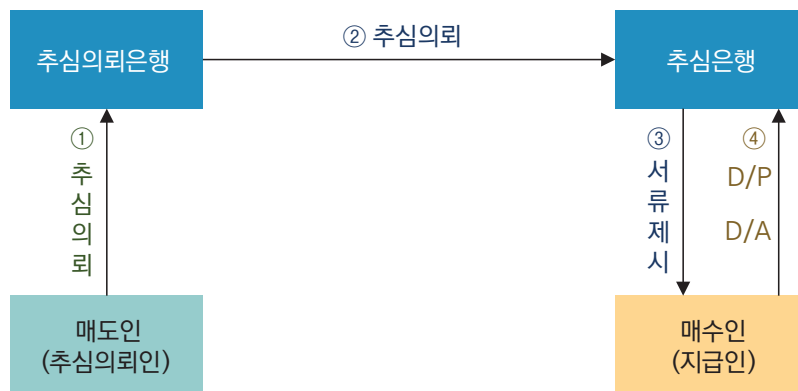
〈표 66〉 D/P방식과 D/A방식의 비교

구분	어음 지급인도조건(D/P)	어음 인수인도조건(D/A)
환어음	일람불환어음 발행	기한부환어음 발행
절차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상업서류 인도	환어음 인수와 상환으로 상업서류 인도
위험	매도인의 대금회수 불능 위험 낮음	매도인의 대금회수 불능 위험 높음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어음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방식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선적을 완료한 후 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국의 추심은행으로 하여금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추심은행은 매수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대금지급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 어음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방식은 매도인이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매수인은 환어음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 'accepted'라고 쓰고 서명날인(인수행위)만 함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에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D/A방식은 외상거래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교부받은 선적서류로 화물을 인도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만기일 내에 결제하면 됩니다.

〈그림 49〉 추심거래의 거래절차



- 원칙적으로 D/P방식은 일람불환어음에 의한 즉시결제, D/A방식은 기한부환어음에 의한 외상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P방식은 매수인에게 불리하며, D/A방식은 매도인에게 불리합니다.
- 이 경우 기한부환어음에 대해 예외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을 선적일로부터 운송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만기일에 D/P방식으로 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D/P방식과 기한부환어음이 결합했다 하여 D/P USANCE라 표현합니다.
 - 기한부환어음에 대해 D/P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추심은행은 서류인도의 지연에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수인이 환어음을 인수해야 만기일이 시작되는 일람후정기출급은 D/P USANCE에서 기한부환어음의 만기일결정방식으로 적합하지 않고, 선적일로부터 운송기간을 더한 일부후정기출급 방식이 권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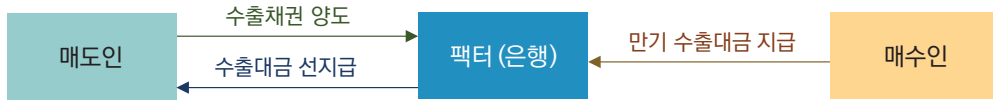
4) 팩토링과 포페이팅

- 송금·추심 또는 신용장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전합의를 근거로 은행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매수인의 적절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매도인은 독자적으로 팩토링과 포페이팅과 같은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팩토링(Factoring)

- 팩토링은 무신용장 외상거래방식(D/A 또는 사후송금방식 등)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팩터(factor)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도인에게는 전도금지급, 대금회수 보증,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수인에게는 손쉽게 신용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종합 수출금융서비스의 일종입니다.
- 지급보증은 매수인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상환청구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50〉 팩토링 거래절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우리나라는 통상 은행에서 팩토링업무를 취급하며 이 경우 은행이 팩터가 됩니다.

〈표 67〉 팩토링·신용장·추심의 비교

구분	팩토링	신용장	추심
거래약정	매매계약서	신용장 수취	매매계약서
수출대금의 회수방식	전도금융	은행의 매입	추심
지급약정기관	팩터	개설은행	-
대금회수위험	안전	안전	불안전
수출정보지원	정보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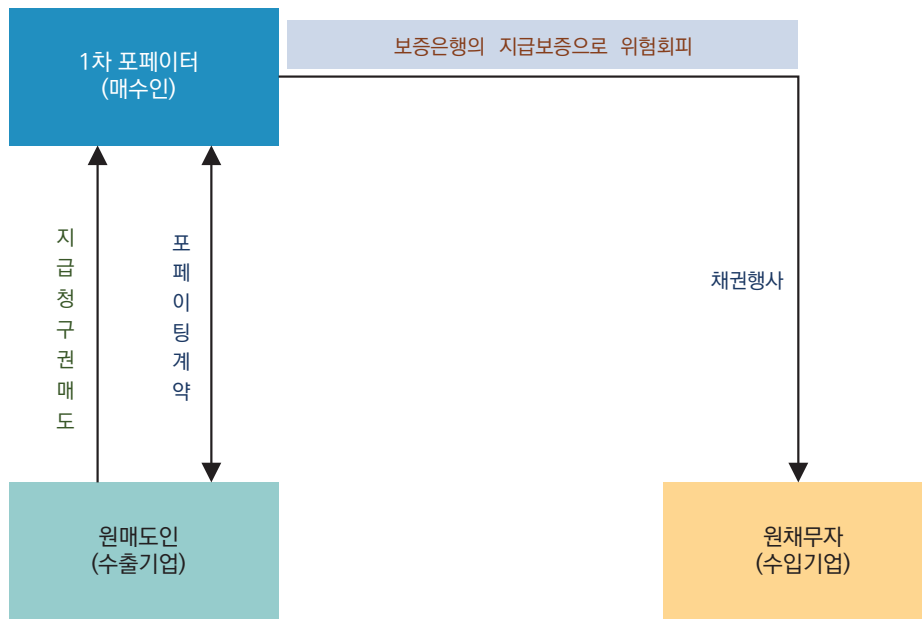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팩토링방식에서 매수인은 물품 수령 후 일정기간 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신용장개설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없고,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팩토링방식의 대상 채권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포페이팅방식은 개별적으로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포페이팅(Forfaiting)

- 포페이팅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원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의미로, 무역계약이나 신용장거래와 같은 기초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장기 고액의 지급청구권(환어음, 약속어음)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및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 받는 수출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 무소구조건이 원칙으로 포페이터는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어음에 보증은행이 서명하는 약식보증 등을 요구합니다.
- 원칙적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만 취급하며, 기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급히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림 51> 포페이팅 거래절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표 68> 포페이팅·팩토링의 비교

구분	포페이팅	팩토링
소구권	무소구원칙(without recourse)	소구권 여부 별도 합의사항
어음	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 취급 (무역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환어음 요구)	별도의 환어음 요구하지 않음
거래대상	중장기 고액의 거래	소액의 단기거래
담보	보증은행의 지급보증(또는 AVAL) 별도 요구	순수하게 매수인의 신용도를 담보로 거래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현재는 ICC에서 제정한 국제규칙인 포페이팅통일규칙(URF 800, Uniform Rules for Forfaiting)이 적용됩니다.

다. 대금결제 관련 규칙 및 법령

1) 수출입대금 결제방법과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국환의 지급, 영수 또는 계정 간 이체를 함에 있어 결제기간, 금액 등을 국제적인 표준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이 때 결제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 69〉 수출입거래 결제행위 신고

구분	내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거래에 따라 결제행위를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거래의 증빙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되어 신고의무가 없음
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계 등에 의한 지급과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계(set-off)란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 외국환은행자에게 상계 전 또는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과 채무가 미화 5천 불 이하인 경우 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함 다자간 상계나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으로 상계 전 미리 신고해야 함 기간 초과 지급과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수출입거래를 가장해서 해외지사나 해외거래처에 편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반대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의 악용 위험성 방지차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지사 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 방식 본사, 지사 간 물품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 지사 간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는 경우 본사, 지사 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 계약 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금제품인 경우 미화 5만 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제품 : 미가공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는 경우 금 이외 제품 :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입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환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님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출국하는 국가와 입국하는 국가들의 세관에 의한 휴대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없는 사정을 사유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함 제3자 지급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 있는 제삼자에게 송금한 경우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국내에 있는 제삼자에게 송금한 경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거래의 당사자에게 송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5천 불 초과 1만 불 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미화 5천 불 이내의 금액을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제삼자 수령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표 70〉 외국환거래별 제재

구분	내용	위반시 제재
채권 회수	수출 건당 미화 50만불 초과 채권은 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상계	바이어와 반복된 수출입거래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 결제할 경우(Debit note, 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x 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간 초과 지급등	하기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출 대금을 수령 • 물품의 선적전 1년을 초과하여 대금을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위반금액 5억원 이하 : 위반금액 x 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	대외채권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x 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자 지급등의 방법	수출 계약을 맺은 바이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사전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x 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자본거래	건당 미화 2천불 초과이고 연간 누적 5만불 초과하는 예금, 신탁거래, 금전대차거래, 채무보증거래,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취득 등 자본거래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이하 : 위반금액 x 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해외직접 투자	하기의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등을 설립 •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이상 취득하여 경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이하 : 위반금액 x 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2)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는 신용장을 사용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은행관의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류심사 기준 등을 규율하는 통일적 규칙인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제정하였고, 2007년 개정버전인 UCP 600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UCP 600은 오직 종이서류 제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해서는 eUCP 1.1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 보증신용장에는 통상적으로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 98)이 마련되어 있어 UCP 600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무나 UCP 600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UCP 600는 개설은행부터 상환은행 및 양도은행까지 신용장업무와 관련된 모든 은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71〉 은행의 의무

은행	의무	UCP 600 조항
개설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의 개설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의 의무 부담 - 개설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 불가 •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직접 일치하는 제시를 하거나 지정은행이 지급·인수·매입 등을 거절한 경우 수익자에 대해 결제의 책임 부담 • 수익자에게 먼저 대금지급을 한 지정은행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심사 후 일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만기에 독립적으로 상환의무 부담 	7조
확인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의 의무와 동일 •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 부담 • 수익자에게 먼저 대금지급을 한 지정은행에 대해서 상환의무 부담 	8조
통지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인수 또는 매입에 대한 아무런 약속 없이 신용장 개설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 - 신용장 조건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용장 개설시 이용했던 통지은행 이용 	9~11조
지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 - 수수료를 조건으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가 아님 • 애매한 상황에 있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음 • 기한부신용장에서 수익자에게 사전지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은행에 의해 상환이 거부되지 않음 	12조
상환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 부담하여 지정은행이 상환은행에게 상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환의 최종책임은 개설은행에 있음 • 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개설은행 부담하지만 신용장과 상환수권서에 수익자의 부담으로 명시할 수 있음 • 상환을 하는 방식 : 상환은행방식, 대금차기방식, 송금방식 	13조
양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란 신용장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에게 양도 하는 것 •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양도 가능 - 양도가능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양도은행이 반드시 이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통상 지정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별도의 양도은행을 지정함(개설은행 자신도 양도은행이 될 수 있음) 	38~39조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UCP 600에 의거하여 모든 은행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서류심사를 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행동합니다. 서류심사은행은 단지 서류에만 의해서 심사하여야 하며, 서류상의 정보는 다른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저촉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서류심사은행은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각자 최대 5 은행영업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은 서류제시일 이후에 도래하는 최종제시일이나 신용장 유효기일에 의해 단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고, 개설은행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서류심사기간 이내에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를 위해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습니다.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수리거절 요건에 따라 거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해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 72〉 수리거절의 방법 및 요건

구분	내용
거절사실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하는 하자내용 기재 :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및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를 기재하여야 함 • 1회에 한해 통지 :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번에 통지하여야 함 • 심사기간 내 거절 : 전신으로 또는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은행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함
서류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통지 시에는 서류의 처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은행은 서류의 보관통지를 한 후라도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 • 서류의 처리방법 : 보관, 은행의 서류반송, 사전지시에 따라 행동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최소한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 서류의 원본 한통은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됩니다.
- 신용장이 'in duplicate, in two folds,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 자체에 다른 명시가 없는 한 최소한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됩니다.

〈표 73〉 선적서류 심사원칙

구분	내용
상업송장(Invo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이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 •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작성하되 서명될 필요는 없음 • 상업송장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과 일치하여야 함
보험서류(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증권, 포괄보험하의 보험증명서 또는 보험확인서 •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된 것 • 두통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는 경우, 모든 원본 서류 제시
운송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운송서류,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선하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 인도지시서, 본선수취증 등은 운송서류로 취급하지 않음 • 공통요건 : 갑판적재 표시금지, 부지약관, 추가운임 표시가능, 무고장 운송서류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4) 보험 및 이의제기

가. 적하보험

-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 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전통적 해상위험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 74〉 해상손해의 구분

구분		세부내용
전손 (TLO : Total Loss)	현실전손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성질의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 기간 행방불명
	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이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 상실하거나 선박/화물 회복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 등
분손 (Partial Loss)	단독해손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 제외
	공동해손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
비용손해 (Expense)	구조비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한 자가 해상법상 회수할 수 있는 비용
	손해방지비	해상위험을 방지,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특별비용	긴급사태가 발생한 결과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보관료, 재포장 비용, 재운송비용 등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 보험계약자(The Insured/Assured)란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 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경우 :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 적하보험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Invoice, Packing List와 같은 서류와 제품명, HS 코드, 출발/도착지, 출발/도착일, 선박 혹은 항공 정보와 같은 선적 정보 일체가 필요합니다.
-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즉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부터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해주는 구간 보험으로,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과 유사하며 출고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지역, 운송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추가로 운송할 때 위험요소가 동반되는 선적건의 경우 추가 보험료가 적용되며, 특약이 필요한 경우 특약에 대한 별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무역보험

- 무역보험이란 해상적하보험과 같이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며, 수출보험제도와 수입보험제도를 합한 개념입니다.
- 수출보험제도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
- 한국무역공사 K-sure에서 운영 중인 무역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총 13종이며, 최근 주목받는 업무는 사업자가 플랜트, 자원개발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과 같은 중장기성 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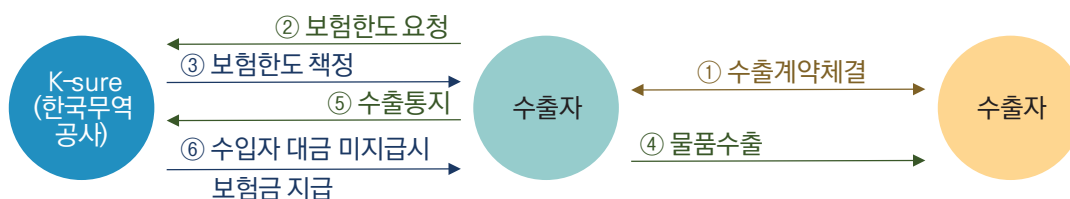
〈표 75〉 한국무역공사 보험상품

보험상품명		주요 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자가 단기(수출대금 결제 기간 2년 이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보상
	중소중견기업Plus+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수입자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으로 손실 발생 시 책임금액 범위 내 손실 보상
	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단체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단체 소속 중소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일괄 제공(5만달러 한도 95% 보상, 무료)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에서 수출불능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손실 담보
환변동보험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 방지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통합(SI), 기술서비스,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 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출처 : 한국무역공사(www.ksure.or.kr)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적용대상거래에는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가 있으며,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담보합니다.

〈그림 52〉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절차



출처 : 한국무역공사(www.ksure.or.kr)

다. 이의제기(클레임)

- 이의제기(클레임)는 무역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되며, 클레임의 근거로 약정된 품질조건, 수량조건 또는 포장조건 등의 위반이 있습니다.
- 클레임 사유 발생 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제가방법, 기간, 내용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표 76〉 클레임의 주요 원인과 대응책

클레임의 종류	원인	예방책
품질불량	출하전 검사 불량	선적전 검사 시행
포장파손, 수량부족, 물품 상이 등	포장불량, 검수·검량 부주의	검수, 검량 철저 등 검사제도의 기능 강화
납기지연	생산지연, 불가항력 사유	바이어와 협의 또는 지연에 대한 패널티성 보상(금액 할인 등)
계약불이행, 중도해지	상대방의 무성의(고의성)	중재 또는 소송 제기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 클레임은 당사자간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화해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알선, 조정, 중재, 소송과 같이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표 77〉 해결방안

구분	내용
합의	• 당사자간 대화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대부분 이 방법으로 해결됨
조정	•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
알선	•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 일방 내지 쌍방의 의뢰에 의해 클레임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방법. 법적 구속력 없음
중재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이 내린 판결에 복종함으로써 분쟁 해결
소송	•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클레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 수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며, KOTRA에서는 중국, 러시아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신청)

라. 무역사기

-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의 거래인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대표적인 무역사기의 유형을 숙지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역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표 78〉 대표적인 무역사기 유형

유형	수법	예방법
샘플사취	바이어를 가장해서 무상으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한 후, 샘플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다.	가급적 샘플을 무상으로 보내주지 말고 샘플비를 받은 다음에 보낸다.
가짜송금확인서	송금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실제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가짜송금확인서를 보내서 선적을 유도한다.	실제로 송금되었는지를 은행에서 확인한 후 선적한다.
서류상 트집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서류인수를 거부한다.	신용장조건을 꼼꼼히 살펴서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선적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한다.
선생산 유도	선생산을 유도한 후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	물품대금이 송금되거나 신용장이 개설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생산에 착수한다.
송금수수료 요구	거래의 자금을 나누어 갖자고 유인한 후 송금수수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거래의 자금 운운하면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메일 해킹	수출자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수출자 명의로 수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라고 요청하고 송금된 돈을 가로챈다.	사전에 수입자 측과 계좌번호 변경 시 이메일이 아닌 다른 방식(전화, 서신 등)을 통해서 통지하기로 약속한다.
대형오더 미끼	대형오더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서 잡다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공식 루트를 통해서 오더를 수주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송금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접대 요구	오더를 할 것처럼 접근해서 접대나 선물을 요구한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접대나 선물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른 물건 선적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실제 계약된 물건과 다른 물건을 선적하고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실은 것처럼 꾸며서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신용장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STEP 7 선적전확인

본격적으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업체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통관고유번호와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고, 거래상대방의 해외거래처부호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코드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 전 상대국에서 적용될 정확한 HS 코드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을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역 관련 기업 고유번호 확인 및 발급

가. 통관고유부호

- 수출입신고 등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식별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 관세청은 업체별로 부여된 통관고유번호를 기준으로 무역 수출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표 79〉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예시

상호	업체유형	본사설립연도	동일업체구분	본지사구분	오류검증부호
케이팜(KFARM)	1	98	1	01	7

- 관세청 Uni-Pass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수출 기관의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기관 명의의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세사 대행 시) 위임장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체크 후 진행

② 사이트 메뉴 중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클릭

③ '조회' 클릭 시 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청 가능

〈그림 53〉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Uni-Pass web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업무지원' (Business Support)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Below the title, there are instructions and a search bar containing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123-45-67890'. A red box highlights the '조회'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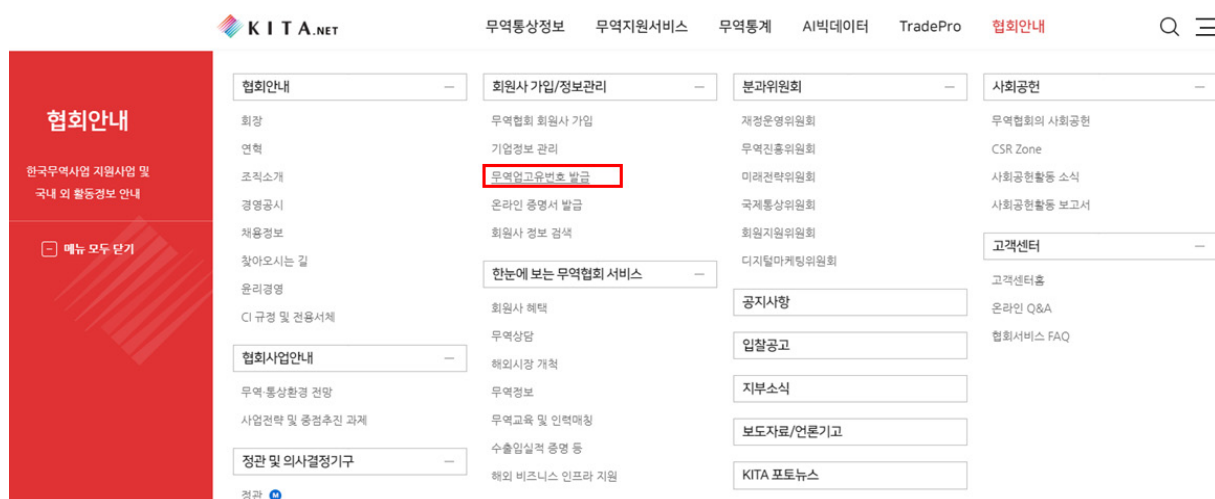
No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상호	주소	처리일자	변경
1	123-45-67890	KFARM198101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2019-05-24 17:50...	변경

나. 무역업고유번호

- 수출입 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실적을 인정 받고 금융지원 및 기타 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여받아야 합니다.
- 무역협회 회원사인 경우, 무역업고유번호가 자동발급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으며 무역협회 KITA에서 무역업고유번호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지부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무역협회 KITA(<https://www.kita.net>)를 통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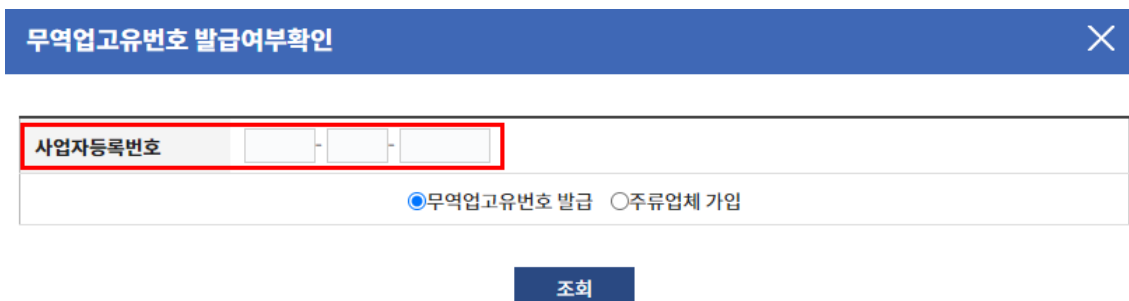
① 사이트 메뉴 중 ‘협회안내 > 회원사 가입/정보관리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클릭

〈그림 54〉 한국무역협회 ‘협회안내’ 메뉴



- ② ‘온라인 신청’ 클릭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여부 확인

〈그림 55〉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여부 확인 화면



- ④ 무역업고유번호 미발행 기업의 경우, 신청화면으로 전환
- ⑤ 기업의 ‘기본정보 및 취급품목’ 정보와 ‘담당자’ 정보 입력한 후 ‘저장’ 클릭

다. 해외거래처부호

1) 해외거래처부호 개요

- 해외거래처부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해외거래처의 고유번호입니다.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에서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80〉 해외거래처부호 구성체계 예시

국가부호	상호	일련번호	오류검증부호
VN	KFARM	1234	7

2)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 관세청 Uni-Pass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수입 거래처의 해외거래처 부호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송장(Invoice)과 (관세사 대행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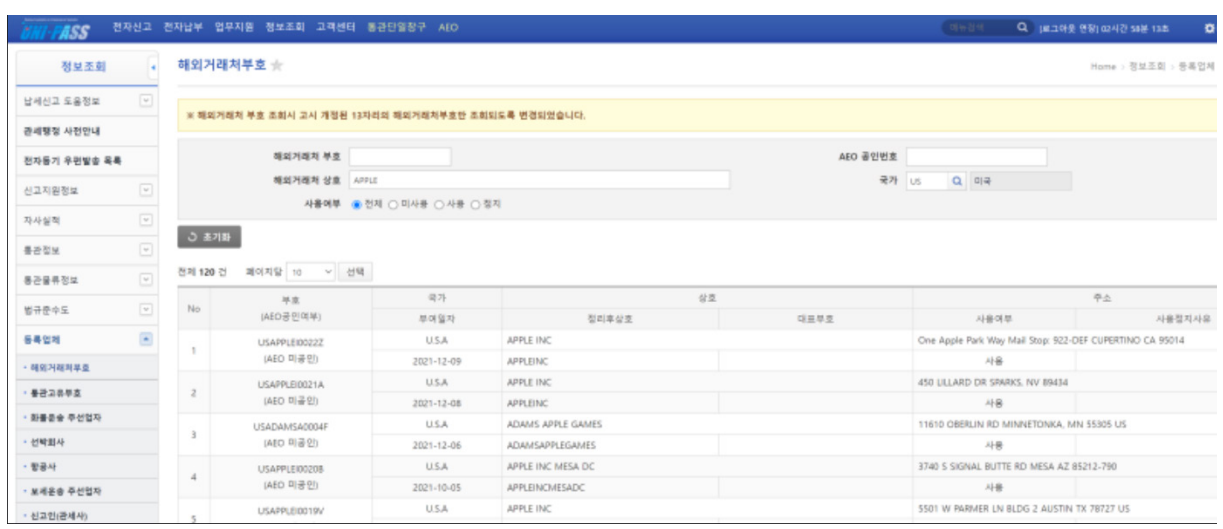
- 거래처 정보(업체명, 국가명, 주소 등)는 송장의 정보를 기준으로 영문으로 작성

- 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체크 후 진행
- ② 사이트 메뉴 중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클릭
- ③ 거래상대방(수입 거래처)의 해외거래처부호가 없을 경우, '등록' 클릭
- ④ '신청인, 거래상대방'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전송' 클릭

3) 해외거래처부호 확인

- 무역거래가 진행되는 상대기업이 한국과 이미 거래 중이라면 UNIPASS에 기등록되어있으므로 추가 등록할 필요가 없어 등록절차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세청 Uni-Pass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로그인 없이 거래처의 기업명과 소재지를 통해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7〉 해외거래처부호 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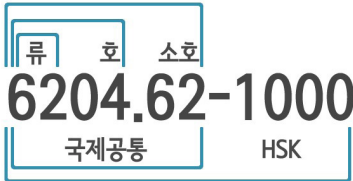


②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

가. HS코드 개요

- HS코드는 물품을 목적으로 나눠 분류하는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위 6단위와 각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하위코드로 구분됩니다.
- 다만, 국가에 따라 같은 품목이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HS코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은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을 따릅니다.
- 한국의 HS코드는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부여한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나 수출입요령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 HS코드의 결정 기준은 관세법에 표기된 통칙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최우선적용 기준인 ‘통칙 1’에서 분류 가능 여부에 따라 하위 통칙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통칙의 적용 기준은 ‘관세법 제 50조의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정리하였으며, 호에 따른 분류표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81〉 HS코드의 확인 및 결정

확인처	관세법령정보 포털 > 세계HS > HS정보 > 속건표		
속건표 확인	제품의 용도 및 특성, 구성물질에 따라 류-호-소호 순으로 검토 및 분류하되, 각 호의 해설서를 통해 물품 제외여부 확인	 <p>※ 출처 : 관세청</p>	
	국제공통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2단위, Chapter) • 호(4단위, Heading) • 소호(6단위, Subheading)
	한국단위		HSK(10단위) : 소호+하위 4자리
품목분류 통칙	통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최우선적용 • ‘통칙 1’을 통해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아래 통칙을 순차적으로 적용 	
	통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완전/미완성 물품 : 완제품의 본질성 특성을 갖추거나, 단순조립으로 완성품이 되는 경우 적용 • 혼합, 복합, 구성품 :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경우 적용하되,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경우 통칙 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통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품목 우선분류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우선되나, 둘 이상의 호가 재료 및 물질의 일부, 세트품목의 일부에 대해서 각각 규정되는 경우 각각의 호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주요 특성 우선 분류 : 물품의 본질적 특성(중량, 수량, 부피, 면적, 가격, 기능 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을 기준으로 분류 • 최종호 우선 분류 :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 	
	통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품 분류 :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목적, 용도, 명칭, 특성, 기능, 형태 등)이 해당하는 호를 기준으로 분류 	
	통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스 등 용기류 분류 : 특정한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알맞게 제조되어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적용하되, 용기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제외 • 포장용 재료, 용기류 분류 : 위 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되, 반복사용하기 적합한 경우 제외 	
	통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호의 분류 : 호(4자리)가 동일한(같은 수준) 소호들만을 비교할 수 있으며,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세번결정	품목분류 통칙에 따른 세번(HS코드) 및 기본세율 확인		

나. HS코드 확인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속건표 혹은 국내 사례 결과를 확인하여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HS코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속건표를 통한 HS코드 확인 절차

- ① 사이트 메뉴 중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 ② 수출대상품목에 적합한 '부-류' > '호' > '품목번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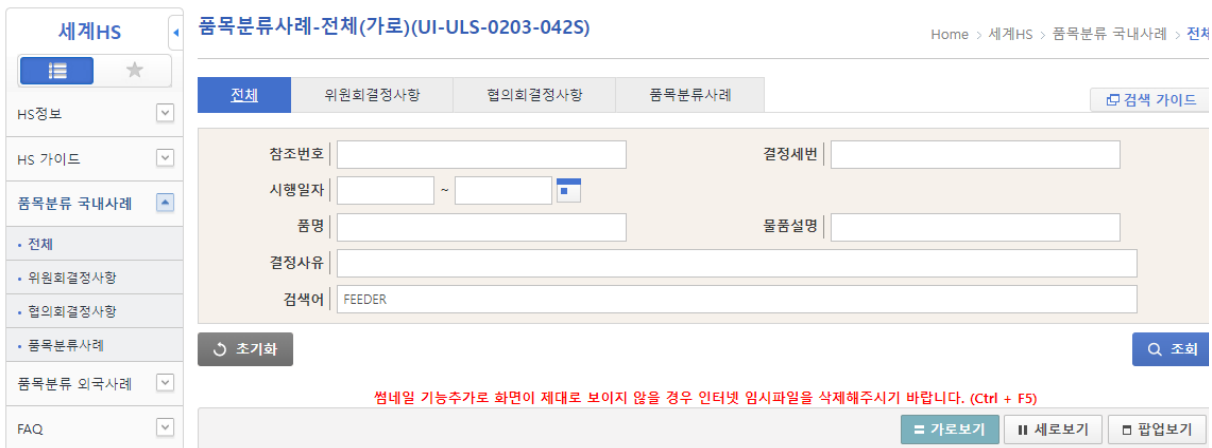
〈그림 58〉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2) 국내 사례를 통한 HS코드 확인 절차

- ① 사이트 메뉴 중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클릭
- ② '품명, 물품설명, 검색어' 등을 입력하여 국내결정사례 조회

〈그림 59〉 '급이기(Feeder)' 품목분류사례 검색 화면



〈그림 60〉 ‘급이기(Feeder)’ 품목분류사례 결과 화면

I 상세보기

인쇄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81
시행일자	2017-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면	8436.80-0000 관세율표 해설서
연도	2017
회	04
품명	Feeder ; NSF27 ; KOREA
제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양돈장 등에서 돼지에게 사료·물을 공급하는 제품* *(재질)스테인레스 스틸 71%, 기타 29% <p>< 제품 이미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제품으로·제16부 제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제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s)·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하는 제품으로 “(F) 소말 돼지 등 사육을 위한 자동급수기 : 예를 들면, 돌쩌귀로 붙인 판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들의 컷등에 의하여 눌러지면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는 바, - 양돈장 등에서 돼지에게 사료와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본건 제품은 농업용 기계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제품을 그 밖의 농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6.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 전세계 6자리까지 HS코드가 공통이고 이후 자리수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거래처가 확정된 후 수출대상국의 세관이나 현지 거래처에 최종 세번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표 82〉 아시아 국가별 관세청 홈페이지

중국	http://english.customs.gov.cn
홍콩	http://www.customs.gov.hk
일본	http://www.customs.go.jp
베트남	http://www.customs.gov.vn
싱가포르	http://www.customs.gov.sg
대만	http://www.customs.gov.tw
요르단	http://www.customs.gov.jo
스리랑카	http://www.customs.gov.lk
인도네시아	http://www.beacukai.go.id
쿠웨이트	http://www.customs.gov.kw
파키스탄	http://www.cbr.gov.pk
아랍에미리트연합국	http://www.fca.gov.ae
캄보디아	http://www.customs.gov.kh
라오스	https://www.laotradeportal.gov.la
필리핀	https://customs.gov.ph
태국	https://www.customs.go.th
바레인	http://www.customs.gov.bh
몰디브	http://www.customs.gov.mv
이스라엘	http://taxes.gov.il
말레이시아	http://www.customs.gov.my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기관 자체적인 HS코드의 결정이 어렵거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으로 인해 정확한 HS코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의 신청은 준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분석 전 수수료를 납부하여 진행됩니다.

〈표 83〉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제도 의의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과정	접수처	인터넷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우편/방문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분석수수료	30,000원 (분석 필요 물품에 한함)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담당자 정보 등	
		수출입자	업체명, 담당자, 해외거래처 정보 등	
		신청물품	품명, 모델, 규격, 원산지, 거래가격, 품목번호 등	
	물품설명서	품명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구조/형태	주 구성요소, 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흐름도, 사진, 재질 등	
		기능/용도	작동원리, 기능,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주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성분/제조공정	구성성분 또는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제출서류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사양설명서, 설계도면 등	
	신청의견	분류의견이 있는 경우 HS품목번호 및 사유 등 기술		
	사양설명서	· 제품사양설명서 1부 첨부		
견본	· 1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미제출 시 미제출사유 및 대체사진 3장(컬러) 첨부			
신속심사 신청대상		아래의 사유로 HS코드의 빠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이 15일로 감축 ·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HS 6단위 소회회신 요청 시 ·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청 시 · 사전심사 처리 지연 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시		
심사 반려대상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

- 자세한 서류 안내 및 신청서식의 다운로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메뉴¹⁵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 URL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 관세청 Uni-Pass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체크 후 진행
- ② 사이트 메뉴 중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클릭
- ③ 품목분류 서식 리스트 중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클릭
- ④ '신청인', '수출입업체', '신청물품' 정보 입력하고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전송

〈그림 61〉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화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p>신청인</p> <p>*신청인구분 <input type="radio"/> 수출입자 <input type="radio"/> 관세사 <input type="radio"/> 수출제조자</p> <p>*회사(업체)명 <input type="text" value="HROOO"/></p> <p>*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123-45-67890"/></p> <p>*주소 <input type="text" value="..."/></p> <p>*담당자 <input type="text"/></p> <p>*FAX번호 <input type="text"/></p> <p>*처리과정수신방법 <input type="text" value="이메일, SMS통보"/></p> <p><input type="checkbox"/> 신청인 정보와 동일 여부</p>	<p>*수출입구분 <input type="radio"/> 수출 <input type="radio"/> 수입</p> <p>*대표자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p> <p>관세사부호 <input type="text"/></p> <p>*전화번호 <input type="text"/></p> <p>*이메일주소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직접입력</p> <p>*후대문 번호 <input type="text"/></p>
<p>수출입업체</p> <p>*업체명 <input type="text"/></p> <p>*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p> <p>홈페이지 <input type="text"/></p> <p>*주소 <input type="text"/></p> <p>*해외거래처상호 <input type="text"/></p>	<p>*담당자 <input type="text"/></p> <p>전화번호 <input type="text"/></p> <p>이메일주소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직접입력</p> <p>해외거래처홈페이지 <input type="text"/></p>

신청물품 상세

<p>*품명 <input type="text"/></p> <p>*모양 <input type="text"/></p> <p>규격 <input type="text"/></p> <p>원산지 <input type="text"/></p> <p>수출입사항 <input type="checkbox"/> 검토품목번호 <input type="text"/></p> <p>*물품설명 <input type="text" value="물품설명서(분지 제1호 서식의 유효)에 기재하여 첨부"/> 다운</p> <p><input type="checkbox"/> 세운·세역확인 <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요건 확인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결정 <input type="checkbox"/> 수출물품 6단위 소포확인 <input type="checkbox"/> HS개정 관련 * 품목번호 6자리에 대해서만 회신이 필요한 경우 '6단위 소포확인' 칸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p> <p>*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text" value="..."/>)</p> <p>신속심사 요청사유 <input type="checkbox"/> FTA 원산지 확인(해당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건)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신고 일박물품 <input type="checkbox"/>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p> <p>*수출입신고이력 <input type="radio"/> 유 (신고세번 :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radio"/> 무</p>	<p>거래가격 \$ <input type="text"/></p> <p>*통관예정지세관 <input type="text"/></p> <p><input type="radio"/> 제출 <input type="radio"/> 반환요 <input type="radio"/> 반환물류</p> <p><input type="radio"/> 미제출 <input type="radio"/> 미제출 사유 <input type="text"/></p> <p><input type="radio"/> 공개 희망 <input type="radio"/> 비공개 희망</p> <p>*결과 공개 <input type="checkbox"/> 결과비공개 사유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신규·계획단계물품 <input type="checkbox"/> 성분·제조비법 물품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p> <p>비공개내용 <input type="text"/></p> <p>수수료 품목당₩30,000 (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p>
---	--

첨부파일

전체 0건 + 첨부가 - 형식제

<input type="checkbox"/>	파일종류		첨부파일
--------------------------	------	--	------

○ 축산기자재 HS코드 및 한국관세율

- 축산기자재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베트남, 미국, 칠레, 싱가포르 등 21개국의 관세율은 0%입니다. 다만, 복합환경제어시스템(9032.10), 기후 컴퓨터 조절 시스템(8537.10)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4% : 9032.10(복합환경 제어시스템), 8402.20(난방시스템 - 과연수보일러), 8424.82(점적관개시스템, 분무시스템), 8424.49(방제기자재)
- 4.2% : 8537.10(기후 컴퓨터 조절 시스템)
- 8.0% : 8414.59(순환 및 배기 팬)

〈표 84〉 축산기자재 HS코드_1

구분	품목명	HS CODE	기본 관세율
사료 및 가금기자재	사료절단기 (Feed cutter)	8436.10.1000	8%
	사료분쇄기 (Feed grinder, mill or crusher)	8436.10.2000	8%
	사료배합기 (Feed mixer)	8436.10.3000	8%
	기타 (Other)	8436.10.9000	8%
	부란기 (Incubators)	8436.21.1000	8%
	기타 (Other)	8436.21.9000	8%
	기타 (Other)	8436.29.0000	8%
	그 밖의 기계 (Other machinery)	8436.80.0000	8%
	가금 사육용 기계 (Of poultry-keeping machinery or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91.0000	8%
	기타 (Other)	8436.99.0000	8%
	새의 알 선별기 (Eggs grading machines)	8433.60.1000	8%
낙농기자재	착유기 (Milking machines)	8434.10.0000	8%
	균질기 (Homogenisers)	8434.20.1000	8%
	기타 (Other)	8434.20.9000	8%
	착유기의 것 (Of milking machines)	8434.90.1000	8%
	균질기의 것 (Of homogenisers)	8434.90.2000	8%
	기타 (Other)	8434.90.9000	8%

〈표 85〉 축산기자재 HS코드_2

구분	품목명	HS CODE	기본 관세율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기타 (Other)	9032.10.1090	8%
기후 컴퓨터 조절 시스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Programmable controllers)	8537.10.2020	8%
난방시스템	기타 (Other)	7310.29.0000	8%
	과열수보일러 (Super-heated water boilers)	8402.20.0000	8%
	기체연료용 (Furnace burners for gas)	8416.20.2000	8%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Instantaneous gas water heaters)	8419.11.0000	8%
송풍기/ 환풍기	기타 (Other)	8414.51.9000	8%
순환 및 배기 팬	기타 (Other)	8414.51.9000	8%
	기타 (Other)	8414.59.9000	8%
온실 관리 시스템	기타 (Other)	8425.39.9000	8%
자동개폐기	그 밖의 기계 (Other machinery)	8436.80.0000	8%
점적관개 시스템	농업용이나 원예용 (Agricultural or horticultural)	8424.82.0000	8%
분무시스템	농업용이나 원예용 (Agricultural or horticultural)	8424.82.0000	8%
방제기자재	자주식 방제기 (Self-propelled sprayers)	8424.49.1000	8%

출처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 축산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체물로서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며 HS코드 분류도 없습니다. 다만, USB 등의 기록 및 저장매체에 담겨 수출입되는 경우에는 HS코드 8523.59로 분류되며 수출입 신고 시에는 저장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무체물의 경우,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외무역법상은 수출입에 해당되어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HS코드 기준 관세율 확인

1)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

- EU 및 미국, 일본, 멕시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 26개국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① 사이트 메뉴 중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② 검색창에 'HS코드' 입력하여 조회

- HS코드 '8436.80' : (류) 원자로. 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_(호)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 사육용·양봉용 기계와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_(소호) 그 밖의 기계

③ HS코드 기준 기본세율 확인

- 우측 '국기' 클릭 시 해당 국가와의 협정세율 확인 가능

〈그림 62〉 관세법령정보포털 HS코드 '8436.80' 관세율 결과 화면

국내관세율 상세목록(UI-ULS-0201-005Q)

Home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부 제16부 기 ... [해설서](#) > 류 84류 원자로 ... [해설서](#) > 호 8436호 그 ... [해설서](#)

검색

품목번호	품명 [한국 2022년]		기본세율	탄력·양허세율
	한글	영문		
8436	80	0000 그 밖의 기계	8%	C 13%

◀ 제8435호 제8437호 ▶ 주요세율보기

자료출처 : 2022년도 WCO 해설서

통칙 부해설 류해설 **호해설**

국문 영문 기타

84.36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 동물사로 조제용 기계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9 - 기타

8436.80 - 그 밖의 기계

- 부분품

8436.91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436.99 - 기타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한다.

(I)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 발아용 기기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종자용 분말도포기 : 보통 회전하는 금속으로 만든 드럼과 이곳에 종자를 공급하는 한 개 이상의 호퍼(hopp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드럼 속이 종자에 살균제나 살균성이 가루를 도포한다

2)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http://tradenavi.or.kr)

- 세계 주요 90개 국가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EU 27개국, 미국, 인도, 아세안 10개국에 대해서는 협정세, 감면세, 내국세 등 세율정보와 인증, 수입요건 그리고 HS코드로의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1) 품목별 한국관세율 조회

- ① 사이트 메뉴 중 ‘관세율조회 > 한국관세율 간편조회’ 또는 대시보드의 ‘한국관세율 조회하기’ 클릭
- ② 검색창에 ‘HS코드’ 입력하여 조회
- HS코드 ‘8436.80’
- ③ HS코드 기준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 확인

〈그림 63〉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한국관세율 결과 화면

HS Code	품명	Description	기본	단위·양허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Other agricultural, horticultural, forestry, poultry-keeping or bee-keeping machinery, including germination plan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Machinery for preparing animal feeding stuffs		
8436101000	사료절단기	-- Feed cutter	8%	C : 13%
8436102000	사료분쇄기	-- Feed grinder, mill or crusher	8%	C : 13%
8436103000	사료배합기	-- Feed mixer	8%	C : 13%
8436109000	기타	-- Other	8%	C : 13%
84362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Poultry-keeping machinery;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211000	부란기	--- Incubators	8%	C : 13%
8436219000	기타	--- Other	8%	C : 13%
8436290000	기타	-- Other	8%	C : 13%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 Other machinery	8%	C : 13%

세율 및 수입요건

품목번호	8436800000	중량단위	KG	수량단위	U
종류	그 밖의 기계				
Description	Other machinery				
원산지	최상위표(대상/YY)				
관세	WTO협정세율 : 13%				
	기본세율 : 8%				
	특별산 : 0%				
	최빈국특별관세 : 0%				
FTA	RCEP협정세율_부일친도(선택) : 0%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 :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 : 0%				
	한-EFTA FTA협정세율(선택) : 0%				
	한-EU FTA협정세율(선택) : 0%				
	한-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 : 0%				
	한-미 FTA 협정세율(선택) : 0%				
	한-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 : 0%				
	한-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 : 0%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 : 0%				
	한-영국 FTA협정세율(선택) : 0%				
	한-인도 FTA협정세율(선택) : 0%				
	한-중국 FTA협정세율(선택) : 0%				
	한-홍콩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 : 0%				
	한-홍콩 FTA협정세율_알살바도르(선택) : 0%				
한-홍콩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 : 0%					
한-홍콩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 : 0%					

(2) 품목별 해외관세율 조회

- ① 사이트 메뉴 중 ‘관세율조회 > 해외관세율 간편조회’ 또는 대시보드의 ‘해외관세율 조회하기’ 클릭
- ② 검색창에 ‘HS코드’ 입력하여 조회
- 대상국 ‘중국’, HS코드 ‘8436.80’

〈그림 64〉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해외관세율 검색 조건

해외관세율 간편조회

! 세율적용 우선순위 안내
 ! 관세율표 계공현황 안내

▶ 대상국 중국
 ▶ HS코드 8436.80
 ▶ 품명(Description)
 결과보기 초기화

	0	1	2	3	4	5	6	7	8	9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15px; height: 15px; background-color: #0056b3; margin-right: 5px;"></div> EU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div style="width: 15px; height: 15px; background-color: #0056b3; margin-right: 5px;"></div> 과테말라 </div>										

③ HS코드 기준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 확인

〈그림 65〉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중국관세율 결과 화면

HS Code	품명(Description)	MFN (2순위)	잠정세율 (2순위)	APTA (1순위)	KR-CN FTA (1순위)	RCEP (1순위)	소비세 (내국세)	증치세 (내국세)	더 보 기
8436	Other agricultural, horticultural, forestry, poultry-keeping or bee-keeping machinery, including germination plan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100000	- Machinery for preparing animal feeding stuffs	7%			3.7%	6.3%		9%	+
	- Poultry-keeping machinery: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8436210000	-- Poultry incubators and brooders	5%			2.6%	4.5%		9%	+
8436290000	-- Other	8%			6.5%	10%		9%	+
84368000	- Other machinery								
8436800001	-- Silage cutting feeders	8%	5%		3%	9%		9%	+
8436800002	-- self-propelled type feed mixing and feeding vehicle	8%	6%		3%	9%		9%	+
8436800090	-- Other machines f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forestry (including germination equipments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8%			3%	9%		9%	+

3) 기타 방법

- 전화상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 KOTRA(1600-7119)
- 인터넷 상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고객센터, KOTRA 등
- 팩스서비스 : KOTRA 관세율 팩스서비스(KOTRA 홈페이지 > 해외정보 > 무역자료실 > “관세율 서비스 바로가기”)

○ 베트남/중국의 내국세

- 수입물품의 경우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통관 시 관세와 함께 특정 내국세가 부과되어,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내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세 및 내국세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관세·제세공과금 등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DDU 조건 :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은 DDP와 동일하나 세금은 수입자 부담

(1) 베트남

-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며, 1년 단위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품목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베트남 재무당국 또는 세무전문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표 86〉 베트남 부가가치세율

세율	과세항목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재화 및 서비스, 국제운송 및 면세품 예외)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해외 이전, 해외재보험서비스, 신용제공서비스, 자본이동, 파생금융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 미가공 채굴자원 및 광물 또는 이 밖에 채굴된 자원, 광물, 에너지 비용의 시장가치 합계가 51%인 상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공정 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깨끗한 물 • 의료기기 및 도구, 의료용 솜 및 밴드, 예방 및 치료 약품, 치료 및 예방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약리학 제품 및 의약품 • 교육 및 학습 도구, 어린이용 장난감 및 도서 • 전시/문화/체육/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영화의 제작, 수입, 배급 및 상영 • 과학기술법에 따른 과학기술 서비스 • 주택 매매 및 임대 • 농업, 수산업, 경작, 임업 관련 재화 및 서비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판매 또는 베트남 내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 • 부가가치세 대상 제외, 면세, 0%,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은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 수입에 대해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평균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 상품의 CIF조건 가격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표 87〉 베트남 특별소비세 세율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	특별소비세율 (%)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	특별소비세율 (%)
담배	75	비행기, 요트	30
주류(맥주 이외)	35-65	가솔린	7~10
맥주	65	냉방기	10
24인승 미만	10~70	카드게임	40
이륜 또는 삼륜 오토바이(125cm ³) 이상	20	봉헌용 금박지 및 봉헌물	70

(2) 중국

- 중국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는 수입물품에 보통 13%의 세율을 부과하며, 세관이 세액 납부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88〉 중국 항목별 증치세율 적용

세율	과세항목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재화 판매나 수입 • 가공노무나 수리수선노무 • 유형자산 임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 식용식물유, 식용염, 수돗물, 스팀, 온수, 가스 등,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등 • 교통운송, 우편서비스, 기초전신, 건축, 부동산임대 • 토지사용권 양도 • 부동산 판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보험, 금융상품양도 등 금융서비스 • 연구개발, 정보기술, 문화, 물류보조, 자문검증, 방송, 교육, 여행, 음식숙박, 주민서비스 등 • 기술, 상표, 저작권 등
5% 또는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이나 토지 사용권의 판매나 임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간이계산방식 적용 (매입세액 공제불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양도의 경우 증치세 면세 신청 가능 • 납세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국제운송서비스와 항공운송서비스 및 경외 단위에 제공하는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하는 서비스

- 예를 들어 사료자동급이기(중국 HS코드 : 8436.80-0000)를 CIF 조건으로 USD 1,000에 중국 텐진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 내국세(증치세)를 포함한 총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F 조건 : 공급가에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보험료를 포함한 비용 포함

〈표 89〉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에 따른 중국 세액

구분	원산지증명서 구비	원산지증명서 미구비	비고
기준	한-중 FTA협정세율	MFN 최혜국	
관세율	1%	8%	
관세액	10.0	80.0	= CIF Value * 관세율
증치세율	11%		
증치세액	111.1	118.8	= (CIF Value + 관세액) * 증치세율
합계	121.1	198.8	= 관세액 + 증치세액

출처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③ FTA 및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 개요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협정을 맺은 회원 국가들 사이 상품·서비스의 투자·지적재산권 등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로, 바이어가 수입국에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국 현지 비용절감이 가능한 점을 어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바이어를 수월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 FTA 협정마다, 물품(HS코드)마다 관세 인하 혜택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FTA는 16개(한-영,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는 타결되어 발표 준비중)이며, 이를 체결상대국이라 표현합니다.
 - 체결상대국은 단일국가뿐만이 아닌 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FTA협정이 타결되고 발효되면 협정문을 근거로 FTA 특례법을 제정합니다. 만일 FTA 협정문과 특례법, 그리고 관세법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이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경제적 효과

- (1)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됩니다.
- (2)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 FTA체결 이후 역내국과의 관세가 철폐되고 역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체결국으로 전환시킵니다.
- (3) 외국인 투자효과 등
 -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기업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3) FTA 원산지 결정기준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과 국가별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절차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자의 관세 부담이 낮아지므로 바이어를 매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이며, 품목별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표 90〉 원산지결정 일반적 기준의 종류

완전생산기준 :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		
실질적 변형기준	단독기준	세번변경기준 :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율(RVC),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특정공정기준 : 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
	선택기준 • or 조건 예시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or 특정공정기준 등	
조합기준 • and 조건 예시 :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4) FTA 원산지 사후검증


-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 검증 주체에 따라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계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과 관세당국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검증 :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섬유/의류는 간접검증),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 간접검정 : EFTA, EU, 터키
 - 간접/직접 검증(先간접검정-後직접검정) : ASEAN, 인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나.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1) 인증 개요 및 혜택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 등)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증수출자에게는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표 9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개요

유효기간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준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혜택범위	• 인증 심사받은 협정 및 인증 품목	
협정별 혜택	한-EU/영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중국, 한-베트남 등	•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RCEP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3) Specialist 보유 :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외부 전문가 지정 가능)

〈표 94〉 원산지관리 전담자 요건

구분	지정요건	확인방법
내부 전담자	아래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인 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교육 이수 실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시간당 2점 •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 •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이력 -건당 5점	해당 항목의 증빙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외부 전문가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법 제 2조에 따른 직무 제외)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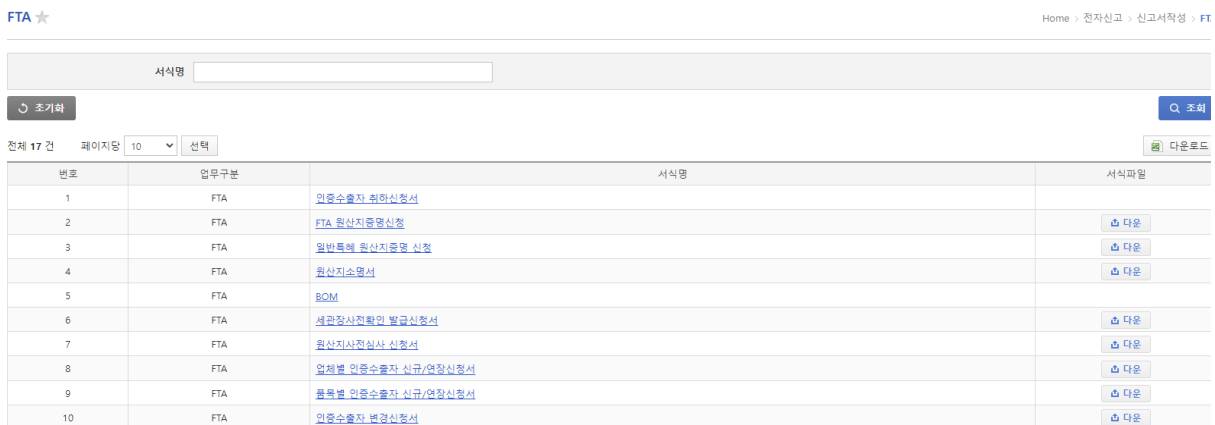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FTA포털

3) 인증절차

- 인증의 신청은 각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증 신청을 한 날로부터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우편 발송 시 관할세관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서류 재증'을 표기하여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관세청 Uni-Pass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Uni-Pass 시스템 회원가입 시 서비스종류(수출입통관/관세환급/수출입화물)를 선택하고 세관 승인을 받아야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체크 후 진행
- ② 사이트 메뉴 중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클릭
- ③ FTA 서식 리스트 중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연장신청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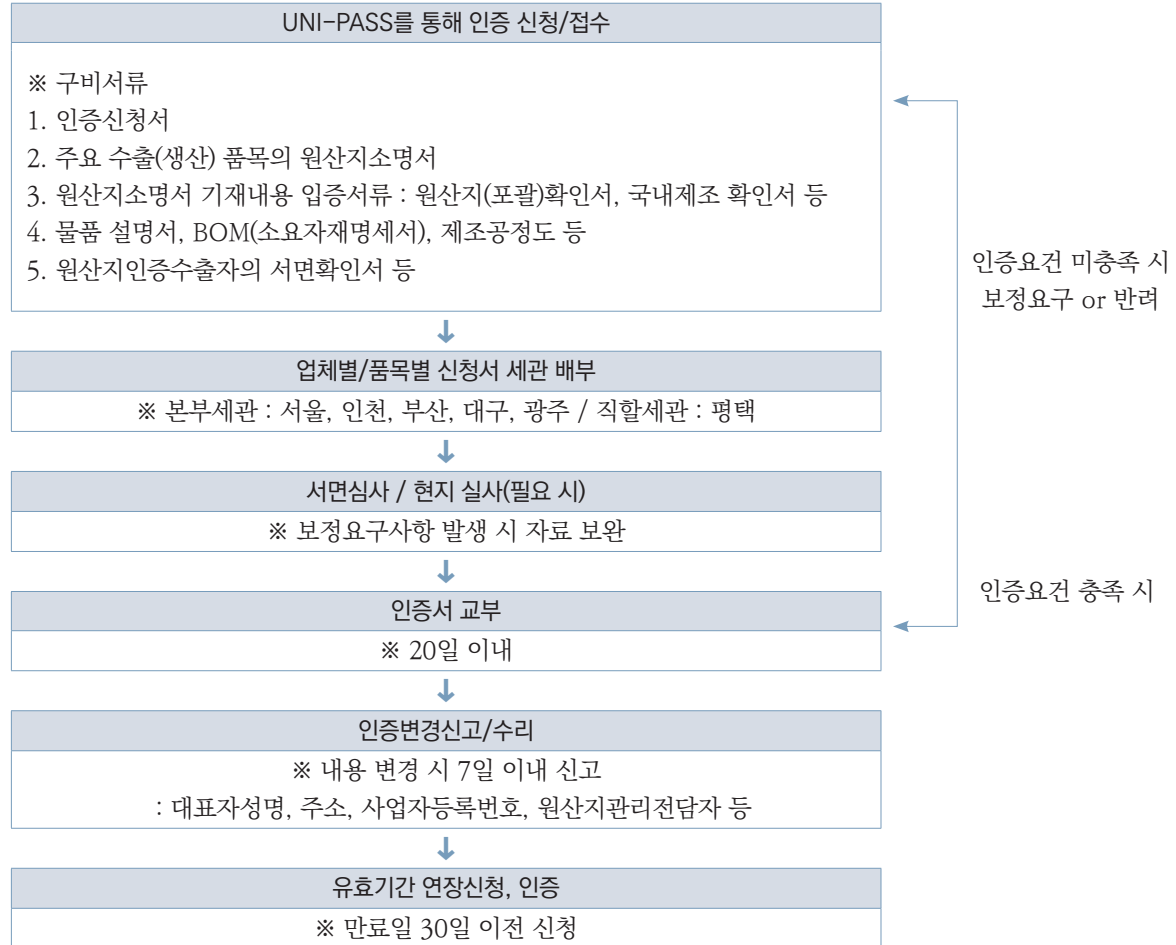
〈그림 66〉 FTA 서식 리스트 화면



- ④ '신청인, 인증대상 신청물품, 전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신청번호 : '채번' 클릭 시 자동생성

- 해당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서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FTA 포털¹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95〉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출처 : 관세청 FTA포털

4) 사후관리

- 아래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세관장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후관리의 확인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2조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하며, 확인 대상 및 시기는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16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다운로드 URL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34&cntntsId=2809)

5) 유효기간

-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며, 연장 시 연장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 시에는, 인증의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6)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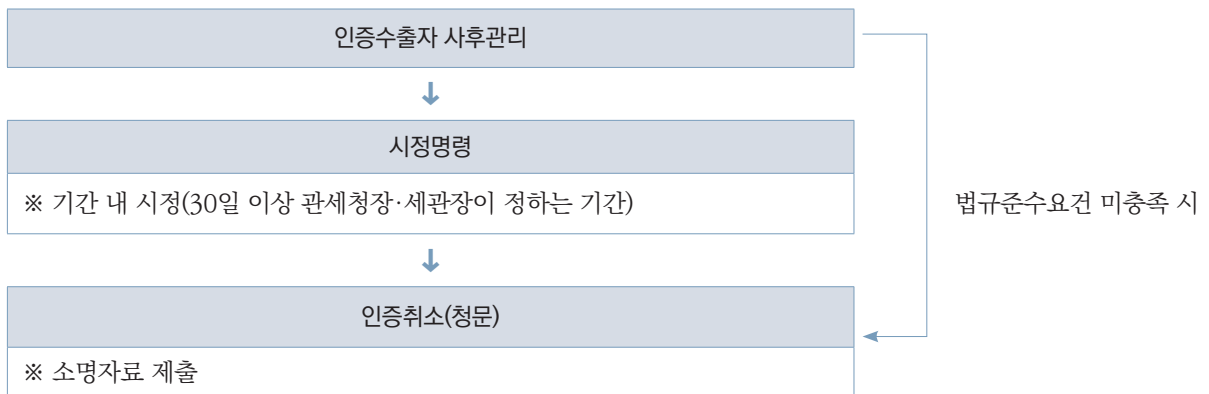
(1) 시정명령

- 아래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정명령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지정되며,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인증취소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문 실시를 통해 인증이 취소됩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 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표 96〉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소 절차



출처 : 관세청 FTA포털

STEP 8 수출통관

물품의 운송진행과정은 수입항까지 운항스케줄 및 견적을 확인하고 선복을 확보한 후에 수출신고-제품출고-선적-B/L 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선적일보다 1~3일 정도 먼저 화물 입고가 마감되므로, 운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출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Invoice, Packing List 등의 선적서류는 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포워더 선정 및 선복수배

가. 포워더 선정

- 축산ICT기자재의 수출을 위해서는 물품을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운송사를 확보하기 위해 포워더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 복합운송주선업자) :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여 운송영업을 하지 않은 채, 화주를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
- 포워더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화물의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적절한 운송수단과 운송루트, 화물에 적합한 포장형태나 목적국의 각종 운송 법규 및 무역 관행 등에 대해 화주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 97〉 포워더 업무 범위

구분	내용
선사 선정	선사에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 정보 공유 후 스케줄(수출서류 마감 시간, 화물 지정 창고 도착 시간, 입고증, 운항 스케줄) 확인
화물 선적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운송업자, 창고, 목적지의 사무소 및 대리점 등과 연락하여 화물 인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본선에 인도
통관	화주로부터 수출서류(CI, PL)와 재반출 화물, 위험품 등의 특이사항을 전달받아 통관사에게 통관 의뢰
내륙운송 의뢰	운송 회사에 화물 입고 마감 시간과 선사에서 받은 입고증을 전달 후 내륙운송 진행 요청
서류 관리	포워더와 관련된 서류 작성과 선하증권, 통관서류 등 관리

- 포워더를 선정할 때는 수출대상국에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지, 물류의 운송 중 발생하는 파손 등의 사고 시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포워더의 견적 비용이 제품의 P/O 및 계약서상의 판매액과 제조원가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표 98〉 포워더 선정 시 확인사항

구분	내용
비용(견적)	포워더에서 제공하는 물류 솔루션 유형에 따라 가격 구조와 장단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다중 경로 옵션	각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회사로 아웃소싱하면 운송 범위가 늘어나고 전체 물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어, 여러 경로 옵션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실시간, 전화, 이메일 지원을 제공하여 응답 지연 또는 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추적 기능	물류를 맡은 운송회사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인프라가 있는지 확인하여 포워더에게 직접 연락하여 운송추적 결과를 받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산업 경험	어느 분야에 특화되고 어느 지역의 경험이 많은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워더를 선정해야 합니다.
물동량	물동량(물건이 이동하는 양)이 큰 회사일수록 운임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배송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포워더를 탐색할 때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포워더를 개별적으로 탐색하거나, 무역 및 포워딩 관련 플랫폼을 활용하여 포워더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을 활용하여 포워더를 선정하는 경우, 다양한 포워더를 동시에 비교하거나 이전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견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표 99〉 포워더 탐색 플랫폼 예시

트레드링스	여기G
	
※ URL : https://www.tradlinx.com	※ URL : https://seairhub.com

- 포워더별로 견적을 확인할 때 기본 해상운임¹⁷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부가운임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해상화물 세관통관 및 기타부대비용 : II. 수출준비사항 중 STEP 3. 제품 현지화 P.46

〈표 100〉 기타운임 물류비용

항목	내용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할증료/ hapag에서는 MFR(Marine Fuel Recovery로 쓰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유가변동의 부담을 유류할증료라는 이름을 근거로 선사가 유동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한 비용
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유가 할증료/ BAF와 같은 개념 전쟁 및 산유국의 담합 등의 이유로 유가가 평상시보다 급등하였을 때 그 변동폭만큼 선사들이 협정을 맺어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
ECR / ECRS (Emergency Cost Reco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할증료 / BAF와 같은 개념 해상운임이 낮을 경우 운임 보전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변동할증료
LSS / LSF (Low Sulfur Sur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황유비 환경관련 정책으로 저유황연료 사용으로 인해 부과되는 비용
PSS (Peak Season Sur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수기에 추가로 붙는 할증료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테이너 불균형 비용 수입지와 수출지의 컨테이너 수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사비용
CRC / CRS (Container Recovery Sur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테이너 보존 수수료 / OFC와 같은 개념 해상운임이 낮을 경우 운임 보전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
CCF (Contaier clean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테이너 청소비용
PFS (Port Security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시설보안료,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보안료 전국 통합징수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
AMS / AFR (Automated Manifest System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 입항 24시간 이전에 선사가 신고하는 수수료 비용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S 강화 목적으로 배가 출항하기 24시간 이전까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수료
CC / CLC (Customs Clearance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시 발생하는 통관 서류 (수출입 면장)
DRC (Drayge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셔틀비용 (CY-CFS)
Delivery order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사가 CFS, CY에 화물인도하는 지시서 비용
Seal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테이너 자물쇠 비용
Shoring Fee / Lash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을 고정시키는 장치 사용료(에어백, Lashing 등)
Insurance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하보험비용(INVOICE Value x 1.1 x 0.0165%)
Port cong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혼잡비용
Port (storage)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두사용료(터미널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반입 관련 비용)
Warehouse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사용료
Demurrage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Time 내 CY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는 경우 지체일수로 청구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Time 내 CY에 컨테이너가 반납되지 않는 경우 지체일수로 청구하는 비용
Inspection Fee / X-ray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비용
Security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관련비용
Bonded Truck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운송비용(주요환적건에서사용)
Agent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점수수료
Fumigation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훈증/열처리비용
D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에 도착 후 통관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관세)

나. 선복수배

1) 운송방법

(1) 해상운송

- 선정한 포워드를 통해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예정된 운항스케줄을 확인하고, 물품의 납품기일과 수출국 도착일, 통관 기간, 현지 육지운송기간을 고려하여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 운항스케줄 확인 시에는 입고지의 화물마감일과 서류마감일을 확인하여 물품의 국내 운송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운송을 진행할 스케줄을 예약하고, 확정된 스케줄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운송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 해운시장은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 시장과 선주와 화주와의 용선계약에 따른 항로를 운항하는 부정기선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표 101〉 해운시장 비교

구분	정기선 시장	부정기선 시장
수요특성	저운임이진 않지만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이 있음	정기선에 비해 저운임이지만 규칙성, 신속성이 떨어짐
대상화물	물품의 가격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운임 부담의 비중이 낮은 일반화물 (공산품, 식료품, 고가품 등의 운송)	물품의 단위당 가격이 낮아서 운임 부담의 비중이 큰 화물(벌크화물) (원자재, 연료, 식량, 광물, 목재 등)
수요발생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계속적임	불규칙하며 불안정함
선박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 ship, Trumper)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표 102〉 해상운임 종류

구분	내용
기본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W, Weight)과 용적(M, Measurement) 중 운임 폭이 큰 쪽을 운임으로 정함 - 운임톤(RT, revenue ton) :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 중량과 용적을 비교하여 선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 운임 - 종가운임(Ad valorem) : 고가품 등의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 결정
총괄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선복운임, Lumpsum Freight) ● 용선자는 공적운임에 대해서도 계약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함
부적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운임을 적용하여 선복을 예약한 경우, 계약한 전체 화물을 다 신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체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신지 않은 공간(부적)에 지불하는 운임(공적운임, Dead Freight)
비율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이 항해 중 항해의 계속이 불가능해 질 경우에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Pro rate Freight) - 확정 운임을 적용하는 정기선 시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정기선에 적용
반송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임 후 지급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반송되어 왔을 때 등에 부과하는 운임(Back Freight)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2) 복합운송

- 복합운송이란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하는 형태로서, 복합운송인이 단일의 운임을 수령 후 단일책임으로 문전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운임이 저렴한 해상운송과 신속운송이 가능한 항공운송, 그리고 문전운송이 가능한 육상운송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운송

〈표 103〉 복합운송의 특징

구분	내용
운송책임의 단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에 걸쳐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 ※ 복합운송인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운송인형 : 자신이 직접 선박, 트럭, 항공기 등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선박회사) - 계약운송인형 :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의 주체자로서의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각 운송단계를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포워더) - 무선박운송인형 : 계약운송인인 포워더를 법적으로 실체화시킨 것으로, 선박을 직접 운행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입장으로,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는 운송인
단일운임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운송구간마다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 운송구간에 단일화된 운임을 부과
복합운송서류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운송구간마다 별개의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고 전 운송구간을 걸쳐 하나의 운송서류가 발행
운송방식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물품이 운송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복합운송서류에 대해서는 통일된 명칭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TD(Combined Transport Document),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B/L의 형태, 유통가능한 권리증권, 유통불능 기명식 등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는 국제운송주선인협회(FIATA)에서 발행하는 FIATA MT B/L이 가장 대표적인 복합운송서류이며, 우리나라 복합운송협회(KIFFA)에서 제정한 복합운송선하증권(KIFFA B/L)도 FIATA의 양식으로 발행됩니다.
- 복합운송서류가 선하증권의 형태로 발행되거나 마지막 운송이 해상운송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권리증권으로 발행됩니다.
- 복합운송서류의 선적일은 운송이 시작되는 구간의 운송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수취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일이 선적일이 되며, 최초의 운송이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본선적재를 하여야 운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선적재일이 선적일이 됩니다.

2) 컨테이너 선적방법

- 컨테이너는 화물을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크기에 따라 20피트와 40피트로 나누어지며, 대형화에 따라 45FT 점보컨테이너와 High Cubic 컨테이너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피트 : 길이 5.898m x 폭 2.348m x 높이 2.376m, 평균 25CBM 적재(최대 33.2CBM)
 - 40피트 : 길이 12.031m x 폭 2.348m x 높이 2.376m, 평균 55CBM 적재(최대 67.11CBM)
- 컨테이너 선적의 주요 운송 방식으로는 FCL(Full Container Load)와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이 있습니다. FCL은 컨테이너 전체의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이며, LCL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으로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됩니다.

〈표 104〉 FCL과 LCL 비교

구분	FCL	LCL
출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이 10개 이상의 표준 팔레트를 사용하거나 • 14CBM(m³) 이상 차지할 때 더 저렴한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2~13CBM(m³)의 소량 선적 • 특정 상황에서의 2CBM 미만의 상품도 가능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컨테이너에 대한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인한 손상이나 오염의 위험 없음 • 위험물의 경우, 소량 화물이더라도 다른 화물과 혼적이 불가능해 FCL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 배송은 더 콤팩트하게 포장되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져 특정 발송물의 경우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음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긴급 운송이나 정해진 날짜 이전에 도착해야 하는 운송에 더 나은 옵션 • 배송 성수기(8~10월) 또는 중국 골든 위크까지 이어지는 주와 같이 혼잡이 심한 기간에는 FCL보다 LCL로 예약하는 것이 쉬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및 도착 시간이 유연한 경우 더 적합한 옵션 • 환적 외에도 운송 과정에서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기 쉬움 • 환적항에 도착할 때마다 하역 및 선적 진행
운임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의 양과 상관없이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피(CBM) 혹은 중량(R.TON)당 운임 부과

〈표 105〉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운송형태	내용
CY/CY (FCL/FCL, Door to Do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창고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운송형태(운송도중 컨테이너 개폐 없음)
CY/CFS (FCL/LCL, Door to P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지의 송화인이 FCL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형태
CFS/CY (LCL/FCL, Pier to Do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CFS/CFS (LCL/LCL, Pier to P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 운송하여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형태

출처 : TradeNAVI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② Invoice, Packing List, 화인 작성

가. 물품 규격 확인

- 물품의 포장 규격은 선복에 제공하여 운송되는 제품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자가 제공하는 정보로, 패키리스트의 작성 또는 입고지의 입고증 작성 등에 필요합니다.
- 선적서류 작성 전 P/O를 바탕으로 준비된 수출 물품의 포장 전과 포장 후 중량을 확인하고, 포장된 물품의 CBM(가로*세로*높이)를 측정하여 선적서류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 CBM은 컨테이너에 적재될 부피단위를 의미하며, 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박스 등 포장제품의 가로(L), 세로(W), 높이(H)를 미터로 환산하여 곱해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많은 무역회사에서 CBM 계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웹상에 계산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웹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7> CBM 계산 프로그램 예시_1

CBM 계산기 컨테이너안에 적재하는 박스부피 단위인 CBM(CUBIC METER)을 트레이드링스 CBM 계산기를 통하여 자동 계산해드립니다.

화물정보 입력 ▲ 최종 포장 후의 화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 단위 중량 (kg으로 입력) 수량

계산하기

출처 : 트레이딩스(<https://www.tradlinx.com/cbmcaculator>)

<그림 68> CBM 계산 프로그램 예시_2

CBM계산기 간편CBM계산기 ? CBM이란? CBM역셀양식 커뮤니티 생활계산기

CBM계산을 간편하게 하자!

BOX				컨테이너 적재 가능 갯수			
단위	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	CBM(m ³)	20FT 컨테이너	40FT 컨테이너	40하이큐컨테이너
m 단위	<input type="text"/> m	<input type="text"/> m	<input type="text"/> m	- (m ³)	- (ctn)	- (ctn)	- (ctn)
cm 단위	<input type="text"/> cm	<input type="text"/> cm	<input type="text"/> cm	- (m ³)	- (ctn)	- (ctn)	- (ctn)
mm 단위	<input type="text"/> mm	<input type="text"/> mm	<input type="text"/> mm	- (m ³)	- (ctn)	- (ctn)	- (ctn)

적재예상일선택 2022.10.06

계산하기 ▶ CBM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cbm.uassetstore.com/index.html>

나. 선적서류 작성

- 물품을 국외로 수출할 때 수출자가 구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서류는 Invoice와 Packing List(이하 P/L)로, 수출자/수입자 정보, 운항정보, 인코텀즈 조건, 운송 물품의 규격 및 중량, 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Invoice와 P/L은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포워드 또는 관세사에 따라 서식이 상이함.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제품의 수량, 박스(파레트) 수량, 단가, 총액 등의 정보 표기

〈표 106〉 상업송장 작성요령

구분	작성요령
① Shipper/Seller	•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기재
② Consignee	•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와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 •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For account & risk of Messrs”(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자)로 표기하여 개설의뢰인을 기재하기도 함
③ Departure date	•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 기재 • 상업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5일 전후로 기재
④ Vessel/Flight	•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 기재 •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운송수단 기재
⑤ From	•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 기재
⑥ To	• 운송수단의 최종 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 기재
⑦ Invoice No. and date	• 매도인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 발행일 기재
⑧ L/C No. and date	•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 기재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기재
⑩ Other references (또는 Remarks)	• 기타 참조사항, 거래 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 기재 • 보통 원산지표시나 관련 계약서나 오퍼번호와 발행일자 등 기재
⑪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인도조건과 지불조건 기재 •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고 사용통화도 US \$ 등으로 정확하게 기술
⑫ Shipping marks	• 화인(Shipping mark) 표시
⑬ No. & Kinds of packages	• 포장 종류 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상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
⑭ Goods description	• 규격, 품질, 등급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 기재
⑮ Quantity	• 송장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 기재
⑯ Unit Price	• 단위 수량 당 가격 기재
⑰ Amount	•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 기재
⑱ Signed by	• 권한 있는 송장 작성자가 서명 • 실서명(Handwriting) 뿐만 아니라 스탬프 날인 서명 등도 가능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제품의 수량, 박스(파레트) 수량, 포장 규격(CBM), 중량 등의 정보 표기

〈표 107〉 포장명세서 작성요령

구분	작성요령
① Seller	•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② Consignee	•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와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상업송장과 일치)
③ Notify Party	• 일반적으로 수입상 기재 • Consignee와 같은 경우 “Same as Above”로 기재
④ Departure date	•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⑤ Vessel/Flight	•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⑥ From	•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⑦ To	• 운송수단의 최종 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⑧ Invoice No. and date	• 매도인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 발행일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⑩ Other references (또는 Remarks)	• 기타 참조사항(상업송장과 일치)
⑪ Shipping marks	• 화인(Shipping mark) 표시(상업송장과 일치)
⑫ No. & Kinds of packages	• 포장 종류 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상태 기재(상업송장과 일치)
⑬ Goods description	• 규격이나 품질 뿐만 아니라 L/C No. 별, Model No. 별로 정확하게 기재 -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서 ‘Full details Packing List’나 ‘Size & Color Assortment’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크기(Size)와 색상(Color)별로 정확히 분류하여 작성해야 함
⑭ Quantity or net weight	• 물품의 수량 또는 순중량을 각 포장별로 구분하여 기재
⑮ Gross Weight	• 순중량에다 외부 포장재료(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
⑯ Measurement(용적)	• 선적물품의 부피(CBM) • 총중량 합계 및 순중량 합계와 함께 하단에 기재 •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결정에 기본적인 자료
⑰ Signed by	• 권한 있는 포장명세서 작성자가 서명

- 축산ICT기자재의 경우 전자 및 전기통신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물품의 세부 규격을 명시한 규격서를 첨부하여 통관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정한 서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수출입 통관담당자가 물품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정보를 표기합니다.

- 제품명 : Invoice 및 P/L에 작성한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 제품사진 : 출고된 제품의 구성품과 동일하게 촬영하여 첨부
- 세부규격 : 모델명, 시리얼넘버, 제조년도, 원산지, 제조사, 사용 전력, 주파수 등 작성
- 라벨부착여부 : 출고된 제품의 라벨 부착 여부, 라벨 내 표기된 정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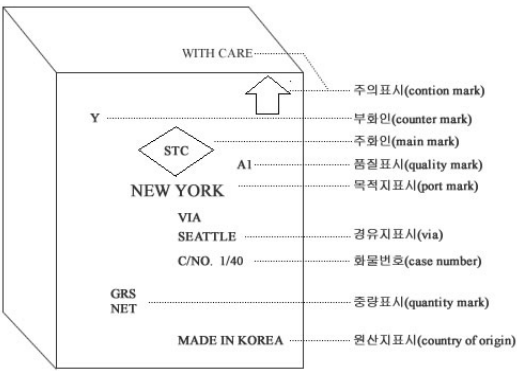
- 입고증은 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국내 물류 입고지에서 요청 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 일반적으로 포워드 정보, 선복 예약번호, 화물 내역, 운항 정보 및 화인을 작성하도록 구성
- 화물 내역 작성 시 패킹리스트와 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주의

다. 화인 작성 및 부착

- 포장 겉면에 부착하여 포장된 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배송 등의 운송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입국가 통관 시 필수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도착지 정보, 박스번호, 출발지, 도착지, 제품명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표시하며, 수입 국가에 따라 화인에 요구하는 필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108〉 화인 예시

화인 부착 예시	화인 작성 예시
 <p>수입처</p>	
<p>HCMC, VIETNAM — 목적지표시</p> <p>C/T NO. 1/1 — 화물번호</p> <p>MADE IN KOREA — 원산지표시</p>	<p>WITH CARE — 주의표시(attention mark)</p> <p>Y — 부화인(counter mark)</p> <p>STC — 주화인(main mark)</p> <p>A1 — 품질표시(quality mark)</p> <p>NEW YORK — 목적지표시(port mark)</p> <p>VIA SEATTLE — 경유지표시(via)</p> <p>C/NO. 1/40 — 화물번호(case number)</p> <p>GRS NET — 중량표시(quantity mark)</p> <p>MADE IN KOREA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p>

③ 수출신고필증 발행

가. 수출입신고 및 통관

-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고, 세관에서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한 내용을 심사해서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입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수입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71〉 수출통관절차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 (2021), 이기찬

-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수출물품을 선적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세관심사는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로 이루어집니다.
 - 서류심사 : 수출입물품의 HSK코드에 해당하는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 의거 수출입규제 여부 및 허가·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 물품검사 :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생략

나. 보세제도

-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제도로써, 크게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나누어 집니다.
 - 보세구역 :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장치·가공·전시·판매하는 구역
 - 보세운송 :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통관수속을 밟지 않고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표 109〉 대표적인 보세구역

구분	내용
보세창고	•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 -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특허보세구역(세관장 특허)
지정장치장	•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통관을 하기 위한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 •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정보세구역
보세공장	•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
세관검사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세관장 지정)
보세전시장	• 전시회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수입한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보세판매장	•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종합보세구역	•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다.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서는 Invoice와 P/L 작성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및 신고되어야 하며, 물품의 적재마감일 1일전까지는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수출기관과 연계한 관세사가 있을 경우 해당 관세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관세사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 포워더에 요청하여 수출신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자 및 제조자의 정보, 수입자 정보, HS코드 및 중량, 단가 및 판매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수출기관 사업자등록증, Invoice, P/L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 110〉 수출신고서 작성요령_1

구분	작성요령
① 신고자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및 신고자 부호, 연도,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 기재
② 수출자	수출자 상호 또는 성명, 수출자구분, (수출대행인 경우)위탁자 상호,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③ 제조자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 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기재
④ 구매자	Invoice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영문이름과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공급자 부호 기재
⑤ 신고번호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 연도 기재
⑦ 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 기재(YYYY/MM/DD(연월일))
⑧ 신고구분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 코드 기재
⑨ C/S구분	세관기재(검사생략 등)란으로 기재 생략
⑩ 거래구분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 코드 기재
⑪ 종류	일반·보세공장수출 등 해당 코드 기재
⑫ 결제방법	L/C, 단순송금 등 해당 코드 기재
⑬ 목적국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 기재
⑭ 적재항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공항명 기재
⑳ 검사희망일	세관검사 희망일 기재(YYYY/MM/DD(연월일))
㉑ 물품소재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와 소재지명칭(업체상호) 및 주소 기재
㉒ L/C번호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번호 기재
㉓ 물품상태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㉔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인지 아닌지 여부 기재
㉕ 반송사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 기재
㉖ 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 중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신고에 의한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여부 기재
㉗ 품명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㉘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 기재
㉙ 상표명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 기재
㉚ 모델·규격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 기재
㉛ 성분	품목분류, 법령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 기재
㉜ 수량(단위)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 기재

〈표 11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_2

구분	작성요령
㉓ 단가(USD)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 기재
㉔ 금액(USD)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 기재
㉕ 세번부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 번을 10단위까지 기재
㉖ 순중량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기재
㉗ 수량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계기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㉘ 신고가격(FOB)	FOB 기준의 원화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 (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㉙ 송품장부호	상업송품장부호 기재
㉚ 수입신고번호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 기재
㉛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 표시여부 기재
㉜ 포장갯수(종류)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 및 포장종류 코드 기재
㉝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수출요건확인 일련번호, 구분,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법령부호 기재
㉞ 총중량	수출신고 물품의 총중량(용기 포함) 기재
㉟ 총포장갯수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 기재
㊱ 총신고가격(FOB)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기재(원단위 이하 절사)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 이하는 반올림)
㊲ 운임(W)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
㊳ 보험료(W)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기재
㊴ 결제금액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
㊵ 수입화물 관리번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 당해 수입화물관리번호 및 전량, 분할, 여러 건 반송 등의 구분 기재
㊶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를 'Y' 또는 'N'로 기재하고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 기재
㊷ 세관기재란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예. 선적확인사항 등) 기재란으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㊸ 운송(신고)인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자 등 당해 수출물품의 운송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㊹ 기간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 기재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운송예정기간 기재(YYYY/MM/DD(연월일))
㊺ 적재의무기한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재의무기한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㊻ 신고수리일자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그림 72〉 수출신고필증 예시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 처리기간 : 즉시

① 신고자 관세법인 ○○○	④ 신고번호 00000-00-000000X	⑤ 세관과 000-X0	⑦ 신고일자 2000-00-00	⑧ 신고구분 X 일반P/L신고	⑨ C/S구분 X
② 수출대행자 회사명 (통관고유번호) 회사명-0-00-0-00-0 수출화주 회사명 (통관고유번호) 회사명-0-00-0-00-0 (주소) XXXXX-XXXX-XXXX-XXXX-XXXX (XXXXXX) (대표자) ○○○ (소재지) 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수출자구분 X	⑩ 거래구분 XX XXXXXX	⑪ 종류 XX XXXXXX	⑫ 결제방법 XX XXXXXX	
		⑬ 목적국 XX XXXXXX	⑭ 적재항 XX XXXXXX	⑮ 선박회사 XXXXXX	
		⑯ 선박항공사명	⑰ 출항예정일자	⑱ 적재정보세구역 XXXXXX	
		⑲ 운송형태 00 XX	⑳ 검사희망일 2000-00-00		
		㉑ 물품소재지 00000 XXXXX-XXXX-XXXX-XXXX-XXXX 00000			
③ 제조자 회사명 (통관고유번호) 회사명-0-00-0-00-0 제조장소 00000 산업단지번호 000		㉒ L/C번호	㉓ 물품상태 X		
④ 구매자 구매자명 (구매자번호) 구매자XXXX		㉔ 사전입시개통통보여부 X	㉕ 반송 사유		
		㉖ 환급신청인 0 (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자)	㉗ 자동간이정액환급 X		
● 품명·규격 (관번호/종란수 : 001/002)					
㉘ 품명 AUTOMATIC FEEDING FOR SOW			㉙ 상표명		
㉚ 거래품명 AUTOMATIC FEEDING FOR SOW					
㉛ 모델·규격		㉜ 성분	㉝ 수량(단위)	㉞ 단가(USD)	㉟ 금액(USD)
(NO.01) AUTOMATIC FEEDING FOR SOW(24KG)			1 (EA)	000.00	000.00
㊱ 세번부호 8436.80-0000	㊲ 순중량	21.0 (KG)	㊳ 수량 1 (U)	㊴ 신고가격(FOB)	\$0,000.00 ₩0,000,000
㊵ 송품장부호 XX00000000	㊶ 수입신고번호		㊷ 원산지 KR---N	㊸ 포장갯수(종류)	1(GT)
㊹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㊺ 총중량 29.0 (KG)	㊻ 총포장갯수 2(GT)		㊼ 총신고가격 (FOB)		\$0,000.00 ₩0,000,000
㊽ 운임(W) 000,000	㊾ 보험료(W)		㊿ 결제금액		XXX-XXX-0,000.00
㋀ 수입화물 관리번호			㋁ 컨테이너번호 N		
㋂ 신고연기재란			㋃ 세관기재란 '20.7.1일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unipass.customs.go.kr)		
㋄ 운송(신고)인		㋅ 적재의무기한 2000-00-00		㋆ 담당자	㋇ 신고일자 2000-00-00
㋈ 기간 부터 까지					



발행번호 : 000000000000(2000.00.00)

Page : 1/2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법 제253조 제277조 또한 휴대방송 반출사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unipass.customs.go.kr)

* 본 신고필증은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신고필증입니다.

* 출력된 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은 전자문서의 '시정확인필' 스탬프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수출신고의 정정

-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수리된 때에는 임의로 정정할 수 없으며, 수출신고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그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수리된 수출신고서를 출항전에 정정신청하는 자율정정대상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심사나 검사대상 이외의 수출물품은 출항전까지 원칙적으로 자율정정이 허용되나, 다음의 일부 항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 112〉 자율정정 제외대상

항목명	정정항목명	항목명	정정항목명
수출화주	수출화주 대표자명	차대번호	차대번호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원산지
거래구분	거래구분	요건승인번호	요건승인번호
목적국	목적국	적재의무기간	적재의무기간
품명	품명	신고가격	신고가격
상표명	상표명		정정 전/후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세번부호	세번부호	총신고가격	총신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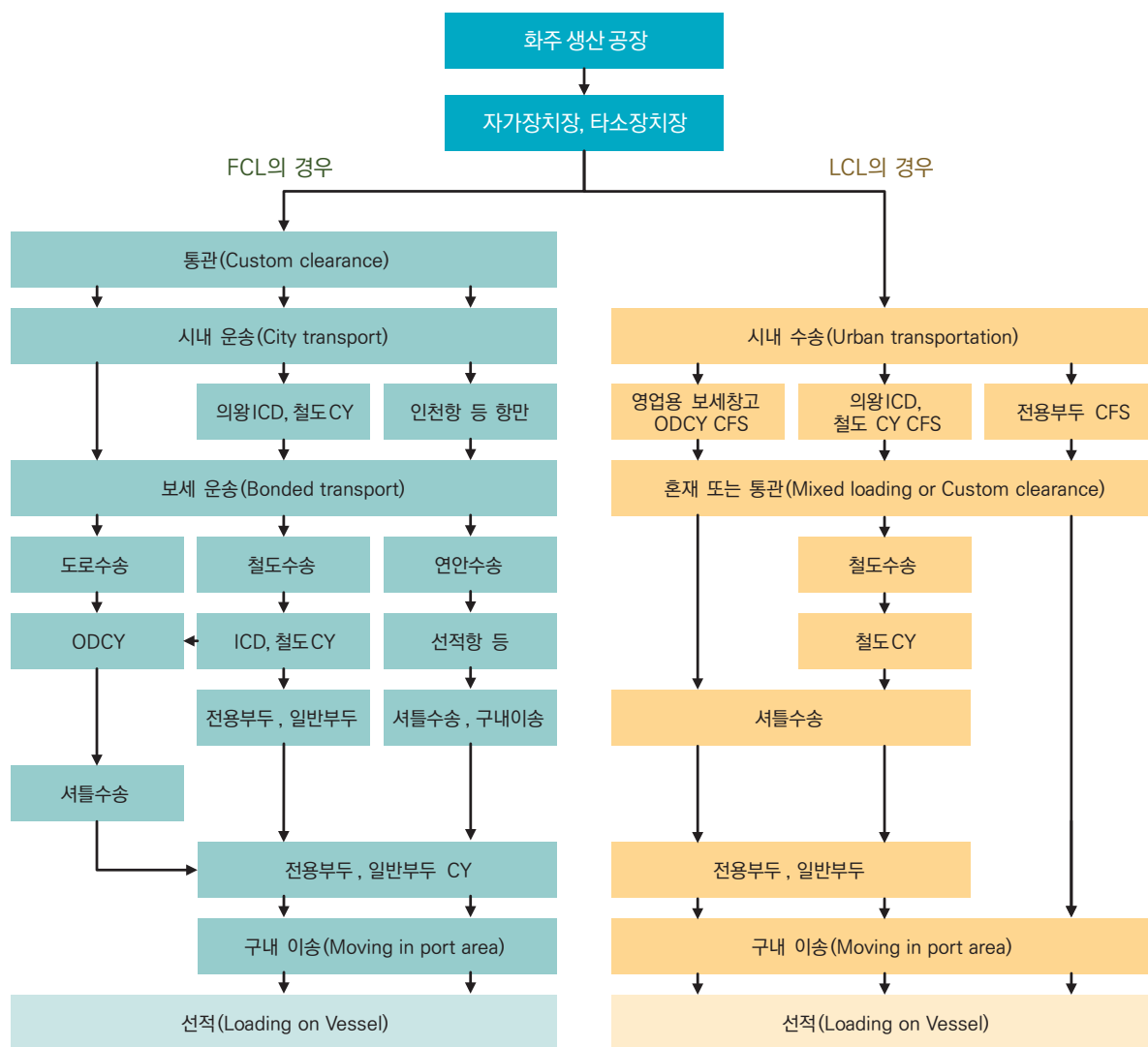
마. 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 취하 : 원칙적으로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거나 수리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으나, 수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수출신고 수리 이후여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취하를 승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수입국의 수입 금지조치, 천재지변 또는 부두파업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사유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 각하 : 수출신고가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세관장은 그 신고를 각하하게 됩니다(법 제250조 제3항, 수출통관고시 제30조).
 - 각하의 사례 :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 지시를 받고 물품을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국내운송

- 수출물품을 국외로 운송하기 위해 지정된 입고지로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으로, 수출자가 입고지로 화물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포워더에 픽업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륙운송의 경로는 육상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 3개의 경로가 있으며, 경로 선택은 화물의 양,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FCL 화물은 화주 문전통관 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인 경우 미통관 상태로 육상으로 수송되어 CFS에서 컨테이너 적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적지에서 통관되고 있습니다.
- 화주의 생산 공장에서 출고된 물류는 시내운송을 거쳐 의왕, 양산 등의 내륙화물복합운송기지(ICD)로 운송되고, 부두나 공항으로 보세운송됩니다. 생산 공장에서 화주의 자가장치장이나 타소 장치장을 거치거나, ICD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두로 운송되기도 합니다. 이후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된 화물은 부두 내의 셔틀운송을 거쳐 선적됩니다.
- 한국에서는 주로 컨테이너 트럭에 의한 육상운송이 이루어지며, 컨테이너의 특성상 TEU(20'ft 컨테이너 단위), FEU(40'ft 컨테이너 단위)에 대해 거리 및 구간별로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 기본요금 외에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할증, 험로 할증, 휴일 및 심야할증, 샤시임대료, 대기요금 등 기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화주의 컨테이너 반환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수령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해서 그 컨테이너를 수령한 장소를 기점으로 왕복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부산구간 혹은 선사가 인정하는 CY가 종점일 경우에는 편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적재중량 또는 일정기준을 초과한 화물차량은 별도 운행허가를 받고록 하고 있어 일정기준을 벗어나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운행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차량형식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 또는 4.2m 이내
 - 중량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또한, 보세운송신고 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화물 운송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자(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화물 운송 시 과적행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출입(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한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73〉 수출화물의 유통경로(해상운송의 경우)



출처 : 한국의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국토해양부

- FCL(Full Container Load)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통관기지
- CY(Container Yard) : 수출입화물 컨테이너를 보관, 적재하거나 반출입하는 보세구역
-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장치장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하역하는 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반입하여 보관하는 보세구역(보세창고)

5 선적 및 B/L 발행

가. 적재신고

- 수출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이 선적지 공·항만(컨테이너 장치장 (ODCY, ON-Dock CY) 포함) 내에 장치된 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목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 적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수출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되며, LCL 화물은 포워드(화물운송주선업자)의 혼재 화물 품목목록을 취합하여 제출
- 세관장은 적재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적재신고수리 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합니다.
-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신고시 신고내용 중 물품확인대상 선별 여부를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물품의 화주 또는 수출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재신고수리를 받은 후 적재하여야 합니다.

나. 적재전 검사제도

- 적재전 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밀수출, 허위수출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 통상적으로 적재전 검사가 지정된 경우 수출신고를 대리한 관세사 등이 적재전 검사 신청을 하며,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포워드 등도 동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적재전 검사 대상 물품은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 시 적재전 검사로 지정되면 수출신고서에 “동 물품은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선박·항공기에 적재전 보세구역 반입 후 적재지 관할 세관에 검사 요청하고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안내문이 기재되어 발행됩니다.

다. 적재확인

- 운송회사에서 운송수단에 적재 후 적재하였음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물품의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선적을 의뢰받은 선박회사에서 선적하면 수출신고번호, 선(기)적일자, 포장반출 개수, 중량과 같은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수출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출신고가 취소되기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출항 일정변경 등 수출신고를 수리한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기)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당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출신고한 세관에 제출·승인을 받으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라. B/L(선하증권) 발행

- 물품의 선적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하는 행위로, 포워더에 B/L발급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포워더에서 관세청 전산망에 적하목록을 신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B/L은 지정된 서식이 없어 포워더마다 상이한 서식으로 관리되나,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Invoice, P/L 등의 선적서류와 일치한 정보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B/L은 수입자가 물품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준이 되는 서류로, 수출자는 B/L발급이 완료되면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선하증권의 기능 : 화물수취증, 운송계약의 증거, 유가증권(권리증권)
- B/L의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은 화물의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 113〉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발행방식

구분	내용
기명식(Stra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을 수하인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선하증권의 유통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 원칙적으로 수하인 변경 불가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지시식과 구분하지 않고 배서를 통해 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
지시식(Or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된 자 또는 소지인이 화물의 최종수하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형태 • 지시받은 자의 배서만으로 수하인 변경 가능
소지인식 또는 무기명식(Bear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인을 공란으로 두어 해당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도록 하는 것 • 단순한 교부만으로 선하증권의 권리 양도 가능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표 114〉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

구분	내용
선하증권 원본 전통 (Full set of 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에서 'Full set of B/L'을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모두를 제출하라는 뜻 - 통상 선하증권은 분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의 원본을 발행하며, 그중 한 통을 제시하면 나머지 두 통은 무효가 된다.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의 Remark란에 아무런 하자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무사고선하증권 • 사고선하증권은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하므로 수출자는 하자내용을 보완한 후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선적기일 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을 제출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선적재선하증권 (On board 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이 본선상에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화물을 부두창고나 부두장치장 등에서 인수하여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발행한 선하증권
해상선하증권 (Ocean 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시 발행되는 선하증권 • 국내항구 간 또는 내륙운송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과 구분하여 사용
지시식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방식의 경우 지시식선하증권으로 발행하여 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 수하인(Consignee)을 지정하지 않고 지시식(to order 또는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표기한 선하증권
운임선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F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상에 'freight prepaid' 표시 • FOB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freight collect' 표시
통지인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applicant)인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

출처 :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2021), 이기찬

- 수하인(통상 매수인)이 선사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수입화물이 국내양륙지에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의 지연, 수익자의 서류제시 지연 또는 지정은행의 업무지연 등으로 인해 관계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의 항해일수가 비교적 짧거나 운송시간이 적은 고속선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사태를 '선하증권의 위기'라고 합니다.

〈표 115〉 선하증권의 위기 해결방법

구분	내용
권리증권성 기능 배제 (B/L의 사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증권 반납(surrender), 해상화물운송장(SWB) 발행 등 - surrendered B/L이나 SWB를 권리증권으로서 원본선하증권을 담보로 요구하는 신용장거래에서는 이용이 제한됨 • 신용장방식에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가 대신 이용
운송지연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선하증권 이용 - 선사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데이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전자적인 권리이전의 복잡한 책임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마. 원산지증명서 발행

-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은 수출 시 필수 과정은 아니며,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입자 요청 시 수출자는 발급을 진행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¹⁸ 인증 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인하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FTA 원산지증명서(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수입국가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수입자가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이 다른 경유국을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적용의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국과 체결된 FTA 협정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116〉 원산지증명서 발급

발급처	정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하는 방식	
	발급처	세관(UNIP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발급 : unipass.customs.go.kr • 24시간 신청 가능
발급처	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발급 : cert.korcham.net • 9시~18시 신청 가능 	
기관 발급	대상국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작성양식	개별 FTA협정에서 지정한 양식	
	발급절차	① 서류 구비 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신청 ② 기관에서 신청서 검토(3영업일 소요) ③ 발급 완료 ④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출력하여 수입자에 제공 ※ 원산지 증명서 출력 시 컬러로 1회만 가능하므로 주의	
자율 발급	정의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	
	발급처	수출자 자체 발급	
	대상국가	칠레, 페루, 중미,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U, EFTA, 터키,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작성양식	칠레, 페루, 중미,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규정된 양식에 자율 작성
		EU, EFTA, 터키, 튀르키예, 영국	규정된 양식 없으며, 인보이스인도증서, P/L 등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 안 기재
작성양식	미국	규정된 양식 없으나 정해진 항목이 존재하며, 한국 세관의 권고서식 활용 가능	
	발급절차	① 서류 구비 후 원산지증명서 기관 자체 작성 ②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에 제공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관리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 사본,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구매증빙서류, 원산지확인서(필요 시) 		

출처 : 관세청 FTA포털

18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Ⅳ.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23-128

- 수출자가 국내구매한 수출품(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구매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거나 증명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급물품이 완제품인 경우와 원재료인 경우를 구분하여 확인서를 달리합니다.

① 원산지확인서

- 수출자와 수출품의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보내야 수출자가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거나 증명기관에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세관에서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조자가 정해진 양식에 기재하여 스스로 확인을 하면 가능하나, 수출자가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 공급물품의 HS코드, 수출 시 적용할 자유무역협정을 확인하여 당해 협정에서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거래에는 한 번 작성으로 12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국내제조확인서

- 제조한 물품을 다른 수출품 제조업체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조업체에 보내야 제조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거나 증명기관에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확인서와 동일하게 제조자가 정해진 양식에 기재하여 스스로 확인하면 가능하고, 수출 시 적용할 협정에서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국내제조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③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서

- 중소기업협업체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수출자 등이 신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공신력있는 확인서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원산지확인서와 이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통보서를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세관장과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자는 수입통관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으면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세관장의 서면 조사 통지 전까지)에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림 7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출처 : 관세청 FTA포털

⑥ 선적서류 수입자 전달

-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된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수입자가 도착하는 물품 정보를 확인하고 물품 권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출 통관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선적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이 있으며, 그 외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¹⁹, 수출승인서²⁰, 검사증명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서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 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양식 없이 회사 상황에 맞게 검사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공인기관에서 진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림 75〉 검사증명서 샘플

CERTIFICATE OF INSPECTION

DATE :

AS PER L/C NO.

SHIPPED BY
OF
TO

THIS IS TO CERTIFY THAT OUR QUALITY CONTROLLER ATTENDED FOR INSPECTION OF THE CAPTIONED SHIPMENT AT

AND SAMPLES TAKEN AT RANDOM FROM THIS SHIPMENT WERE INSPECTED AND APPEARED TO BE SUCH AS TO WARRANT THE ISSUE OF THIS AUTHORIZATION.

THE ISSUE OF THIS CERTIFICATE OF INSPECTION TO SHIP THESE GOODS DOES NOT IMPLY THAT THE GOOD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DOES NOT IN ANYWAY RELIEVE THE SELLERS OF THEIR RESPONSIBILITY TO SUPPLY THE GOODS TO BE SHIPPED HEREWITH IN ENTIRE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MERCHANDISE INSPECTED BY :

QUALITY CONTROLLER :

AUTHORIZED SIGNATURE

출처 :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KOTRA

19 원산지증명서 발행 : IV. 수출절차 중 STEP 8. 수출통관(물품 선적) P.151-153

20 수출입 승인제도 : I. 수출개요 중 제3절. 수출입 승인제도 P.8-10

- 수입자가 물품의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B/L은 수출자의 서렌더 처리 여부에 따라 B/L의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렌더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으로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수출자가 가진 물품의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 서렌더 처리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을 완료하면 수출자는 포워더에 서렌더 처리를 요청하여 발급된 서렌더 B/L 사본을 수입자에게 송부
- 서렌더 미처리 : 수입자가 물품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에 B/L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수출자는 국제 우편을 활용하여 수입자에게 원본 B/L 송부
- 서렌더 B/L은 기발급된 B/L과 동일하나, 서렌더 처리로 인해 “Surrendered”가 표시된 B/L을 의미합니다.

〈표 117〉 B/L을 활용한 수입자의 물품권리 인도 기준

구분	서렌더 처리 시	서렌더 미처리 시
전달 B/L	서렌더 B/L 사본	B/L 원본
전달 방식	이메일, 팩스 등 파일 발송	우편 발송
소요기간	즉시 가능	15일~30일(국가에 따라 상이)
수입자 물품 인도 시 필요 서류	서렌더 B/L 사본	B/L 원본 명판, 직인 등의 수입자 증명서류

⑦ A/N(Arrival Notice) 확인

- 포워더에게 도착통지서(A/N)를 수취하여 예상 입항 일정을 확인하거나 도착 지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포워더가 수입자(B/L상 NOTIFY PARTY)에게 A/N을 전달합니다.
- A/N의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세관에 수입신고(실화주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사가 보내는 A/N에는 기본적인 문구 이외에 배가 도착하는 터미널의 코드와 마감시간도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⑧ 수입국 내륙운송

- 수입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현지 세관에서는 선적서류와 도착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 통관 완료 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관세납부를 통해 통관 과정이 완료됩니다.
- 운송사는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수입자가 제시하는 B/L을 확인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베트남 수입 통관

-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됩니다.
- 베트남 관세청(GDVC)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정한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표 118〉 베트남 통관 절차

구분	내용
1. 물품도착 및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이 입항지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물품에 대하여, 상업적 계약에 의한 수입여부,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지 여부, 수출 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 여부 등에 대해 수입 관련 증빙(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지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수입허가(Automatic Import Permit) 대상 물품은 수입 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산업무역부는 5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행함 • 수입신고 할때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수입 대상 물품에 따라 수입 허가, 라이선스(석유류), 원산지 증명서, 면세허가(담배류) 등 통관에 필요한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는 입항지 세관에 서류(Document) 제출 또는 e-Customs를 통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음
2. 심사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당국은 수입신고자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에 따라 서류 및 물품 검사를 실시함 •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수입자에게 통지함 • 전자신고(e-Customs)에 의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부여하고, 다 음과 같이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Flow : 전자 신고(e-customs)에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는 대상 - Yellow Flow : 수리 전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서면 심사하는 대상 - Red Flow : 수리 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서면 심사하고, 물품 검사 또한 실시하는 대상
3. 관세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수리 후 규정에 따라 관세 등 조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세 등은 물품 반출 전 즉시 납부 대상 / 반출 후 납부 대상(납부 유예)으로 구분하여 부과됨 • E-customs를 통해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경우는 월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4.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 전/후 관세납부 대상에 따라 각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 반출이 허용됨

출처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통관 소요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평균 3~5일이며, 국내 선적대기기간(1~6일), 항해기간(6~7일), 현지 내륙운송기간(1~3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베트남 호치민 혹은 하노이로의 평균적인 총 운송 소유시간은 약 11~21일입니다.

○ 중국 수입 통관

-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이며, 관련 법령에는 해관법, 수출입 관세조례, 대외무역법, 세수보전과 강제조치 집행방법 등이 있습니다.

〈표 119〉 중국 통관 절차

구분	내용
1. 수입 신고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수입신고전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 운송 방법에 따라 목적항 도착 전 적하목록 제출
1-1. 통관고유번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Customs Registration) Number 발급 신청 : 각 관할세관에 직접 신청 • 벌칙 -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 -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0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00달러 부과
1-2. 적하목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한 - 해상운송 : 선적 24시간 전(컨테이너선),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기타선박) - 항공운송 : 항공기이륙 전(4시간 이하 단거리항공), 목적항 도착 4시간 전(장거리항공) • 미제출 시 제재 -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절차의 수행을 일시 정지 - 세관은 적하목록이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반송 명령 가능
2.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적하목록 제출 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 • 제출 주체 :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통관기업 - 제출 방법 :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자료 전송(EDI), 수입신고서 3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 • 관련 증빙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운송보험서류, 소포명세서(우편 운송의 경우),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일부 해당물품의 경우 관련 수입 라이선스(동식물 수입허가증, 약품 수입허가증 등), 기타 세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 수입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입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세가격의 0.5% 연체료 부과
3. 수입심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접수 후 통관지 관할세관의 심단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수입자 또는 통관기업에게 반출허가 또는 서류제출신사를 통보 - 서류제출 구비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무결성 여부 - 수입 신고된 물품이 수입금지품 또는 제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통관서류상의 상세 품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된 가격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 • 반출허가를 통지하는 화물은 수입신고인의 신용이 높거나 수입화물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해당 • 서류제출심사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요구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출
4. 통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이 서류 심사 후 납부고지서를 수입 신고인에게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출처 : TradeNAVI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중국의 관세는 최종 10단위의 税则号列(중국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표 120〉 관세 종류

구분	내용
보통세율 (General Rate)	•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최혜국관세 (MFN Rate)	•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잠정세율 (Interim Rate)	•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기본세율대신 적용되는 세율 - MFN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아태협정세율 (APTA Rate)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FTA협정세율 (FTA Rate)	• 중화인민공화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혜관세
할당관세 (Import Quota Rate)	•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Quota)를 설정하여, Quota 내의 수량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감면관세 (Exemption of Duty)	• 산업, 경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일시 수입 물품,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 해 주는 관세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이하 덤핑 마진)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 (Safeguard)	•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 자국 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의 상품에 부과하는 보복의 성격을 가진 관세 - 2018년 3월 22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 에너지 제품 등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최빈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 최빈 개발 도상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 부과
WTO 정보 기술 협정 (ITA)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세장벽을 없애는 협정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

출처 : TradeNAVI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STEP 9 수출대금 회수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선적서류를 갖추어 이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Nego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출 통관 절차가 끝나고 선적 및 해상보험의 부보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러한 수출 선적 서류의 매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용장과 수출 환어음 등의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를 보통 'Nego(네고)'라고 합니다.
- Nego를 위한 구비서류²¹가 모두 준비되면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과 화환어음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화환어음 거래 약정이 체결되고 나면 수출자는 매 수출 시 화환어음을 회사이름으로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합니다.
 - 화환어음 거래 약정은 최초 거래시에만 체결합니다.
-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수출대금을 무난하게 회수할 수 있으나, 매입은행의 서류 심사 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 121〉 매입은행 서류 검토사항 및 하자서류 처리방법

서류 검토사항	하자서류 처리방법
1.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3.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4. 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모순이 없는지 여부 5. 모든 서류가 자격이 있는 발행 및 서명이 되었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6.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1. Amend 후 Nego : 신용장을 선적서류에 맞추어 수정한 후 매입하는 방법 2. Cable Nego : 신용장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조회 후 매입하는 방법 3. Collection Basis :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 4. L/G(Letter of Guarantee) Nego :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 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 징구 후 매입하는 방법

21 신용장 매입신청 시 구비 선적서류 : IV. 수출절차 중 STEP 6. 수출 계약, P.93

STEP 10 사후관리

수출입과 관련해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나 검사 및 검역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상, 육상, 청도 운송에 있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손상을 방지해 미리 가입해야 하는 보험 증명서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관련 서류는 법에 의해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상 서류보관 기간은 수입관련 서류 5년, 수출관련 서류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FTA 사후검증 대상기간이 최대 5년이므로 수출입관련 서류 전부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① 법정 서류보관 기간

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 기간)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표 122〉 관세법상 서류보관 기간

구분	해당 서류	보관 기간
수입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
수출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
기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

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발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원산지 증빙과 관련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관 후 검증을 진행하는 현 체제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세관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적용했던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표 123〉 FTA특례법상 서류보관 기간

당사자	해당 서류	보관 기간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거래관계, 가격,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 자료 • 운송관련 서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국제운송 관련 서류(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아래 서류 포함) • 지재권 거래관련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 받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각 FTA협정 당사자별로 수출입관련 서류의 보관 시점 및 기간은 상이합니다.

〈표 124〉 FTA협정별 보관 시점 및 기간

구분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5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 5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 관세청은 기록보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료보관 방법을 배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로 출력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러나 관련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지 또는 전자서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수출입물품 관리대장

-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물품 관리대장과 수출입①170화물 체크리스트, 이동추적 관리대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수출입물품 관리대장을 통해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대금의 지급 및 영수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거래업체, 구매경로 등 관련 정보
- 수입물품의 구매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거래내역 정보
-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관리 등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 영수 정보

〈표 125〉 수출물품 관리대장 예시

구분	PO 수취일	PO No.	C/I No.	B/L No.	품명	Shipping Mark	고객사	고객명	수취 주소	배송조건	수 량			규격 W*L*H(cm)	CMB	요구납기	단가/\$
											수량	순증량	총증량				
1																	
2																	
3																	
4																	

매출액	출고예정일	출고업체	출고일자	출고량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수출진행				대금영수			결제예정일	담당자	비고
							검본확인 (가면장)	Check B/L	체크리스트 작성/수취	이동추적 관리대장	영수(입금)액	입금일자	잔금			

업무단계	수출물품관리대장 기입항목	관련서류
① 수출 계약	P/O 수취일, P/O 번호, 품명, 고객사, 고객명, 수취 주소, 요구납기 등	P/O(Purchase Order)
② 선적서류 작성	C/I 번호, 배송조건, 수량, 순증량, 총증량, 규격, CMB, 단가, 매출액, Shipping Mark 등	Invoice(C/I,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Mark(확인)
③ 수출신고필증 발행	수출신고번호, 가면장 확인여부 등	수출신고필증
④ 국내운송	출고예정일, 출고업체, 출고일자, 출고량, 이동추적관리대장 작성여부 등	수출입화물 체크리스트, 이동추적 관리대장
⑤ 선적 및 B/L 발행	B/L 번호, Check B/L 확인여부, 선적일자 등	B/L(Bill of Lading)
⑥ 대금 결제	수출물품 영수(입금)액, 입금일자, 잔금, 결제예정일 등	외화입금지급내역

- 이동추적관리대장을 통해 제조사, 공장 등에서 수출물품 운송차량(컨테이너 포함) 상차 후 출항지까지의 이동경로, 시간내 이동여부, 운송기사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제조사에서 직접 물품이 출고되는 경우, 제조사 출고담당자에게 수출입화물 체크리스트 작성을 요청하여 관리대장 작성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림 76〉 수출물품 이동추적 관리대장 예시

구분	PO번호 또는 INVOICE 번호	이동내용	운송사	기사명	기사 연락처	운송상황 확인							특이사항		
						출발일자	출발시각	출발지	도착예정시각	중간정거시각	도착일자	실제도착시각		도착지	확인자
1															
2															
3															
4															
5															

PART
I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제1절 외(국)환 관리

1. 환율
2. 환위험(환리스크) 관리
3. 외환시장
4. 통화옵션

제2절 관세 환급

1. 관세, 가산금, 가산세
2. 세액의 보정, 수입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3. 관세환급제도
4. 환급가산금
5. 관세법 개요
6. 관세의 과세요건

제3절 AEO 인증

1. 공인신청 대상
2. 공인기준
3. 공인절차 및 등급
4. AEO인증 지원 사업

제4절 비자발급

1. 사증면제협정
2. 상용비자

제5절 수출입 관련 주요 사이트

1. 한국무역협회(KITA)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 관세청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1. 농축산 관련 기관
2. 기타 기관

제7절 공동브랜드 K-FARM 활용방법

1. 공동브랜드 가입 절차
2. 참여기업 혜택

제8절 무역 용어

제 1 절 외(국)환 관리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가 증가하였으며,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거래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외국환관리가 중요합니다.

① 환율

- 환율(Foreign exchange rate)이란 자국화와 외화의 교환비율로서 외국환이라는 상품에 대한 자국화의 가격을 말합니다.
 - 필연적으로 한나라의 통화는 국내에서만 통용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에서 구매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국내에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외화와의 교환이 필요하게 되며, 이 외국화와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 합니다.
-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에 의하여 외국환은행간매매율(매매기준율)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대고객매매율을 결정합니다.
- 환율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따르며, 금리,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수출입, 인플레이션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표 126〉 환율 결정 요인

구분	내용
환율 상승	(원화의 가치하락 = 평가절하) 금리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경상수지 적자, 수입 증가, 물가 상승
환율 하락	(원화의 가치상승 = 평가절상) 금리 상승, 경제성장률 증가, 경상수지 흑자, 수출 증가, 물가 하락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환율표시방법은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여 유럽식 표시방법과 미국식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유럽식 표시방법은 미국 1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간접표시방법이고, 미국식 표시방법은 다른 나라 통화 1단위가 미국 달러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직접표시방법에 해당합니다.

② 환위험(환리스크) 관리

- 환위험이란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이며,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계약시보다 환율이 하락함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 외화가 원화보다 많거나 또는 반대로 원화가 외화보다 많은 상태여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외환포지션이라하고, 외국환은행은 환위험을 회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화와 원화간의 과부족자금을 조정하여 외환포지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표 127〉 환위험 종류

구분	내용
거래환위험	수출입거래나 자본거래 등에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결제시점의 환율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환산환위험	해외 자회사나 지사의 재무제표상 외국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본국의 본사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 불확실성위험
영업환위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미래제품의 판매량, 판매가격, 원가 등 영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 현금흐름 및 영업이익이 변동하게 될 위험(경제적 환위험)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표 128〉 환위험 관리기법

구분	관리기법	내용
대내적 기법	매칭 (Matching)	외화표시 현금유입과 유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금액면에서나 시간적으로 가급적 일치시키려는 전략
	네팅(상계, Netting)	기업간 거래에서 일정 기간마다 지불과 수취금액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신고 등을 해야 할 수 있음
	리딩과 래깅 (Leading&Legging)	국제기업의 경우 본사와 자회사 간에,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해 자금의 이동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환위험을 감소하는 방법
	가격정책 (Pricing policy)	기업의 판매관리와 구매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판매수익의 극대화 또는 구매 비용의 극소화를 위한 가격 결정 및 가격 선택 정책
	포트폴리오 (Portfolio) 전략	주식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
대외적 기법	헷징 (Hedging)	거래당사자간에 장래의 외환결제에 적용할 환율을 거래 계약일에 약정함으로써 환율변동에서 초래되는 환위험을 피하는 기법
	통화스왑 (Currency Swap)	거래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 통화를 일정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거래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환율변동이 불확실한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재정거래를 통하여 추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매선택권부 외환거래
	통화선물 (Currency Futures)	선물환거래와 같이 일정 통화를 미래의 일정 시점에 약정가격으로 매입, 매도하기로 한 금융선물거래의 일종
	옵션 프리미엄 (Option premium)	옵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옵션 매매 시 수수되는 옵션의 가격

3) 외환시장

- 외환시장은 크게 현물환시장과 선물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현물환시장은 두 통화간에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대고객 거래 시장에서는 계약 즉시 외화의 인도로 결제가 종료되며, 은행간 거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외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 환물환시장과 달리 2 영업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물환시장이라 하는데, 선물환시장은 은행달러를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선물환 또는 선도거래와 한국거래소 등 정해진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거래하는 통화선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선물환시장이라고 하면 선물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129〉 선물환시장

구분	내용
선물환 (forw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에서 거래상대방 간에 미리 약정된 환율(선물환율)로 미래의 일정시점(계약의 만기)에 일정한 금액의 두 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선물환율 : 금리를 기준으로 해당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지 또는 하락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로 외국통화의 국내 유입·유출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환율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 자유로운 약정이 가능하고 모든 통화의 거래가 가능 • 은행간 매도시장으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액의 일반고객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음
통화선물 (fu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 이후 특정 시점의 계약가격으로 일정액의 통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 개념적으로는 선물환과 동일하지만, 거래장소, 계약조건, 결제방법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음 • 조직화(표준화, 규격화)되어 있는 시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 및 거래단위, 만기일까지 정형화 • 대규모 당사자에 의해 거래 - 선물환에 비해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소액거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존재하지 않음 - 이행보증을 위한 증거금 요구 - 손익이 일단위로 정산되고 만기에 실제 현물정산이 아닌 반대거래로 상쇄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4) 통화옵션

- 옵션(option)이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이고, 이러한 매매거래를 옵션거래라고 합니다.
- 옵션 중 특정외화를 미래의 일정시점 거래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혹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통화옵션이라 하고, 매수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매도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합니다.
- 옵션의 매수자는 선물과 달리 행사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을 미리 지불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누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매도자는 매수자의 권리행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 대신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취득합니다.

제2절 관세 환급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관세환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① 관세, 가산금, 가산세

-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표 130〉 관세의 납부방식 및 납부기한

구분	내용
신고납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관세액 납부 •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세액심사'가 원칙이나,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세액심사' 진행
부과고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액 납부
사전납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액 납부할 수 있음
월별납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 • 월별납부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
분할납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식 •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물품별로 별도 규정

- 가산금은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형평을 위한 제도로써 연체세 성격을 지닙니다.
 -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격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성실 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재수출불이행가산세, 휴대품·이사물품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즉시반출신고물품 수입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② 세액의 보정, 수입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한 세액 및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해 정정신고, 보정신청,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세액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표 131〉 세액의 정정절차 요약

주체	구분	정정시기	적용사항	가산세 부과
납세의무자	정정신고	세액납부 전	신고세액의 과부족	-
	보정신청	세액납부 후 6월 이내	신고납부세액의 부족	-
	수정신고	보정기간 경과 후	납부세액 부족	부과
	경정청구	보정기간 경과 후	납부세액 과다	-
세관장	경정	세액납부 전·후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 과부족	부과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김현수

③ 관세환급제도

가. 관세법상의 환급

- 관세법상의 환급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법상의 환급은 과오납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해외직구 반품 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으로 나뉩니다.
-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나.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의미합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수입물품(원재료)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환급대상이 되는 조세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고,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다. 간이정액환급

-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때 처음 수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승인 받은 것을 간주하며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개별환급

- 개별환급이란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 원재료별로 확인,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수출품목에 대하여는 개별환급 방법에 의하여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 개별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를 수출 신고필증, 물품반입확인서, 납품완료증명서, 공사완료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한 소요량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할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환급금을 산출합니다.

④ 환급가산금

가. 개요

- 세관장은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납부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은 과오납금의 환급 시에만 적용됩니다.

나. 분할납부된 경우

-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합니다.

다. 환급가산금의 적용배제

-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신고의 차액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5 관세법 개요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세법은 수출입 되는 물품에 예외없이 강제적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당사자간의 사적관계를 규율하는 무역실무 관련 규칙들과 달리 국가와 수출입 화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한 배제나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 132〉 관세법의 특징

구분	내용
강제성	• 관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강제성이 있음
국제성	• 관세는 WTO협정·FTA협정·그 밖의 국제협정(협약)에 따라 제약을 받는 국제성을 지님
물품세	•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되는 물품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무체물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함께 체화된 경우에만 과세함
수시세	• 관세는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신고 단위로 부과되는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간접세	• 관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물품을 수입한 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가격에 관세를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실제 관세를 납부한 자(수입자)와 납세자(최종소비자)가 상이함(조세의 전가)

출처 : 국제무역사 1급(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관세법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출신고·수입신고, 그리고 반송신고로 한정하며, 대외 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상의 수출입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합니다.

〈표 133〉 관세법 적용의 원칙

구분	내용
법해석의 기준	•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음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함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관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나,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정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표 134〉 관세법상 관세납부기한

구분		납부기한
원칙	납세신고를 한 경우(신고납부)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세고지를 한 경우(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예외	월별납부	•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때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보정신청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수정신고	•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천재 지변 등	• 세관장 결정사항(1년 이내 연장 가능)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화재, 사업의 중대한 위기,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관세법상 수입 및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서류는 5년, 수출과 관련된 서류는 3년, 그 밖의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표 135〉 관세법상 용어

보관 기간	5년	3년	2년
신고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표 136〉 관세법상 용어

용어	정의
외국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에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 •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수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몰수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관세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정된 물품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내항선/ 내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선용품 (船用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기용품 (機用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차량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복합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6 관세의 과세요건

- 관세의 납부의무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상태일 때 성립하고, 관세법에 의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세의 과세요건은 관세의 납부대상물품(과세물건),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과세표준), 관세율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가. 과세물건

-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표 137〉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

구분	확정시기
선(기)용품·차량용품·외국무역선(기)·국경출입차량 판매물품의 하역허가를 위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허가를 받을 때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공장 외 작업·보세건설장 외 작업의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위에 규정된 것은 제외)	수입된 때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나. 과세표준

-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증가세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영화용 필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순서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 138〉 과세가격 결정방법

구분	결정기준
제1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 • $\text{거래가격} = \text{실제지급가격} + \text{가산요소} - \text{공제요소}$ • 가산요소 : 구매자 부담 수수료 및 중개료, 구매자 부담 용기비용 및 포장비용, 구매자 부담 생산지원비, 구매자 부담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공제요소 : 수입 후 발생하는 용역비용, 수입국 내국운송비·보험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연불이자(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
제2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포함)
제3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제4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 • $\text{과세가격} = \text{국내판매가격} - \text{국내발생 공제비용}$ • 국내판매가격 :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 국내발생 공제비용 :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 통상의 운임·보험료,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5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 • $\text{과세가격} = \text{원자재비용, 조립·가공에 드는 비용 및 가격} + \text{이윤 및 일반경비} + \text{운임·보험료}$
제6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 - 원칙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제6방법에 적용할 수 없는 가격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이 아닌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다. 관세율

- 세율이란 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과세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HS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수입되는 국가 또는 수입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139〉 관세율의 종류

구분	내용
기본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세율(국회 제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명시
잠정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가 제정해 기본세율과 함께 관세율표에 표시 •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목적
탄력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경제여건 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부과하는 경우 - 보복관세 :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부당·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 부과 - 편익관세 :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 부여 - 할당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관세에서 빼거나 더하여 관세 부과 - 조정관세 : 무역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관세 - 국제협력관세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 양허 - 일반특혜관세 :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 중 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 부과
탄력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하는 경우 - 덤핑방지관세 :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실질적 피해 등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며,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실행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 상계관세 : 국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피해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관세 -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등이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구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긴급관세 추가 부과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조사를 통하여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 - 계절관세 :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표 140〉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적용세율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위해 긴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래 적용되는 세율에 추가로 적용됨 - ex) 특정수입물품의 기본관세가 8%, 긴급관세가 20%일 경우, 총 28%의 세율 적용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정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 수입화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함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율
4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특혜관세 -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항상 후순위보다 낮은 세율 책정
5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관세 - 기본관세를 임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의 높낮음을 불문하고 기본관세보다 우선적용
6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 - 모든 물품은 HS코드를 기준으로 기본관세가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적용 관세가 없는 경우 적용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 신속통관과 행정상 편의 등을 위하여 간이세율, 합의에 의한 세율, 용도세율과 같은 특수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간이세율 : 실제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의 내국소비세도 부과되어 세액산출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신속한 세액계산과 통관을 위하여 관세·내국소비세 등을 기초로 하여 단일한 세율을 정해두고 이를 토대로 과세하는 것을 간이세율이라고 합니다.
- 합의에 의한 세율 : 신속통관과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세율이 다른 물품들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으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행정쟁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용도세율 : 물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다르게 정해 둔 물품으로서 그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실제 수입화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관세법에서는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상업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고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141〉 특별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선(기)용품·차량용품·외국무역선(기)·국경출입차량 판매물품의 하역허가를 위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승인가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외 작업·보세건설장 외 작업의 허가기간이 경과하거나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소비자 또는 사용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즉시 반출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그 밖의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납세의무자
그 밖의 물품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

출처 : 국제무역사 1급 (2021),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제3절 AEO 인증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란 세계관세기구(WO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 수출입공급망의 개별 당사자, 즉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대국 중복심사 방지를 통한 수출입 비용 절감, 수출 경쟁력 확보로 거래선 유지,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인신청 대상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AEO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9개 분야로 축산ICT기자재 업체는 '수출업체' 분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일 한 기업의 업무가 여러 분야에 나뉘어 있다면, 이 기업은 각 해당분야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AEO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공인기준

- 국내 AEO 제도에서 규정하는 공인기준은 크게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법규준수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법규준수도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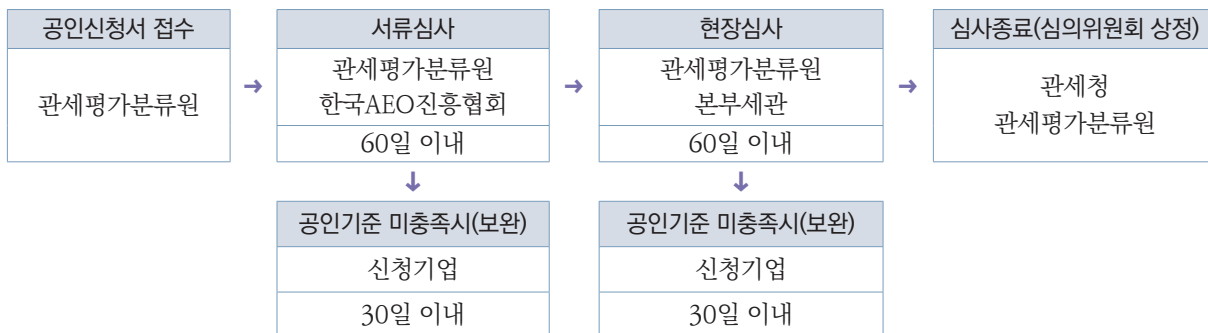
〈표 142〉 공인기준 충족요건

기준	평가내용	충족요건
법규준수도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80점 이상
내부통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계를 갖출 것	80점 이상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기준 충족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갖출 것	70점 이상

③ 공인절차 및 등급

- AEO 제도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과정을 통해 공인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공인을 획득한 기업은 공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정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 수행 등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림 78〉 공인 및 종합 심사 단계



〈표 143〉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배점

평가기준	점수	내용
문서화 + 실행	N/A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거나, 다른 기준에서 이미 평가된 기준
	0점	문서화되지 않았거나(문서화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포함), 실행되지 않음
	1점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실행이 문서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2점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않으나, 실행이 문서화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문서화가 체계적이거나, 실행이 문서화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점	문서화가 체계적이고, 실행이 문서화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행	N/A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거나, 다른 기준에서 이미 평가된 기준
	0점	실행되는 것이 없음
	1점	실행이 체계적이지 않음
	3점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 등급은 심사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과태료 경감의 경우 AAA등급 업체는 50%, AA등급 업체는 30% A등급 업체는 2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표 144〉 등급결정기준

구분	등급결정기준	우대사항
A등급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1. 수입물품의 과제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3. 거래업체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AA등급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AAA등급	①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인 업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보유 -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	

가. 공인기준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 신청업체, 신청업체의 대표와 관리책임자가 법규준수도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규준수도 기준 :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일 것, 신청업체 및 신청인이 관세법 제175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관세법 제268조의2로 처벌받은 경우 2년 경과할 것, 수출입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이 없을 것
- 재무건전성 기준 : 최근 3년간 매년 일정한 수준의 수출입관련 이행 실적이 있을 것,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적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

나. 공인기준별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결과 공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 한국AEO진흥협회에서는 AEO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²²을 부문(업종)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별 세부사항(자체평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AEO공인인증 획득을 위한 분기별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체크 후 진행
- ② 사이트 메뉴 중 ‘정보조회 >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 클릭
- ③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분기’ 입력하여 검색

〈그림 79〉 관세청 UNI-PASS ‘법규준수도 조회’ 화면

법규준수도 ★

Home > 정보조회 >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년도/분기 2022 / 2

초기화

조회

전체 0 건 페이지당 10 선택

No	구분	업종	상세업종	상호	사업자번호	고유부호
조회조건을 선택하십시오.						

22 한국AEO진흥협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URL (https://aeo.or.kr/sub/sub02_03_02.php)

다.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 작성 및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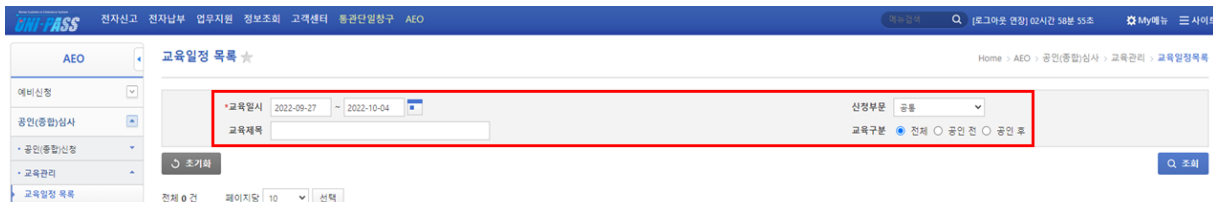
-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AEO공인 인증의 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의 필수교육을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 145〉 관리책임자 교육

구분	공인 전	공인 후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이수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총괄책임자	-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총괄책임자 간담회'에 참석 시 교육대체 가능)
교육내용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의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나.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마.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교육에 대한 공지 확인	(사)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 : 사업마당 > 교육 > 교육일정 관세청 Uni-Pass 시스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AEO > 공인(종합)심사 > 교육일정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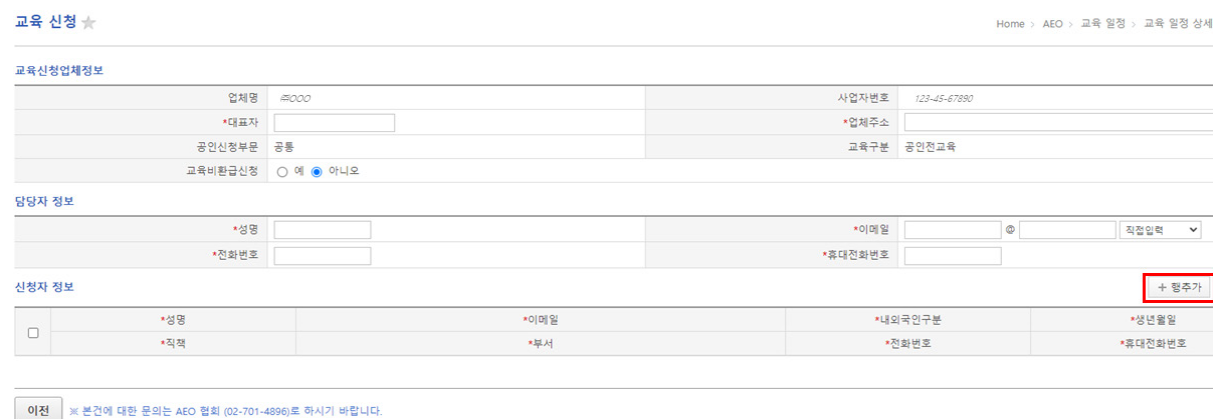
- ①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체크 후 진행
- ② 사이트 메뉴 중 'AEO > 공인(종합)심사 > 교육일정목록' 클릭
- ③ 수료 대상인 교육의 '교육일시, 신청구분, 교육구분'을 선택하거나 '교육제목'을 입력

〈그림 80〉 관세청 Uni-Pass '교육일정 조회' 화면



- ④ 검색된 리스트 중 신청 대상 교육의 '제목'을 클릭
- ⑤ 교육일정 상세내역을 확인 후 해당 교육의 '신청' 버튼 클릭
- ⑥ 교육신청화면에서 '교육신청업체, 담당자, 교육대상자'의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 클릭

〈그림 81〉 관세청 Uni-Pass '교육 신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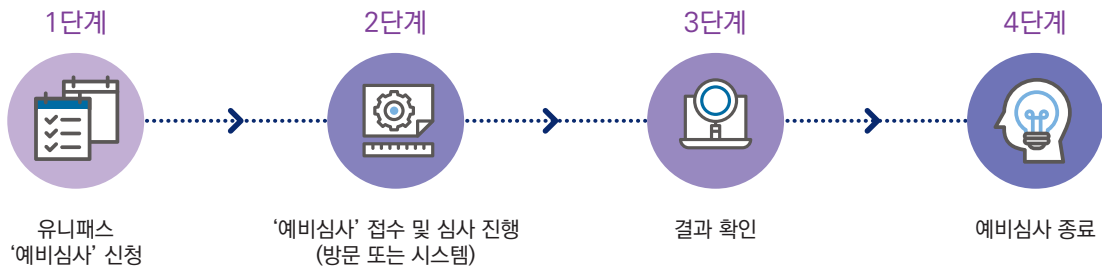


이전 > ※ 본건에 대한 문의는 AEO 협회 (02-701-4896)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 심사

- AEO 예비심사란 AEO공인(종합)신청 전 공인기준의 충족여부, 심사관련 이슈사항, AEO공인과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하여 AEO전문 심사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하고, 해당 심사는 (사)한국AEO진흥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림 82〉 AEO 예비심사 진행절차



마. 공인신청서 제출

- 관세청 Uni-Pass 시스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AEO > 공인(종합)심사 > 공인(종합)신청 > 공인(종합)신청

〈그림 83〉 공인(종합)신청 화면

- 주요 공인신청 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적사항명세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공인기준),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 및 증빙서류 등

4) AEO인증 지원 사업

- 자체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AEO공인 획득 지원 사업(수출바우처), 예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이란 공기업, 지역기업, 항만공사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AEO공인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시설투자 비용, AEO공인 사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출바우처 지원사업별 신청 시기는 반기별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²³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46〉 수출바우처 사업

소관부처	사업명	바우처 발급액(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산업통상 지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 중 택 1 • [성장] 4,000만원/5,000만원/6,000만원/ 7,000만원 중 택 1 • [확장]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 중 택 1 	[중소] 70%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그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중 택 1 • [성장] 4,000만원/5,000만원/ 6,000만원/7,000만원 중 택 1 • [확장]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 중 택 1 	[중소] 70%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소비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2,000만원/ 3,000만원 중 택 1 • [성장]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중 택 1 • [확장] 4,000만원/ 5,500만원 중 택 1 	[중소] 70% [중견] 50%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 2,000만원/ 3,000만원 중 택 1 • [성장]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중 택 1 • [확장] 4,000만원/ 5,500만원 중 택 1 	[중소] 70% [중견] 50%
	중견 글로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중견] 1억원 • [Jumping 중견글로벌] 1억원 • [중견글로벌] (중소) 1.3억원 / (중견) 2억원 • [Post 중견글로벌] 2억원 	30~70% * 유형별로 상이
중소벤처 기업부	내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백만원(튼튼한 내수기업의 경우 60백만원) 	50~70%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신청기업 중 평가 우수 업체 선발 예정
	초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백만원 	50~70%
	성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백만원 	50~70%
	유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백만원 	50~70%
	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백만원 	50~70%
	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백만원 	50~70%

출처 : 수출지원기반활용(KOTRA)

23 수출바우처 지원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URL (<https://exportvoucher.com>)

제 4 절 비자 발급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비자(VISA)’라고 하며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상대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수수료를 지불하여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① 사증면제협정

-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하여 특정 국가 및 지역들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 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 147〉 대한민국 여권의 무사증입국 가능여부 및 기간(일부) (2022.10월 기준)

지역	국가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일반여권)	무사증 입국 근거	비고
아시아 · 태평양	라오스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말레이시아	90일	협정	
	미얀마	X	협정/일방적 면제 정지 중	
	베트남	15일	협정/일방적 면제	
	인도네시아	X	협정/일방적 면제	무사증입국 정지 중
	일본	90일	협정/상호주의	22.10.11.부터 무사증입국(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포함) 재개
	중국	X (하이난 성 : 예외적 무사증입국 허용)	협정	하이난성 무사증 정책(18.5.1.시행)에 따라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입국 가능 · 체류기간: 최장30일 · 체류지역: 하이난성內 ·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 최소 48시간 전 신청 필요
	태국	90일	협정	
미주	필리핀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미국	90일	상호주의	
유럽	브라질	90일	협정	
	네덜란드	90일	협정	
	노르웨이	90일	협정	
	덴마크	180일 중 90일	협정	
	독일	90일	협정	
	벨기에	90일	협정	
	스웨덴	90일	협정	
	스위스	90일	협정	
아프리카 · 중동	프랑스	90일	협정	
	아랍에미리트	90일	협정	
	카타르	90일	협정	

② 상용비자

가. 베트남 상용비자

- 베트남 상용비자(DN)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가진 기업 및 조직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파견되는 경우 거래처 방문이나 시장조사와 같은 업무 목적으로 방문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하더라도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상용초청장은 현지 초청회사가 보증해주면 정부에서 발행해줍니다. 이때 초청장은 도착 비자용 초청장과 대사관 비자용 초청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 단, 비자의 유효기간은 초청장에 명시된 일정표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베트남 상용비자의 종류는 입출국 횟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구분됩니다. 단수비자의 경우 1회 입출국이 가능하며 복수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 중 2회 이상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체류기간에 따라 30일 비자와 90일 비자로 구분됩니다.

1) 대사관 비자

- 주한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과 수령을 위하여 대사관에 2회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여행사에서는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여행사 방문을 통하여 여행사에 전달하여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표 148〉 베트남 대사관 비자 신청

구분	세부내용
발급비용	발급비용 미정으로 신청시 통보 (비자 기간, 발급일에 따라 상이) - 현장에서 한국 원화(현금) 비자 수령 시 결제 필요_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 불가
신청서류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원본 - 현지상용초청장 - 사진 1장(4*6) - 항공권 - 영문 신청서 (현장작성) - 신분증사본 * 회사직원 대행 시 필요서류: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회사직인 필요
신청장소	주한베트남대사관_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110-230)
신청방법	1. 주한베트남대사관 현장 신청 (접수시간 10시-12시) 2. 약 1주일후 현장 수령 (수령시간 14시-16시 30분)

2) 도착비자

- 도착비자는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도착비자를 받을 초청장(허가서)을 발급 받고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여 그 초청장으로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표 149〉 베트남 도착 비자 신청

구분	세부내용
발급비용	- 단수비자: 25 USD - 복수비자: 50 USD (현지 공항에서 지불)
신청서류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사본 - 현지상용초청장 - 사진 2장(4*6)
신청방법	1. 상용비자용 초청장(허가서) 신청 및 발급 2. 출국 전 대행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현지공항의 LANDING VISA 창구에서 입국수속 전 비자 발급

3) E-VISA(전자비자)

- E-VISA(전자비자)는 단수 30일 비자이며 발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7일정도이며 출발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 150〉 베트남 E-VISA 신청

구분	세부내용
신청장소	베트남 전자비자 발급 사이트_ https://evisa.xuatnhapcanh.gov.vn
발급비용	25 USD (온라인 결제)
신청서류	- (8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사본 - 사진 1장(4*6) - 입국 후 거주할 곳 상세 주소 또는 호텔 바우처 - 입국예정일, 입국 목적, 입국 공항
신청방법	1. 전자비자 발급 사이트 왼쪽에 E-Visa 클릭 2. 여권 사진과 정보 입력 및 확인 3. 등록내용 확인 및 동의 후 결제 진행 (소요기간 확인) 4. 발급 예정일에 해당 사이트에서 E-visa search 클릭 5. 등록코드,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비자 출력 (입국심사 시 비자와 항공 e-ticket을 반드시 출력물로 제시 필요)

나. 중국 상용비자

- 중국 상용비자(M)은 중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개인적인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중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자 센터를 방문해야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중국 회사 측의 거래처를 통해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 시 초청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회사의 직인이 열거나 내용과 겹쳐 찍혀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방문정보(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초청기관 정보(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초청장은 중국 입국 시에도 출력물로 소지하여 입국심사 시 제시해야 합니다.
- 중국 상용비자의 종류는 입출국 횟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더블비자, 복수비자로 구분됩니다. 단수비자의 경우 1회 입출국이 가능하며 더블비자의 경우 2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복수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 중 2회 이상 입출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30일, 90일, 6개월, 1년 비자로 구분되며, 최대 체류기간에 따라 다시 30일 비자와 90일 비자로 구분됩니다.
- 비자 신청 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여행사에서는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여행사 방문을 통하여 여행사에 전달하여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비자신청서비스센터 내 지문을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직접방문이 요구됩니다. 지문기록은 5년간 보관되며 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방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한 후 발급받은 접수증에 명시된 여권수령 예상일을 확인합니다. 해당 날짜에 접수증을 지참하고 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비용을 지불하면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서비스센터가 여권을 발송하기 전에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사전에 봉투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표 151〉 중국 비자 신청

구분	세부내용			
발급비용	-비자 종류와 발급기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함 -비자발급 비용과 별개로 (*)서비스요금을 지불해야함			
	비자종류	보통(영업일 4일)	급행(영업일 3일)	특급(영업일 2일)
	단수	35,000	59,000	70,000
	더블	53,000	77,000	88,000
	6개월 복수	70,000	94,000	105,000
	1년 및 1년이상 복수	100,000	124,000	135,000
	단체	15,000	27,000	32,500
	(*)서비스요금	20,000	30,000	40,000
신청서류 (23.01.10 기준)	-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원본 - 비자신청서 - 사진 1장(3.5*4.5) - 중국정부발행 상용초청장(PU) - (복수비자 발급 시)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복사본 (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			
신청장소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 중 가까운 곳에서 신청 -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 남산스퀘어점(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 부산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 5층) - 광주점(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 제주점(제주시 노형동 720-1 하나빌딩 502)			
신청방법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신청서와 확인페이지를 출력하여 서명 3.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 출력 4.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 방문			

제5절 수출입 관련 주요 사이트

본 매뉴얼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관세청 등의 사이트에서 방대한 수출입 관련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들의 권익을 지키고 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세워진 무역업계 대표 민간경제단체로,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의 무역현장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지원, 무역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 153〉 한국무역협회 관련 사이트

구분	주요 서비스
글로벌 무역 포털 KITA.net	• 무역뉴스, 연구보고서, 무역실무매뉴얼 등 각종 무역정보 • 해외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맞춤형분석통계 등 무역통계 등
무역지원서비스 membership.kita.net (회원사 전용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 안내 • 수출입 운송비 할인 및 방문 컨설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 무역상담 • 제증명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²⁴ , 무역업고유번호증 ²⁵
수출품목 종합정보 검색 tradenavi.or.kr	• 최신 관세율 ²⁶ , 무역규제 ²⁷ 정보조회, 키워드, HS코드 등 품목 통합검색 • 시장동향, FTA동향, 시장보고서 등 제공
글로벌 무역통계 stat.kita.net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품목·국가별) • 세계무역통계, 주요국 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등

〈표 154〉 한국무역협회 사업유형별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세미나/정보제공	FTA KOREA 원산지 시스템 활용 교육, 2022 한중 FTA/RCEP 원산지관리 온라인 교육, 무역산업경쟁력 포럼, EU 의로기기 시장진출 웨비나, IPEF 전략 심포지엄 등
해외마케팅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 수출상담회, 전문무역상사 맞춤형 마케팅 지원, KITA 수출상담회, MWC Las Vegas 참가, KITA X KAIST 기술애로 상담회 등
교육/취업	기초 영문 Biz 메일 및 무역서식 작성, 무역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신입사원 및 취업준비생 대상 해외영업&무역실무 과정, 광주무역아카데미 '사례로 보는 무역계약 및 바이어 관리 실전' 등
상담/컨설팅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필리핀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대정부 정책건의 설문 등
포상/자금지원	국제비즈니스 통번역 지원사업,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기업,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회의/행사	대한항공 공동 "회원사(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포스코 공동 "회원사(중소 수출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벌크화물),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
시설/서비스	SERICEO 무료 수강지원,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특가 등
스타트업지원	Fortune 500 Connect(해외 유명기업-스타트업간 밋업), 한국-멕시코 Start Up 네트워킹 데이, 아마존 런치패드 성공기업 노하우 공유 Webinar (솔티드, 웰스케어) 등

24 수출입실적증명서 신청절차 : I. 수출의 범위 중 제3절. 수출입실적증명 P.14-15

25 무역업고유번호 : IV.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07-108

26 HS코드 기준 관세율 확인 : IV. 수출 실무 중 STEP 7.선적전확인 P.118-120

27 인증제도 조회절차 : II. 수출 기업을 위한 준비 중 STEP 3. 제품 현지화 P.41-42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표 1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사이트



구분	주요 서비스
KOTRA 무역투자24 kotr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곳에서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 KOTRA지원사업, 문의·상담, 해외정보, 사업소개
해외경제정보드림 dream.kotr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정보를 단계별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범정부 플랫폼 • 해외수출 : 시장조사, 수출기반준비²⁸, 시장 개척, 계약및신고, 사후 관리
바이코리아 buykore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수출업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B2B 수출지원 플랫폼 • 분야 : 전기 장비 및 부품, 에너지 및 환경,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exportvouch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 단계별(신청, 구매, 정산, 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
트라이빅 kotra.or.kr/bigd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반 무역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시장과 잠재파트너를 즉시 추천하는 플랫폼 • 무역투자통계,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기업별 맞춤정보, 해외바이어 정보
글로벌전시포털 gep.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개최되는 산업별 글로벌 전시회 정보²⁹를 제공하고, KOTRA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외교활용포털 president. globalwindow.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해외전문인력유치 contactkorea.kotr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과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발굴,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방산물자교역지원 kodits.kotr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트·너트에서 전자, 항공기와 같은 체계무기까지 방산·보안분야별 유력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인베스트코리아 investkorea.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환경, 유망 산업, 투자절차, 입지 정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ombudsman.kotra. 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충을 접수·처리하고 규제 관련 법령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28 인증제도 조회절차 : II. 수출 기업을 위한 준비 중 STEP 3. 제품 현지화 P.41-42

29 글로벌 전시회 정보 조사절차 : II. 수출 기업을 위한 준비 중 STEP 5. 바이어 발굴, P.51-55

〈표 1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유형별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수출지원	수출상담 및 포럼	국내 수출상담회,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서비스 수출대전(KSM),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 K-Global@ 등
	무역사절단	무역사절단 외부협력사업
	전시회	국내전시회 주관, 해외전시회 참가, 한국우수상품전, 세계엑스포 개최 등
	기간제 맞춤형 지원	지사화사업, 해외물류네트워크, I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산업별 선도기업 바우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디지털 해외마케팅	화상상담, 해외유통망 협업사업, 글로벌 유통망 진입확대사업, 디지털 현장실사 등
	글로벌역량강화	글로벌역량진단(GCL) 테스트,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스타트업 해외진출지원,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	수출 컨설팅 온/오프라인 상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해외시장정보조사	온/오프라인 설명회, 수출24 글로벌대행서비스, 무역자료실 운영 등
	기타	교포무역인(OKTA) 협업
해외진출지원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해외 프로젝트 프리미엄 서비스, 해외공공조달 지원거점,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지원 등
	방산, G2G 진출	방산 프로젝트관리, 바이어 방한지원, 정부간(G2G) 교역지원 등
	해외투자진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글로벌 M&A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무역관 인프라	열린 해외 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 해외 GP센터 서비스, 해외IT 지원센터
경제협력 및 일자리 지원	경제외교	경제외교 활용사업
	통상협력(FTA 등)	FTA해외 활용지원센터
	개발협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EIPP, ODA) 등,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글로벌 ESG+ 사업
	일자리지원	글로벌 일자리 대전, 상시구인사업,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해외전문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투자유치	투자유치 지원	산업별 투자유치 사업운영, 투자유치 상담회, 투자유치 사절단, IKMP(Invest KOREA Marketplace) 사업, 외국인투자주관(IKW), 투자유치 사무실 지원(IK), 방한 투자가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외투기업 만남의날 운영, 대학순회 채용설명회, 외투기업 채용전용관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홍보	투자환경 홍보
	외투기업 상담 및 고충처리	외국인 투자 컨설팅 및 행정지원, 현금지원사업,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처리

③ 관세청

-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마약/총기류/유해식품/유해화학물질/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표 157〉 관세청 관련 사이트

구분	주요 서비스
관세청 custom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통관, FTA, 비가공증명, 기업부담 완화제도, 납세협력 프로그램, 성실신고 이행확인, 납세자 권리보호 등 관세행정 안내
해외통관지원센터 customs.go.kr /foreign/main.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교역활동이 활발한 미국, EU,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홍콩),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국에 관세관 파견 • 해외 관세동향, 국가별 통관정보, 주요 국가별 현지 동향 정보 등 제공
고객지원센터 customs.go.kr /call/main.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세관의 상담창구를 통합한 토탈 서비스 • 인터넷 상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FAQ, 인터넷 상담 사례집 등 제공
FTA포털(YesFTA) customs.go.kr /ftaportalkor/main.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일반현황, 활용정보, 활용제도, 원산지검증 안내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FTA 전문교육, 공익관세사, 원산지관리전담자교 교육 등 FTA 기업지원사업 수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Uni-Pass unipass.custom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세 서비스를 통합하여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 • 통관고유번호³⁰, 해외거래처부호³¹, 수출입통관, 관세납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³², 관세도움정보 서비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신청³³ 등
수출입무역통계 unipass.customs. go.kr/ets/index.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K에 의한 분류외에 물품의 성질별, 수출입화주의 소재지 지역별, 신고세관별, 항구별, 남북교역여부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계를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배포
관세법령정보포털 unipass.customs. go.kr/clip/index.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무역, 외국환, 내국세 등 수출입관련 법령정보와 관세정보 • 품목별 국가별 HS정보와 품목분류 국내·외 사례, 관세평가 및 가격 결정방법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FTA원산지관리를 위한 관세청 무료 프로그램(FTA-PASS)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30만 건의 원산지증빙 서류 발급기능 • 기업의 규모, 구매 및 판매활동 등의 환경에 따라 활용방법 선택 : 체험형, 간편형, 기본형
관세청 빅데이터포털 bigdata.custom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트렌드 : 국가별 수출입비중 및 HS 10단위 부호별 거래비중 분석 • 맞춤형 지원사업 : 수출내역을 기반으로 유사한 업체가 받은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과의 유사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지원사업 추천, '기업마당'³⁴에서 제공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유사품목분류사례 : 질의어와 유사도가 높은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추천

30 통관고유번호 : IV.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06

31 해외거래처부호 : IV.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09

32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IV. 수출 실무 중 STEP 7. 선적전확인, P.123-128

33 AEO인증제도 : 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중 제3절. AEO 인증, P.180-184

34 수출입지원사업 운영기관 : V.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중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P.195-197

제6절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 추진기관

본 매뉴얼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수출입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농축산 관련 기관

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연락처 : 061-931-1114
- 사이트 : www.at.or.kr

〈표 15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온라인 서비스 및 지원사업

웹사이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개방 • 고객지원(자금지원, 농안기금, FTA이행지원기금, 국제박람회, 해외시장동향, 비축농산물 안전성) • 수출사업, 유통사업, 기업지원 등 공고, 계약관련자료 제공 	
지원사업	농식품글로벌 육성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대출액의 50% 이상 수추르 30% 이상 국산 원료 구매 - 고정금리 2.5~3%(변동금리 가능) • 시설 : 수출업체 시설 현대화 자금 - 고정금리 2-3%(변동금리 가능)
	샘플통관운송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10BOX(50kg) 한도에서 지원 : 샘플 운송/통관비 90%(바이어당 연 4회)
	해외인증제도 등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및 연장 비용의 70%
	현지화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세장벽 : 연간 1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농수산물 대상 자문비 전액 • 라벨링지원 : 연간 2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농수산물 대상 현지어 라벨 견본 제작비 • 상표권출원 : 연간 1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농수산물 대상 상표권출원지원

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 개발협회

- 연락처 : 031-545-6569/6571
- 사이트 : www.oads.or.kr(해외농업개발서비스)

〈표 159〉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및 지원사업

웹사이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지역 분야별 특화교육(온/오프라인) • 해외인턴 • 조사지원 신청(민간환경, 컨설팅, 상시컨설팅, 해외농업사업발굴 현지조사지원사업, 해외농업개척조사) • 워크샵/세미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해외시장정보, 동향정보, 가격정보, 통계정보 제공 • 해외농업투자정보 제공(환경조사 및 컨설팅 보고서, 농업투자정보, 해외진출사례 등) 	
지원사업	민간환경조사	진출 국가의 농업토지환경, 농업인프라 등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지원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 자문지원 - 법률, 사업성분석, 경영자문, 재배, 생산기반, 저장건조, 무역, 유통, 농기계 등

다. EPIS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농식품FTA활용정보 서비스)

- 연락처 : 044-861-8871
- 사이트 : www.maps.or.kr/newame/main.do

〈표 160〉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및 지원사업

웹사이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동향(주간동향, 월간이슈리포트, 카드뉴스) 제공 • 수출정보(수출절차, 인허가 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조직도) 및 시장분석보고서 제공 •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HS 코드별 관세율 • 수출네트워크(바이어 정보, 전시회 정보, 수출담당기관, 인허가대행업체, ODA 정보) 제공 • 수출기업육성지원 	
지원사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	해외 ·허가 취득, 글로벌마켓테스트 지원 -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스마트팜 기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등), 통관운송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해외출장비 등 최종 정산액의 70% 지원

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락처 : 063-919-1000
- 사이트 : www.koat.or.kr

〈표 16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온라인 서비스 및 지원사업

웹사이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개방 • 기술진흥정보(우수기술 설명회, 특허정보 검색, 농식품산업동향,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MOU현황, 스마트팜 표준화산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농기자재 해외동향 등) 제공 • 기술진흥사업(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종자사업, 디지털농업, 농업환경분석, 기술진흥사업성과, 표준 업무처리절차) 	
지원사업	농자재·기술 해외 시범포 운영 및 신규시장 개척 사업	해외 시범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우수 농업기술/제품/품종의 해외검증 및 신규 시장 개척
	해외전시회/ 해외진출 지원	농산업체의 해외 진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시험·증 사업 추진
	농식품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기술이전업체의 특허기술제품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해 제품기획~유통, 판로 개척에 이르는 유통마케팅 지원 - 총사업비 70%이내에서 지원

② 기타 기관

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 연락처 : 1357, 1811-3655(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 사이트 : www.kosmes.or.kr

〈표 162〉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서비스 및 지원사업

웹사이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 참여광장(국민 질문, 제안, 만족도 조사 등), KOSME 통합신고 센터 • 알림광장(KOSME 연구리서치, 연차보고서, KOSME뉴스레터, 입찰정보, 해외출장결과보고서 등) • 공공데이터 개발 및 공개, 사업실명제, 경영공시 등 정보공개 	
지원사업	정책자금용자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 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자금 공급 - 용자한도 60억원
	매출채권팩토링	기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된 외상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양도하여 빠른 시일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마케팅 연계지원, 거래성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 지원(고비즈코리아)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기업에게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 통번역, 홍보/광고/디자인 등 필요한 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공간, 마케팅·법률·회계 자문 등을 지원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등 사업 비용 일부 지원
	현지지사화사업	해외 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 대행 - 기초마케팅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중소기업진단사업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기업애로를 분석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애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을 연계지원
	해외산업협력지원	APEC 역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지원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연수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내일채움공제사업 등

나. 각 지역별 지자체

- 사업자 부담 비용 지원 : 해외 마케팅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 시장개척 및 무역사절단 파견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수출초보 기업 상담 및 멘토링
- 수출소요 비용 지원 : 국제특송비, 물류비, 인증획득 비용 지원 등

제 7 절

공동브랜드 K-FARM 활용방법

한국 축산ICT기자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브랜드 KFARM은 (사)한국축산환경 시설기계협회의 수출 분과에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축산분야의 우수제품인증, 국제 축산 박람회 주최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의 축산 홍보를 주도하고 있으며, 업체정보, 품목별 규격, 금액 등을 정리한 축산기자재 가격정보를 발간하고, 우수제품 인증 규정을 제정하는 등 축산기자재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공동브랜드 가입 절차

- 공동브랜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협회의 인증 절차에 따라 등록이 진행됩니다.
-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인증심사 위원회 → 인증서 발급 → 갱신심사 및 인증서 재발급 6단계로 진행됩니다.
- 참여기업의 제품 품질 및 성능 제고를 위해 갱신심사를 2년마다 실시합니다.

〈표 163〉 K-FARM 공동브랜드 인증절차

단계별 절차	내용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증신청자는 K-FARM브랜드 인증 심사를 받을 준비를 마치면 한국축산환경 시설기계협회에서 제공하는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면 평가	- 인증신청자가 적합한 신청자격 심의 - 제출된 평가서류에 대한 정량평가 진행(협회 및 전문위탁기관)
↓	
대면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5인 내외) - 신청기업 대면 평가(필요시 온라인) 진행
↓	
인증심사 위원회	- 협회, 평가위원 및 기존 인증기업 대표자 참여 - 최종 인증 여부 심의, 인증 단계 심의
↓	
K-FARM브랜드 인증서 발급	-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원가입 확인, 인증 등급에 따른 인증서 발급
↓	
갱신심사/인증서 재발급	- 인증기관은 주기적으로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갱신심사를 실시하며, 이는 신청 시 진행된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2년마다 실시)

② 참여기업 혜택

- 인증 단계는 준비(Level 1), 진입(Level 2), 성장(Level 3), 우수(Level 4)의 4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이 차등적용됩니다.
- 준비단계 : 현재 수출 경험이 없거나 준비가 필요한 단계
- 진입단계 : 수출 준비가 되어 시장에 진입 또는 실적이 미미한 단계
- 성장단계 : 수출실적이 발생하는 단계
- 우수단계 : 수출 자립화가 완성된 단계

〈표 164〉 K-FARM 공동브랜드 인증기업 지원 개요

지원항목	인증 단계				참여기업 역할	비고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장단계	우수단계			
수출 교육과정 운영	●	◐	◑	◒	교육 참여	견학 포함	
기술 자문단 운영	ICT 기술	●	◐	◑	◒	기술 개발	
	제품 개발	●	◐	◑	◒	제품 개발	
	수출입 행정	◐	●	◑	◒	행정 실무	
	해외 마케팅	○	●	◐	◑		
사용자 매뉴얼 제작	●	◐	◑	○	원고작성	번역 디자인 인쇄	
A/S 매뉴얼 번역	●	◐	◑	○	원고작성		
제품 카탈로그	●	◐	◑	○	원고작성		
홍보영상	●	●	◐	◑	원고작성	영상제작	
박람회 부스비 지원	○	●	◐	◑	박람회 참여		
카탈로그 배포	○	●	◐	◑			
홈페이지 등록	○	●	◐	◑			
유튜브 운영	○	●	◐	◑			
Agency 미팅	○	◐	●	◑	거래처 발굴		
시범 농장 섭외 지원	○	●	◐	○	시범농장 설치		
공동 A/S팀 운영	○	●	◐	○	A/S 관리		
시장동향 정보	●	●	●	●			
마케팅 전략 수립	●	◐	◑	○			
지사 설립 컨설팅	◐○	○	◐	●			

〈그림 84〉 K-FARM BI 최종안



가. 홈페이지

- 별도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없이 공동브랜드 KFARM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바이어와 컨택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게재된 업체 및 모델 정보를 바이어에서 확인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 동영상 및 카탈로그

- 제품에 대한 별도 홍보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제품 소개서 및 사양서를 작성하여 공유 시 공동브랜드의 E-카탈로그에 기업 소개 및 제품 소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브랜드 KFARM의 공동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단일 카탈로그 제작은 미진행
- 홍보동영상의 경우 KFARM의 소개와 플랫폼과 장비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기능 위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속감을 확대합니다.
- 공동브랜드의 E-카탈로그, 홍보동영상은 축산박람회 참여, 수출대상국 출장 등 해외 바이어 발굴 시 활용되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그림 85〉 공동브랜드 KFARM 국내외 마케팅



다. 수출 행정업무 지원 및 AEO 인증 혜택

- 별도의 수출입 업무 담당자가 없는 업체의 경우 공동브랜드에 소속된 AEO 공인업체로부터 포워드 수배, 선적서류 작성 등 수출 행정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EO 공인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물검사 비율 축소, 관세납부 편의 제공, 신고절차 간소화, 심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업체 유형 및 AEO공인 등급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공동브랜드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A등급'에 해당되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 현지 마케팅 및 A/S인프라 활용

- 공동브랜드 KFARM과 베트남 현지 마케팅 업무 협약이 체결된 업체를 통해 시장조사, 제품 판매 촉진, 현지 홍보 마케팅, A/S조직 등을 진행하여 개별 마케팅을 진행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8절 무역 용어

〈표 165〉 무역 용어_1

용어	의미
Berth Term (Liner Term)	•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하주간에 운송계약 체결 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품운송에 의한 정기 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대체로 사용
Breakage	• 파손
CBM (Cubic Meter)	• 포장된 수출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한 화물의 부피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을 모아 이를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여러 명의 수입화물을 꺼내어 이를 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컨테이너 작업장(LCL Cargo 집합소)'을 말함
Contamination	• 오염에 의한 손해
CY (Container Yard)	-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하는데,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있는 CY를 'On-Dock CY'라 부르며, 부두 밖에 따로 위치하는 CY를 'Off-Dock CY'라 부름 - CY에 보관 중인 '수출화물'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 셔틀운송되어 본선에 적재되며, 그 반대로 본선에서 양륙된 '수입화물'은 부두 내의 컨테이너터미널에 위치한 CY로 셔틀운송된 후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것이 일반적임
D/A (인수인도방식,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상의 거래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
Denting and/or Bending	• 움푹 들어가거나 휘어짐으로 발생한 손해
D/P (지급인도방식, Documents Against Payment)	•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
FCL (Full Container Load)	- 수출상 한 명의 화물만으로 1개의 컨테이너가 모두 채워지는 '만재화물'을 말함. - 일반적으로 운송회사는 수출상의 창고에 빈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서 화물을 적입한 후, 이를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 운송
FCO (Full Corporate Order)	• 바이어가 1년 또는 전체 계약기간동안 총 얼마의 물량을 주문하겠다는 구매계획서
FIO (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 -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 - 주로 비용 부담이 큰 벌크화물을 용선계약에 따라 부정기선에 의하여 운송할 때 채택(FAS 채택)
FI (Free In)	• 선적비용 선주무부담조건 - 선적시 선내 하역비용은 하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O (Free Out)	• 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비용을 하주가 부담하는 조건
Hook and Hole	• 갈고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구멍 발생
ICC (협회적화약관 : Institute Cargo Clauses)	• 손해담보의 범위 - 1963년에 1차 개정: 분손부담보(FPA), 분손담보(WA), 전위험담보(A/R) - 1981년에 전면 개편 : FPA와 유사한 ICC(C), WA와 유사한 ICC(B), A/R와 유사한 ICC(A) - 우리나라는 현재 구약관과 신약관 혼용하여 사용
JWOB (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투하 및 갑판유실

〈표 166〉 무역 용어_2

용어	의미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수출상 여러 명의 화물로 1개의 컨테이너가 채워지는 '혼재화물' - 화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해야 하므로, 포워더는 수탁받은 화물을 컨테이너작업장(CFS)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다른 화물들과 혼적(Consolidation)한 후 다시 CY로 운송함
Leakage/Shortage	• 누손 및 부족손
LOI (Letter Of Intent)	• 구매의향서
LOLO (Lift-on, Lift-off)	• 본선 또는 육지에 설치된 켄트릭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를 적하/양하 하면서 수직방향으로 쌓거나 내리는 방식
Mould and Mildew	• 곰팡이로 인한 손해
Offer Sheet	• seller 측면에서 물품의 판매수량과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
PO (Purchase Order)	• 바이어 측면에서 물품의 구매 주문을 하는 계약서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비나 해수에 의한 손상
ROD (Rust, Oxidation, Discolouration)	• 녹, 산화, 변색
RORO (Roll-on, Roll-off)	• 부두와 선박을 이어주는 램프를 통해 컨테이너의 적하/양하를 트레일러나 포크리프트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
Spontaneous Combustion	• 자연발화
Sweat and Heating Damage	• 습기와 열에 의한 손상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도난, 절도, 불착손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 수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수출품의 품질에 대하여 완전함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에 대한 증명서
검역증 (Certificate of Quarantine)	• 동식물을 수출할 경우에 전염성균이 묻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동식물을 일정기간, 일정한 장소에 고립시켜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
견본매매 (Sale By Sample)	• 무역품질조건 중 공산품 거래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견본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 가격계산의 기초로 견적에 사용되는 송장
규격매매 (sale by type or grade)	• KS나, ISO처럼 통일된 규칙을 기준으로 따르는 거래 방식
기한부어음 (Usance L/C)	• 어음을 제시받았을 때 지급인은 그것을 인수만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기간 내에 물품을 매각한 후 지급하면 되는 신용장
명세서매매 (sale by soecification/description)	• 선박이나 중장비처럼 견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명세서 상세 내용을 기준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방식
물품 인도시 지급 (COD : Cash On Delivery)	수출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품과 교환하여 현금 결제
보통품질조건 (USQ : 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에 의해 판단하는 보통 품질 - 직물 거래 시 사용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
보험금 (Claim Amount)	•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표 167〉 무역 용어_3

용어	의미
보험금액 (Insured Amount)	•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
보험료 (Insurance Premium)	•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
보험의 목적 (Subject-Matter Insured)	• 위험발생의 객체로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 또는 선박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크게 적하보험(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 트럭, 철도, 항공기 등)에 의하여 물품이 수탁된 장소로부터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서류
분손 (Partial Loss)	• 전손(total loss)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부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손담보 (WA : With Average)	• 분손에 해당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특정 비율 미만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약관 •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나 좌초, 침몰, 대화재의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담보 • 신보험약관 : ICC(B), 지진이나 낙뢰로 인한 손해 담보
분손부담보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신보험약관 : ICC(C), 하역작업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물품을 수회로 나누어 선적하거나, 물품을 두 개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
분할지급 (installment payment)	• 대금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일정액씩 지급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	• 수입상이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방식
사후송금방식 (Later Remittance)	•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상품을 미리 선적하고, 수입상이 상품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상업송장 (C/I : Commercial Invoice)	- 물품의 품명, 단가, 수량, 결제조건 등과 수출입자의 정보 등이 기재되는 서류 -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물품의 명세서 등 선적안내서로 사용되는 상용문서
상표매매 (sale by brand)	•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상품은 브랜드의 품질을 기준으로 상품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
서류상환지급 (CAD : Cash Against Documents)	• 상품수출 후 선적서류와 수출대금 교환
선급 (advance payment)	•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전액 지급
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	•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송금결제방식 (T/T : Telegraphic Transfer)	• 은행의 개입 없이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단순 송금하는 결제 방식 -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
송하인 (Consignor)	•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할 경우 운송인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자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함

〈표 168〉 무역 용어_4

용어	의미
수하인 (Consognee)	• 선하증권에 의하여 수입지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는 자
순중량 (N/W : Net Weight)	- 수출품의 포장 전 수출을 위한 제품의 순수한 중량 - 총 중량에서 내장과 외장의 중량을 공제한 순 중량으로 측정된 중량
신용장결제방식 (L/C : Letter of Credit)	•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리가 부여된 서장
신용장통일규칙 (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무역거래의 대금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 및 거래관습에 대한 각국의 상관습이나 법규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장을 취급하는 관계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국제적인 통일규칙 필요에 의해서 제정 • 1951년 제정 이후 제6차 개정(2007년, UCP 600)까지 진행, 거의 10년마다 개정
연불 (deferred payment)	• 수출물품이 선적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제
운송인 (Carrier)	•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선적항 또는 수탁지에서 지정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자
원산지증명서 (C/O : Certificate of Origin)	•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에 대한 증명서로서, 거래대상국의 판별이나 양허관세율의 적용 등을 위하여 사용
(화물)인도지시서 (D/O : Delivery Order)	• 선주 또는 그 대행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함. 컨테이너의 경우 선사가 화물보관인 CFS, CY 운영업체(Operator)에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
일람불신용장(Sight L/C)	• 화환어음상의 지급인이 어음을 제시받자마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용장
전위험담보 (A/R : All Risk)	• WA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 신보험약관 : ICC(A)
적부도 (Slowage plan)	• 선박에 화물을 안정적으로 싣기 위한 화물 배치도
적화보험 (marine insurance)	• 화물의 운송구간에 있어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1912년 '런던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ILU)가 제정한 정형화된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에 의하여 계약
즉시불 또는 일람불(at sight)	•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 곧바로 돈 지급
총중량 (G/W : Gross Weight)	- 포장이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한 수출품의 총중량 - 물품과 모든 포장재료를 모두 합하여 측정된 중량
추심결제방식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또는 인수)을 하여 결제하는 방식 • 지급인도방식(D/P), 인수인도방식(D/A)
통관	•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 양륙시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지닐 것임을 매도인이 보장하는 조건 - 냉동 생선, 목재, 광석 거래 시 사용
평균중등품질조건 (FAQ : Fair Average Quality)	• 선적지에서 평균 품질을 기준으로 표준품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 - 곡물, 과일, 차 거래 시 사용
포장명세서 (P/L : Packing List)	- 포장 개수, 형태, 순중량, 총중량 등의 정보가 기재되는 서류 -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서 주로 화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

〈표 169〉 무역 용어_5

용어	의미
표준품매매 (sale by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광물 등의 1차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1차 상품은 운송 중 환경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표준품 품질 기준을 언제나로 돌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평균중등품질조건(FAQ), 판매적격품질조건(GMQ), 보통품질조건(USQ)
피 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말함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항공화물운송장 (AWB : Air Way B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항공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정적 증거서류이며,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
화물도착통지서 (A/N : Arrival No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 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 앞 화물이 며칠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화인 (Shipping 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화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 속에 있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 - LCL의 경우, CFS에서 혼적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쉬핑 마크 부착 - 포장 단위마다 하나씩 부착 •마름모나 삼각형, 타원 등의 기호 안에 정보를 넣어 더욱 눈에 잘 들어오도록 표시
화환어음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어음에 상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 수입자는 어음의 지불(또는 인수)을 하지 않는 한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음을 의미
환적 (Transsh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 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참고문헌

- KOTRA, 「내수기업을 위한 종합 수출 가이드북」, 2019.
- KOTRA,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2020.
- 이기찬, 「쉽게 배우는 이기찬 최신 무역실무」, 2021.
- 김현수, 「2021 퍼펙트 국제무역사 1급」, 2021.
- 무역을 꿈꾸는 사람들 연구소, 「국제무역사 1급」, 2021.

‘축산CT기자재 수출 매뉴얼’은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축산기자재 제조기업의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 기관별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스마트 축산 K-FARM —

축산 ICT기자재 수출매뉴얼

